

발 간 등 록 번 호

11-1541000-001129-01

국내 및 인접국 방사능 누출대비 원전 안전분야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 연구

The Development of a Disaster Response Manual for
Nuclear leakage
in Domestic and Neighbor countries

2011. 12. 9

농림수산식품부

제 출 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국내 및 인접국 방사능 누출대비 원전 안전분야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 연구』 과제에 대한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1년 12월 9일

연구책임자 : 정 덕 훈 (동국대학교 경영정보학과 교수)
공동연구원 : 이 한 성 (부산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
참여연구원 : 민 금 영 (동국대학교 경영정보학과 박사과정)
 안 창 근 (동국대학교 경영정보학과 박사과정)
 윤 준 영 (동국대학교 경영정보학과 석사과정)
 이 성 훈 (동국대학교 경영정보학과 석사과정)
 최 연 욱 (동국대학교 경영정보학과 석사과정)

목 차

제 1 장 서론	2
제 1 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제 2 절 연구 범위 및 내용	6
제 3 절 연구 절차 및 방법	7
제 2 장 국내 및 인접국의 방사능 누출에 따른 위기 수준별 조치사항	10
제 1 절 국내 방사능 누출에 따른 위기 수준별 조치사항	10
1. 방사능 누출에 따른 『농수산물식품 대상 정의』	10
2. 일본 방사능 유출에 따른 국내 식품안전조치 현황	44
제 2 절 국외 방사능 누출에 따른 위기 수준별 조치사항	51
1. 국가별 위기상황 대응사례	51
2. 방사능 유출에 관련한 국외 식품안전조치 현황	81
제 3 장 방사능 위기대응 조치 및 절차	106
제 1 절 상황전파 및 유관기관 협조	106
1. 사고발생신고 및 보고	106
2. 사고발생의 통보	108

제 2 절 방사능 대응조직운영	110
1. 방재요원 등록 및 상황실 출입	110
2. 위기평가회의	111
3. 초기상황에 대한 상황 파악 및 보고	112
4. 상황발표(위기관리커뮤니케이션센터)	114
5. 방사능 재난의 선포	122
6. 중앙사고수습본부운영	124
제 3 절 사고의 상황 분석·평가	126
1. 운전상황의 분석 및 평가	126
2. 방사선원항 평가	129
3. 사고 등급 판정	131
제 4 절 농수산물식품의 방사능 영향평가	132
1. 대기확산 및 기상예측	132
2. 방사선피폭선량 평가 및 예측	133
3. 주민보호조치의 평가	134
4. 방사능 사고 영향 평가	135
제 5 절 농수축산민 보호 및 구호	138
1. 주민 대피	138
2. 오염구역설정	140
3. 출입통제	141
4. 음식물섭취제한	142
5. 방사능 물질 회수 및 처리	144

제 4 장 국내 및 인접국 방사능 누출위기대응	
실무매뉴얼(안)	147

그림 목 차

[그림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5
[그림 2] 연구 개발 추진 전략 및 방법	7
[그림 3] 연구 추진 절차	8
[그림 4]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조직도	42
[그림 5] 미국의 FEMA 조직	51
[그림 6] 국가위기상황대응체계(NRF) 구성	60
[그림 7] 미국의 원자력 안전규제 조직	66
[그림 8] 일본의 위기관련 조직	67
[그림 9] 위기관련 중앙정부조직도	69
[그림 10] 일본의 원자력 안전규제 조직	75
[그림 11] 일본 원자력 안전 위원회와 규제 집행 기관의 역할	75
[그림 12] 영국의 원자력 안전규제 조직	76
[그림 13] 프랑스의 원자력 안전규제 조직	80
[그림 14] 방사능 누출사고 신고 및 보고	106
[그림 15] 방사능 누출 사고 후속 상황보고 및 통보	107
[그림 16] 지역주민에게 사고발생 통보	108
[그림 17] 사고발생정보의 공개	109
[그림 18] 방재요원 등록 및 상황실 출입업무 흐름도	110
[그림 19] 위기평가회의의 구성도	112
[그림 20] 초기상황에 대한 상황 파악 및 보고	113
[그림 21] 주민대피 흐름도	139
[그림 22] 오염구역설정 흐름도	140

[그림 23] 출입통제 흐름도	142
[그림 24] 음식물섭취제한 흐름도	143
[그림 25] 방사능 물질 회수 및 처리	145
[그림 26] 위기대응체계도	160
[그림 27]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센터	168

표 목 차

<표 1> 연구의 범위 및 내용	6
<표 2> 농림수산식품관련 법령 범위	10
<표 3> 농수축산물의 법적 정의	10
<표 4> 방사능 관련 법	13
<표 5> 농수축산식품 관련 법 조항 비교	15
<표 6> 식품안전기본법	16
<표 7> 식품위생법	17
<표 8> 농수산물품질관리법	18
<표 9> 축산물위생관리법	19
<표 10> 수산물품질관리법	20
<표 11> 농림수산식품부 조직구성	21
<표 12> 농림수산식품부 사무분장	24
<표 13> 농수산식품 관련 조직	43
<표 14> Stafford 법령 내용	52
<표 15> 긴급지원기능(ESF) 기능 및 주요 내용	53
<표 16> 긴급지원기능(ESF)별 주무기관과 지원기관 현황	56
<표 17> 전통적 기능상 긴급사태처리계획(EOP) 수립 구성 내용	58
<표 18> 국가위기상황대응체계(NRF) 구성	60
<표 19> 국가위기상황대응체계(NRF) 구성 내용	61
<표 20> 미국의 원자력관련법규	62
<표 21> 특수허가 일반요건(Sec.40.32)	63
<표 22> 특수허가 일반요건(Sec.40.32)	64

<표 23> 위기상황관리 관련 지정기관	68
<표 24> 일본 원자로등 규제법 체계	70
<표 25> 일본 원자력안전위원회 지침체계	70
<표 26> 재처리시설 지정기준	71
<표 27> 일본 재처리사업 법령상 기술기준 구성항목체계	73
<표 28> 프랑스 방사능 안전규제 관련 법령 체계	77
<표 29> 프랑스 원자로 이외의 기본원자력시설 기본안전규정체계 ..	78
<표 30> 농림수산식품부 언론대응	114
<표 31> 농림수산식품부 언론대응 매뉴얼	116
<표 32> 기자회견 사전점검표	119
<표 33> 언론발표시 요령과 원칙	120
<표 34> 위기경보 발령기준	123
<표 35> 위기단계별 대책본부 및 중앙사고 수습본부구성	124
<표 36> 반별임무	125
<표 37> 국내 방사능사고의 비상단계	126
<표 38> 방사선원 및 입력자료 수집	136

제 1 장

서 론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979년 미국 TMI원전사고, 1986년 구소련 체르노빌 원전사고,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일본 원전사고 등 대규모 핵관련 사고 및 북한 핵 실험에 따른 방사능 재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국가위기관리내의 방사능 재난은 “국가 핵심기반분야” 및 “재난분야”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국가위기는 “국가 주권 또는 국가를 구성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체계 등 국가의 핵심요소나 가치에 중대한 위해가 가해질 가능성이 있거나 가해지고 있는 상태” 또는 “국가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에 대비하며 위기 발생시에는 효과적인 대응 및 복구를 통하여 그 피해와 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조기에 위기 이전상태로 복귀시키고자 하는 제반 활동”으로 볼 수 있다.

위기관리라는 용어는 바람직하지 않은 사건의 통제에 대한 좀 더 넓은 접근 방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민간부문에서 위기관리의 목적은 순수 손실의 최소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공공부문에서의 위기관리는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사회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자연적, 인위적 사건의 위험을 인지하고 통제하는 것으로 이해된다(김보현, 박동균, 1995: 131).

또한 위기관리는 위기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주고 위험을 극복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집행하는 일상화된 과정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Ciger, 1988). 이러한 위기관리란 사전적인 관리기법과 사후적인 적극적 대처방안을 개발하여 우리 사회에 잠재되어 있는 우발적인 충격이나 위기의 발생확률을 줄이고 발생시 피해를 극소화하는 것이다(이신화, 2000).

한편 Hood(2001)는 위기관리를 규제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위기규제를 “보건에 대한 잠재적 악영향을 통제하기 위한 시장에의 정부개입 또는 사회적 과

정”으로 보고 있다.

즉 위기는 당면한 상황에 대한 행위자의 “주관적인 인식과 판단”이 개입된 것이라는 점에서 객관적인 상황을 지칭하는 위험과 구별되는 것이다. 이는 서양에서 위기(crisis)라는 말의 어원이 판단, 결단, 선택, 식별 등의 의미를 함축하는 희랍어 ‘krisis’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보다 명확해진다(이극찬, 1999).

방사능 재난의 경우에는 방사능이 함의하고 있는 특수성 때문에 전문 장비 및 지식이 없이는 사고발생의 탐지 식별이 어렵기 때문에 국가 위기관리 체계에서도 교육과학기술부가 주관부서로 되어있다.

우리나라 방사능 비상 대응체계는 원자력시설 및 대규모 방사능 조사시설에 대해서는 “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방재법”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으나 도심이나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방사성 물질 확산(오염폭탄 : Radiological Dispersal Devices 포함), 이동형 방사능 조사기 또는 기타 방사능원의 사고는 방사능안전관리 측면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방사능 재난의 경우에는 주관부서인 교육과학기술부의 정보취득의 한계성 및 방사능원에 대한 설계기준위협설정을 포함한 물리적방호 체계의 한계성 및 주관부서 및 주관기관의 모호성으로 인해 사고·테러 대응 및 완화과정에 중점을 둔 위기관리를 하고 있다.(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 2009)

방사능 사고와 누출로 인해 식품과 관련된 피해의 경우 대기 중으로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면 낙진 또는 비를 통해서 토양을 오염시켜 직접 지하로 누출되어 지하수를 오염시키게 된다. 오염된 토양에서 자란 농작물은 방사능 오염식품이 되며 섭취경로를 따라 인체에 흡수되어 내부피폭을 일으킨다.

2011년 3월 11일에 발생한 동일본 후쿠시마 대지진으로 인한 원전 방사능 누출 사고에 따른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 식품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정부가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보류 조치를 등 일본 식품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은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현

재 일본의 수돗물에게까지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는 상황에서 식약청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신선식품뿐 아니라 일본산 맥주와 같은 가공식품에 대해서도 방사능 오염 및 누출에 따른 농수산물식품의 오염관리체계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일본 원전사고 시 다량의 방사성 물질이 토양 및 지하로 누출되어 작물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일본의 식품 중 방사능 오염식품이 우리나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어 잠정허용기준치를 초과한 식품류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체계적인 방사능 오염관리가 필요하다.

<한국일보> 2011. 3. 20

방사성 물질 유출이 진행중인 일본 후쿠시마(福島) 원전 인근 지역에서 식수, 시금치, 우유 등에 기준치를 넘는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다. 후쿠시마 원전사태가 장기화해 주변 토양 오염이 지속될 경우 건강 위협은 물론 심각한 환경 재앙으로 변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바라키(茨城)현은 20일 후쿠시마현과 가까운 히타치(日立)시에서 생산된 시금치에서 kg당 5만4,000Bq(벵크렐)의 방사성 요오드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는 식품위생법상 잠정 기준치인 2,000Bq의 27배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방사성 세슘도 기준(500Bq)보다 3배 이상 높은 1,931Bq로 측정됐다. 앞서 19일에는 이바라키현 기타이바라키(北茨城)시의 시금치에서 기준치를 약 12배 초과하는 kg당 2만4,000Bq의 방사성 요오드가 검출됐다. 일본 후생노동성도 같은 날 후쿠시마현의 식수와 우유에서 한 때 기준치를 초과하는 방사성 요오드가 검출됐다고 밝혔다.....중략.....하지만 소비자의 입장에서선 미량이라도 방사능에 노출된 음식에 대한 기피가 뚜렷해 건강식품으로 정평 난 일본 음식에 신뢰도가 떨어질 위기에 처했다. 당장 아시아 주요 지역의 특급호텔들은 인기메뉴인 일본산 초밥을 취급하지 않고 있다. 방사능 오염 우려로 당분간 일본산 신선식품 수입을 중단했기 때문이다.일본 내에서도 방사능 오염 식품에 대한 불안심리가 커지고 있다. 도쿄 주민들은 평소 수돗물을 그대로 식수로 사용했으나 최근 들어 끓여서 마시거나 슈퍼마켓 등에서 생수를 구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도쿄 시노노메(東雲)의 한 대형마트에서는 후쿠시마 인근에서 생산된 채소류를 취급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국가위기관리 매뉴얼 일체정비계획에 따른 원전안전분야 위기대응 표준매뉴얼 개정('11.4)에 따라 농수산물식품분야 실무매뉴얼 작성 필요하나 아직까지 식품안전분야에서는 원전안전 관련 실무 매뉴얼이 없는 상황이다. 동일본 대진으로 인한 방사능 누출 사고 등 인접국 방사능 누출에 따른 내용도 매뉴얼에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국내 원자력 발전소, 연구시설의 방사능 누출 및 인접국의 방사능 누출사고 등에 대비하여 농수산물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농수산물식품분야의 안전성 확보하기 위한 위기대응체계에 대한 실무매뉴얼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국내 및 인접국 원전분야(방사능 누출)
농·수·축산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과 대응지침

- | | | |
|---------------------------|---|-------------------------|
| 1. 방사능 누출에 따른 위기 수준별 조치사항 |  | 2. 농·수·축산물 위기대응 조치 및 절차 |
| 3. 비상대응 조직 구성, 편성 및 서식개발 | | 4.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개발 |

원전의 방사능 유출과 오염으로 인한 피해국가, 지역 확산	농·수·축산물 분야에 대한 안전성 확보 필요	방사능 누출대비 농·수·축산물 분야 실무매뉴얼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 후쿠시마 원전폭발로 인한 방사능 유출('11.03) →일본뿐만 아니라 인근 국가의 해양 및 대기 방사능 확산, 농·수·축산물식품에 대한 안전성 불안 →수입 농·수·축산물식품에 대해 방사능 검역 강화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원자력 발전소 및 인접국 방사능 누출사고 등에 대비한 농·수·축산물식품에 대한 안전 관리체계 필요 →방사능 누출사고에 대한 위기대응체계(절차)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전안전분야 위기대응표준 매뉴얼 개정('11.04)에 따른 농·수·축산물식품분야 실무매뉴얼 개선필요 원전 안전관련 농·수·축산물 분야 관련 대응지침을 포함한 실무매뉴얼 필요성제기

[그림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제 2 절 연구 범위 및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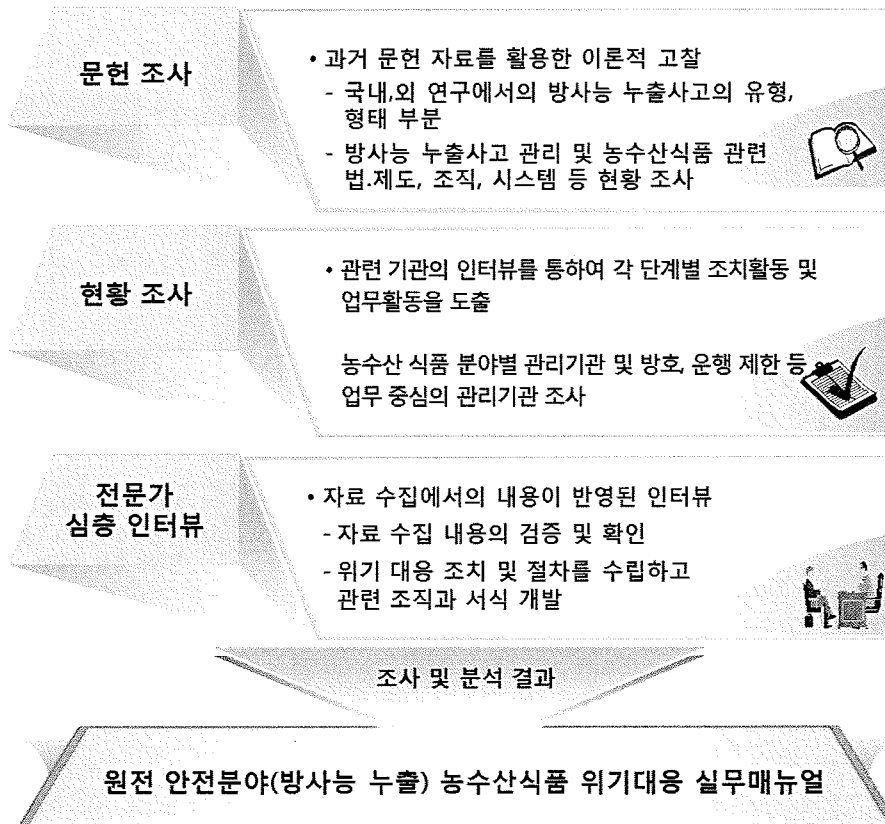
본 연구는 [국내 및 인접국 방사능 누출대비 원전 안전분야(방사능) 위기 대응 실무매뉴얼 연구]로써 연구의 내용과 연구범위는 <표 1-1>과 같다.

<표 1> 연구의 범위 및 내용

연구 내용	연구 범위
① 국내 및 인접국의 방사능 누출에 따른 위기 수준별 조치사항	- 위기경보(관심, 주의, 경계, 심각) 단계별 상황, 조치목록, 조치사항, 기관별 임무 및 역할 등
② 위기대응 조치 및 절차	- 상황전파 및 유관기관 협조, 방사능 대응 조직운영, 사고의 상황분석·평가, 농수산물품의 방사능 영향평가, 농어민의 보호 및 구호, 어로 활동의 제한 등
	- 정보 발표 및 홍보, 사후관리, 기관별 임무 및 역할
③ 비상대응조직 구성 및 편성, 관련 서식의 개발 등	- 비상대응조직 구성 및 편성
	- 관련 서식의 개발
④ 원전안전분야 표준매뉴얼에 근거한 위기형태, 경보, 대응지침, 관리수행체계 확립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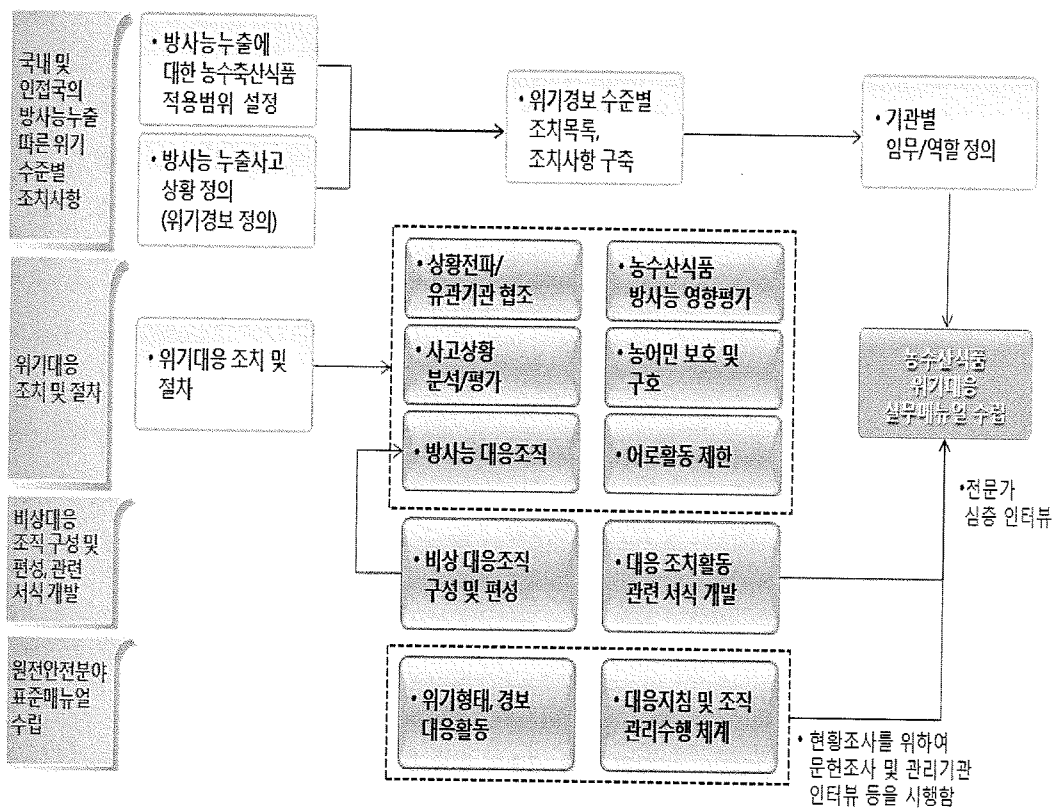
제 3 절 연구 절차 및 방법

본 연구는 『원전 안전분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근거로 하여, 국내 원자력 발전소, 연구시설의 방사능 누출 및 인접국의 방사능 누출사고 등에 대비한 농수산물식품 분야의 안전관리체계를 수립하는 것으로 관련 문헌을 통하여 방사능 누출 사고 유형, 형태를 조사하고, 관련 법 제도, 조직, 시스템 등을 조사한다. 또한 관련 기관의 인터뷰를 통하여 각 단계별 조치활동 및 업무활동을 도출한다. 관련 기관은 농수산물식품 관리기관을 중심으로 중앙부처 및 지자체로 구분한다. 마지막으로 전문가 심층 인터뷰 및 자문회의를 통하여 위기 대응 조치 및 절차를 수립하고 관련 조직과 서식 등을 개발한다.



[그림 2] 연구 개발 추진 전략 및 방법

본 연구의 방법을 통한 연구전체의 절차는 <그림 4>과 같이 국내 및 인접국의 방사능 누출에 따른 위기 수준별 조치사항, 위기대응조치 및 절차, 비상대응 조직 구성 및 편성, 관련 서식 개발, 원전안전분야 표준매뉴얼 수립으로 추진하였다.



[그림 3] 연구 추진 절차

제 2 장

국내 및 인접국의 방사능 누출에 따른 위기수준별 조치사항

제 2 장 국내 및 인접국의 방사능 누출에 따른 위기 수준별 조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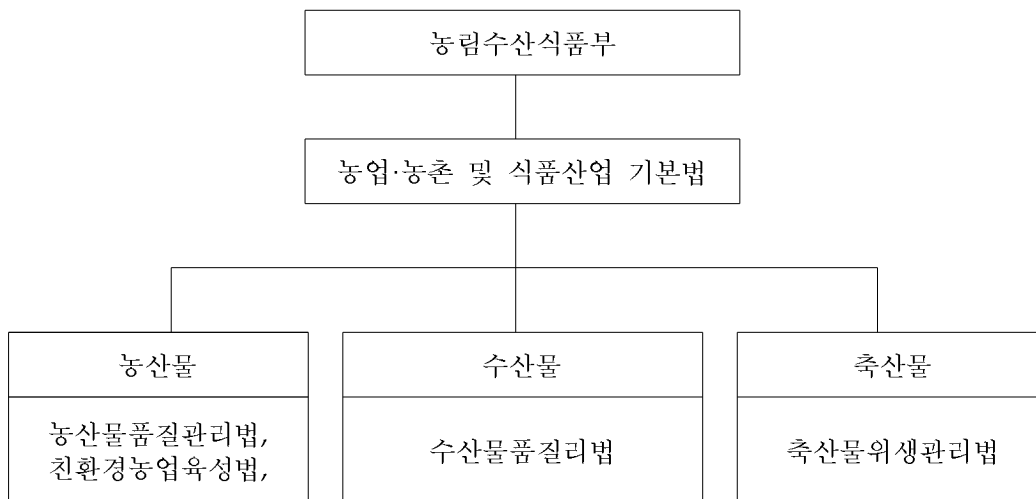
제 1 절 국내 방사능 누출에 따른 위기 수준별 조치사항

1. 방사능 누출에 따른 『농수산물식품 대상 정의』

가. 관련법령

농수축산식품 관련 법 분야별 관련 법은 농림수산물식품부의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관련법을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표 2> 농림수산물식품관련 법령 범위



농수산 식품의 범위는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아래의 <표 3> 과 같이 정의 되고 있다.

<표 3> 농수축산물의 법적 정의

구분	법령	내용
농업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6.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수산물: 어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나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수산물 나.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
식품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	4. “농작물”이란 식용작물·공예작물·사료작물·비료작물·원예작물·벼섯작물 및 뽕나무를 말한다. 5. “산림작물”이란 소득을 목적으로 재배하는 묘목, 유실수, 조경수, 산림벼섯, 산체류, 야생화, 그 밖의 임산물을 말한다. 6. “가축”이란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말한다. 13. “수산양식물”이란 어가가 양식하는 어패류, 해조류, 그 밖의 수산 동식물을 말한다.
	친환경농업육성법 제2조	2.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전에 관한 법률 제2조	1. “농산물”이라 함은 농산물·축산물 및 수산물과 임산물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식품산업진흥법 제2조	2의3. “농수산물”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어업을 말한다.
	농산물품질관리법 제2조	1. “농산물”이란 가공되지 아니한 상태의 농산물, 임산물(석재와 골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축산물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2조	1. “농산물”이란 「농산물품질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 2. “수산물”이란 「수산물품질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산물과 같은 조 제2호의 이식용수산물과 「염관리법」 제2조제2호의 염을 말한다. 3. “농수산물”이란 농산물과 수산물을 말한다.
축산	축산법 제2조	1. “가축”이란 사육하는 소·말·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축산물”이란 가축에서 생산된 고기·젓·알·꿀과 이들의 가공품·원피[원모피를 포함한다]·원모, 그 밖에 가축의 생산물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1. “축산물”이란 소, 돼지, 닭 등에서 생산된 식육, 젓알과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생산물을 말한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	1. “가축”이란 소, 말, 당나귀, 노새,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 개, 토끼, 꿀벌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	1. “가축”이란 소, 말,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돼지(사육하는 멧돼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닭, 오리, 그 밖에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축산물”이란 식육·포장육·원육·식용란·식육가공품·유가공품·알가공품을 말한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1. “가축”이라 함은 소·돼지·말·닭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
수산	기르는 어업육성법 제2조	4. “수산생물”이라 함은 기르는 어업의 대상이 되는 수산동식물과 그 알 또는 포자를 말한다.
	수산자원관리법 제2조	1. “수산자원”이란 수중에서 서식하는 수산동식물로서 국민경제 및 국민생활에 유용한 자원을 말한다.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제2조	1. “수산동물”이란 어류·패류·갑각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수산물품질관리법 제2조	1. “수산물”이란 이식용수산물을 제외한 수산동식물을 말한다.

농수축산물에 대한 법령 분석을 통해 요약 정리해보면 농산물이란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곡류, 특용작물류, 과실류, 채소류, 잡사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수산물이란 어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이식용수산물을 제외한 수산동식물, 가공품을 말한다. 축산물이란 축산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가축에서 생산된 고기, 젓, 알, 꿀과 이들의 가공품, 원피, 원모 그밖에 가축의 생산물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생산물로 정의 할 수 있다.

방사능과 관련된 법령은 농업관련하여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식품관련하여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 친환경농업육성법 제2조,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식품산업진흥법 제2조, 농산물품질관리법 제2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2조 등이 있다.

축산관련하여서는 축산법 제2조,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등이 있으며, 수산관련하여 기르는 어업육성법 제2조, 수산자원관리법 제2조,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제2조, 수산물품질관리법 제2조 등이 있다. 이와 같은 법령을 기반으로하여 국내 및 인접국의 방사능 누출에 따른 위기사항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표 4> 방사능 관련 법

구 분	법 명	관리부서	비고(관련 법, 조항)
현행법령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방재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방재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방재팀	
	식품위생법	보건복지부 식품정책과	제 4조의 2
	수산물 품질관리법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자원관 양식산업과	제2조 제14호
생활법령	음식점(창업·운영) 제한·준수사항 영업자의 준수사항 위해식품 등의 판매등 금지의무	-	식품위생법 제 4조의 2 관련
	양식어업인 준수사항 양식수산물 품질검사 품질관리 등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자원관 양식산업과	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4

			호
행정규칙	교육과학기술부 방사능방재관실 운영규정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방재팀	
	방사능방재교육에 관한 고시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방재팀	
	방사능비교측정에 관한 규정	규제개혁법무담당관	폐지
	방사능사고대책분과위원회 운영 규정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방재과	
	원자력사업자의 방사능방재 검사에 관한 고시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방재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과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과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 해사기술과	제23조
	소방용 특수보호복 등의 성능과 유지관리기준	소방정책본부 과학화기반팀	제2조, 제4조, 별표 3
	방사성폐기물 인수방법 등에 관한 규정	지식경제부 원자력산업과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생산에 관한 기준 고시	교육과학기술부 방사선관리과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대책에 관한 고시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방재팀	
	원자력이용시설 주변의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과	
조약 (다자조약)	핵사고 또는 방사능 긴급사태시 지원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Assistance in the Case of a Nuclear Accident or Radiological Emergency)		

농수산물식품 관련 법별로 세부 사항을 비교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농수축산식품 관련 법 조항 비교

구분	제조·판매 금지	안전(위생)관리	비고
식품안전기본법	- 생산·판매등의 금지 (16조)	- 위해성평가(20조)	- 검사명령 (17조) - 식품 등의 회수 (19조)
식품위생법	-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4조)	- 수입 식품등의 신고 등(19조) - 위해요소중점 관리기준(48조)	- 출입·검사·수거 (17조) - 위해식품의 회수(45조)
농산물 품질관리법	- 폐기 또는 판매금지 등(95조)	- 안전성조사(12조의2) - 농산물의 위험성평가 (제14조의 6)	- 안전성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14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9조)	- 출입·검사·수거(19조) - 판매금지 (33조) - 위해평가 (33조의2)
수산물 품질관리법	- 폐기 및 판매금지 (33조)	- 위생관리기준시(22조) - 위해요소중점 관리기준(23조) - 안전성조사(42조)	- 수산물의 검사(29조) - 생산·가공의 중지(28조)

식품안전기본법 식품안전정책의 수립·조정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표 6> 식품안전기본법

구분		내 용
조항	항목	
제16조	생산·판매 등의 금지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5조제2항에 따른 긴급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식품등에 대하여 그 위해 여부가 확인되기 전까지 해당 식품등의 생산·판매등을 금지
제17조	검사명령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의 생산·판매등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고시하는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을 것을 명함 1. 제15조제2항에 따른 긴급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식품등 2. 국내외에서 위해발생의 우려가 제기되었거나 제기된 식품
제19조	식품등의 회수	① 사업자는 생산·판매등을 한 식품등이 식품안전법령등으로 정한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기준·규격 등에 맞지 아니하여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식품등을 지체 없이 회수
제20조	위해성평가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기준·규격을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식품등이 국민건강에 위해를 발생시키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위해성평가를 실시

식품위생법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게 하고 있다.

<표 7> 식품위생법

구분		내용
조항	항목	
제4조	위해 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됨 1.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2.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한 염려가 있는 것.
제19조	수입 식품 등의 신고 등	①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식품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
제45조	위해 식품의 회수	①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등을 제조·가공·소분·수입 또는 판매한 영업자는 해당 식품등이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또는 제9조제4항을 위반한 사실(식품등의 위해와 관련이 없는 위반사항을 제외한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유통 중인 해당 식품등을 회수하거나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함
제48조	위해요소중점 관리기준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식품의 원료관리 및 제조·가공·조리·소분·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이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식품별로 정하여 고시

농산물품질관리법에서는 농산물의 적절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상품성을 향상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유도하고 있다.

<표 8> 농수산물품질관리법

구분		내용
조항	항목	
제12조의2	안전성조사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농산물 또는 농산물의 생산에 이용·사용하는 농지·용수·자재 등에 잔류하거나 포함되어 있는 유해물질에 대하여 조사(이하 "안전성조사"라 한다)를 실시
제14조	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생산과정에 있는 농산물 또는 농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이용·사용하는 농지·용수·자재 등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생산단계 안전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1. 해당 농산물의 폐기·용도전환·출하연기 등의 처리 2. 해당 농산물을 생산에 이용·사용한 농지·용수·자재 등의 개량 또는 이용·사용의 금지
제14조의6	농산물의 위험성 평가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식품안전 관련 기관에 농산물 또는 농산물의 생산에 이용·사용하는 농지·용수·자재 등에 잔류하는 유해물질에 의한 위험을 평가
제95조	폐기 또는 판매금지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88조에 따른 검사나 제96조에 따른 재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검사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알립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는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축의 사육·도살·처리와 축산물의 가공·유통 및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표 9> 축산물위생관리법

구분		내용
조항	항목	
제9조	위해요소중점 관리기준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사육부터 축산물의 원료관리·처리·가공·포장·유통 및 판매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인체에 위해를 끼치는 물질이 축산물에 혼입되거나 축산물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별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라 한다)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하여 고시
제19조	출입·검사·수거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영업자에게 축산물의 검사 결과 및 수출입 실적 등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관 또는 관계 공무원이 영업장에 출입하여 축산물, 시설, 서류 또는 작업 상황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축산물을 무상으로 수거
제33조	판매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포장·사용·수입·보관·운반 또는 진열을 금지
제 33 조 의2	위해평가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내외에서 위해성이 확실히 판명되지 않았으나 위해성이 의심될 수 있는 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위해의 우려가 제기되는 축산물이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해당 축산물의 위해요소를 신속히 평가

수산물품질관리법에서는 수산물에 대한 적정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수산물의 상품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등에 대해 나타나있다.

<표 10> 수산물품질관리법

구분		내용
조항	항목	
제22조	위생관리 기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외국과의 협약을 이행하거나 외국의 일정한 위생관리기준을 지키도록 하기 위하여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물의 생산·가공시설 및 해역의 위생관리기준(이하 “위생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
제23조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외국과의 협약에 규정되어 있거나 수출 상대국에서 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위해물이 섞여 들어오거나 남아 있는 것 또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생산·가공 등 각 단계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정하여 고시
제28조	생산·가공의 중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생산·가공시설등이나 생산·가공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가공·출하·운반의 시정·제한·중지명령, 생산·가공시설등의 개선·보수명령 또는 등록취소
제29조	수산물의 검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은 품질 및 규격이 맞는지와 위해물이 섞여 들어오는지 등에 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검사 1. 정부에서 수매·비축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2. 외국과의 협약이나 수출 상대국의 요청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경우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제33조	폐기 및 판매금지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9조에 따른 검사나 제34조에 따른 재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검사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알림
제42조	안전성 조사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물의 품질 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재 등과 수산물에 남아 있는 중금속, 패류독소, 식중독균, 항생물질,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질이 생산단계인 수산물의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을 넘는지를, 저장단계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 단계인 수산물의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잔류허용기준을 넘는지를 각각 조사(이하 “안전성조사”라 한다)

나. 관련조직

농수축산분야에 대한 주무부서인 농림수산식품부의 조직은 통상정책관, 대변인, 감사관, 제1차관\제2차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수산식품부연수원, 동해어업관리단, 서해어업관리단, 국립수산과학원, 한국농수산대학, 국립종자원 등이 있으며, 제1차관 소속으로 운영지원과, 기획조정실(기획조정관, 비상계획관), 농어촌정책국(농어촌정책과, 경영인력과, 지역개발과, 농어촌사회과, 농어촌산업팀, 녹색성장정책관), 농업정책국(농업정책과, 농지과, 농업금융정책과, 농업기반과, 재해보험팀, 식량정책관), 국제협력국(국제협력총괄과, 국제개발협력과, 다자협상협력과, 지역무역협정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차관 소속으로는 식품산업정책실(식품산업정책관, 유통정책관, 축산정책관, 소비안전정책관), 수산정책실(수산정책관, 어업자원관, 원양협력관) 등이 있다.

기획조정실에는 기획재정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정책평가담당관, 정보통계담당관이 있으며, 농어촌정책에는 녹색미래전략과, 과학기술정책과, 종자생명산업과, 4대강 새만금과가 있다. 농업정책국에는 식량정책과, 식량산업과, 농가소득안정추진단, 친환경농업과가 있다. 식품산업정책실에는 식품산업정책과, 식품산업진흥과, 외식산업진흥과, 수출진흥팀, 유통정책과, 원예산업과, 원예경영과, 축산정책과, 축산경영과, 방역총괄과, 방역관리과, 소비안전정책과, 안전위생과, 검역정책과 등이 있으며, 수산정책실에는 수산정책과, 수산개발과, 지도안전과, 어업정책과, 양식산업과, 자원환경과, 원양정책과, 국제기구과, 어업교섭과 등이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부서별 과는 아래의 <표 11> 과 같다.

<표 11> 농림수산식품부 조직구성

조 직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통상정책관	정책보좌관	
대변인	홍보담당관	
감사관	감사담당관	

제1차관	운영지원과	
	기획조정실	기획조정관
		비상계획관
	농어촌정책국	농어촌정책과
		경영인력과
		지역개발과
		농어촌사회과
		농어촌산업팀
		녹색성장정책관
	농업정책국	농업정책과
		농지과
		농업금융정책과
		농업기반과
		재해보험팀
		식량정책관
	국제협력국	국제협력총괄과
		국제개발협력과
다자협상협력과		
지역무역협정과		
\제2차관	식품산업정책실	식품산업정책관
		유통정책관
		축산정책관
		소비안전정책관
	수산정책실	수산정책관
		어업자원관
		원양협력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운영지원과	
	위기대응센터	
	기획조정과	
	축산물안전부	
	동물방역부	
	식물검역부	
	수산물안전부	
	동식물위생연구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운영지원과
	기획조정과
	농업경영정보과
	품질검사과
	소비안전과
	원산지관리과
	시험연구소
농수산식품부연수원	지원(경기, 전남, 경북지원 등)
	운영지원과
	교육기획과
	전문교육과
	수산인력개발센터
동해어업관리단	운영지원과
	어업지도과
	안전정보과
	어항건설과
	강릉어항사무소
서해어업관리단	운영지원과
	어업지도과
	안전정보과
	어항건설과
	인천어항사무소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연구소
	전략양식연구소
	중앙내수면연구소
	고래연구소
	갯벌연구소
	연구센터
	운영지원과
	조직인사과
	연구기획부
	기반연구부
	전략연구단
한국농수산대학	
국립종자원	운영지원과
	종자유통과
	품종심사과
	재배시험과

농림수산식품부 조직의 사무분장을 보면 다음 <표12>와 같다.

<표 12> 농림수산식품부 사무분장

조직	사무분장
대변인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요 정책 홍보 계획 수립 및 조정 2. 브리핑, 보도자료, 인터뷰 등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3. 언론보도 모니터링 및 오보·왜곡 보도 등 대응 4. 정책광고, 각종 홍보물 발간 및 홍보기법 개발 5. 농어업·농어촌 가치 홍보 6. 부내 및 소속기관 협력 홍보 7. 정책고객서비스(PCRM) 등 온라인홍보 기획 및 운영 8. 멀티미디어 콘텐츠 기획 및 관리 9. 부(部) 홈페이지 운영 10. 정책홍보평가 11. 농촌정보문화센터 업무
감사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행정감사제도의 운영 및 행정감사 계획의 조정 2.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및 소속 외청에 대한 감사 3. 농림수산식품부 산하단체(공공기관을 포함한다) 및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대한 감사 4.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5. 소속공무원 재산등록·심사 및 사정 6.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1차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 2. 주요업무계획의 지침수립 및 종합·조정 3. 국회업무보고 작성 및 정당과의 업무협조 4. 각종 정책 의제관리 5. 세입·세출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총괄 6.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7. 예산·기금관련 법령 및 회계제도 관리 8. 농림수산부문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9.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총괄 10.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의 운영 11. 그 밖에 실내 다른 담당관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 2 장 국내 및 인접국의 방사능 누출에 따른 위기 수준별 조치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업무프로세스 및 조직문화의 개선 등 부내 변화관리의 총괄·지원 2.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의 총괄 3. 조직진단 및 평가(조직/정원관리) 4. 각종 위원회의 운영 지원 5. 부내 통합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 6. 소속 공무원의 직무성과계약제도의 운영 7.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내 규제개혁 및 정비 2. 입법추진계획의 수립 및 법령안의 심사 3.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총괄 4.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이양업무의 총괄 5. 장관 또는 차관이 참석하는 정례 회의 안건 검토 총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과관리 전략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관리 2. 정부업무(주요사업, 인사, 조직 등) 평가 총괄 3. 농수산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지방자치단체 평가를 포함한다) 4. 농수산 신규사업 사업성 검토 5. 농수산사업 투융자 효율성제고 6. 대통령지시사항 및 국정관리과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수산식품 정보화 시행계획 수립 및 정보화 평가 2. 부내 정보화 예산의 사전검토 및 조정 3. 농림수산식품 정보화종합설계도(EA) 구축·운영 4.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5. 농수산식품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6. 농어업·농어촌 정보이용 활성화 7. 농수산식품 정보 관련 단체의 업무지원 8. 농어업 경영체 정보화 촉진 9. 농수산 통계업무의 기획·조정 10. 국내외 농수산 통계의 수집·가공·분석 및 자료관리 11. 국제농업정보·통계의 수집 및 동향분석 12. 농업정보·통계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장기 농어업·농어촌 발전 기본 계획 및 중장기 투융자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농어촌지역 개발, 농어촌산업 활성화 등 농어촌정책의 총괄 3. 중장기 농어촌발전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위원회의 운영 5.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6. 농어촌 정책관련 관계부처 법령 제·개정 및 정책협의 총괄 7. 농어촌개발연구사업 8.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촌정비법」 및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의 운영 9. 농어촌 활력창출운동

	<ol style="list-style-type: none"> 10. 농어촌 영향평가 제도 운용 11. 농어촌 서비스기준의 운영 1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분야 부문별 발전 계획안, 시행계획, 평가 및 연차보고서 작성 13. 그 밖에 녹색성장정책관 소관사무를 제외한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어업인력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2. 후계농어업인력 육성 3. 농어업 경영체의 육성 및 경영개선 4. 농어업분야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5. 농어업인의 교육훈련 6. 농어업경영컨설팅 7. 한국농수산대학 8.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의 운영 9. 농어업인 단체 10. 도시민의 귀농·귀촌 등 농어촌 유치 지원사업 11. 농어업회의소 지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어촌지역의 생활기반 확충을 위한 종합개발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농어촌 뉴타운 계획수립 3. 농어촌 주택개량 4. 한계농지의 정비계획 수립 및 조정 5. 농어촌경관 종합대책의 수립 및 시행 6. 농어촌경관보전 직접지불제 7. 일반농산어촌개발분야 포괄보조금 제도 운용 및 지원 8. 전원마을조성사업 계획의 수립·추진 및 제도개선 9. 농어촌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 10. 농어촌지역 기초생활인프라 정비 사업의 시행 11. 농어촌 공동 생활형 홈 모델개발 및 보급 12.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 개발·보급 13. 농어촌 지역 권역별, 읍·면 종합정비사업의 시행 14. 통합적 지역개발 정책기획 및 시행 15. 농어촌지역개발 인력육성 및 지원체계 수립 추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어촌 복지증진시책의 수립 및 추진 2.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 지원 3.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등 4. 여성농어업인의 지위 향상 등 여성농어업인정책 5. 여성농어업인력의 개발 및 활용 6. 여성농어업인 단체와 업무 협조 7. 농어촌여성·가정 등의 복지 8. 농어촌 다문화가족 지원 9. 고령 등 취약계층 농어업인 복지지원 10. 농어업인 영유아에 대한 보육지원과 보육여건, 제도개선 11. 농어촌 공동체회사 등의 육성

	<ol style="list-style-type: none"> 12. 농어촌 학생 장학사업 13. 농어촌 전통문화 및 문화사업 육성 14. 농어촌 교육여건 등의 개선 15.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의 운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어촌 산업정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농업인들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운영 3. 농어촌의 기업유치 및 투자 활성화 지원 4. 농어촌기업 활성화 지원 5. 농어촌 활력증진을 위한 관련 산업의 육성·평가 및 컨설팅 6. 농어촌지역 특화·향토산업 육성 7. 농어촌산업 육성지원기구의 지정·관리 8. 농어촌자원복합산업분야 포괄보조금 제도의 운영 및 지원 9. 농공단지 조성 10. 농어촌산업 정책의 부처간 연계협력 11. 농어촌산업 박람회 12. 도농교류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13. 도농교류 지원기구 운영 및 협력지원 14. 도농교류 협력사업의 추진 및 지원 15.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 16. 농어촌체험 및 휴양기반 확충 등 농어촌관광 산업 육성 17.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의 운영 18. 도농교류 교육 및 전문인력의 양성 19. 농어촌 산업 관련 교육·인력 육성 및 지원체계 수립 추진
	<p>녹색미래전략과·과학기술정책과·종자생명산업과 및 4대강세만금과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농어촌정책국장을 보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수산 및 식품산업의 녹색성장 중장기 종합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 2. 농수산 및 식품산업의 녹색성장 관련 법규정 마련 3. 농수산 및 식품산업의 중장기 미래비전과 전략 4. 농수산 분야 기후변화협약 대응의 총괄·조정 5. 녹색성장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 및 대응 6. 녹색성장위원회 및 미래기획위원회 업무 7. 녹색뉴딜 및 신성장동력 사업 총괄 8. 농수산식품분야 녹색성장 공감대 형성 및 홍보 9. 산림청 업무 10.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의 운영 11. 그 밖에 녹색성장정책관 소관사무 중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림수산식품 과학기술정책 업무의 총괄·조정 2.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시행 3. 농림수산식품 관련 연구개발사업 추진 및 사업평가 4.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의 운영 5. 지방자치단체 소속 연구기관의 농수산 시험·연구사업의 지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6. 국내외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의 교류 협력 7. 농림수산식품 관련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8.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운영 및 지도·감독 9. 농촌진흥청업무 10.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의 운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림수산분야 생명산업 육성정책의 수립 및 종합·조정 2. 농림수산분야 생명산업의 육성 및 지원 3.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정책의 수립 및 종합·조정 4. 종자산업 육성정책의 수립 및 시행 5. 품종보호심판위원회의 운영 6. 농작물의 신품종 육성 및 지원 7. 종자·생명산업 및 농업유전자원 관련 대외협력 8. 곤충산업 육성정책 수립 및 시행 9. 농림수산분야 지식재산정책의 수립 및 종합·조정과 대외 대응 10. 기능성양잠산업 육성정책 수립 및 시행 11. 「종자산업법」,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운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4대강 살리기 정책의 수립 및 종합·조정 2. 4대강 살리기 관련 사업 추진 및 지원 3. 소수력 발전 계획 수립 및 시행 4. 4대강 살리기 관련 민자유치방안의 수립 및 시행 5. 새만금 등 간척종합개발사업의 계획수립 및 추진 6.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운영 7. 새만금방조제 명소화사업 계획수립 및 추진 8. 새만금 환경보전대책 9. 새만금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과 토지의 이용·관리 및 처분 10. 새만금사업 추진에 따른 용지매수 및 보상 11. 새만금지역 녹색성장 시범단지 조성계획수립 및 추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장기 농업정책 수립 및 조정 2. 농업구조정책의 수립 및 조정 3. 중장기 농가소득·경영안정 정책 및 제도의 개발 4. 통일농업정책 수립 및 북한농업지원업무의 총괄 5. 농업 관련 정책연구과제 개발 6. 지역농업 활성화 및 지역농정 협력의 증진 7. 농정 및 식품산업 연차보고서 8. 농업관련 장기 전망지표의 정리 및 예측 9. 자유무역협정 이행 지원기금의 운용 10.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위원회의 운영 11.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운영 12. 농림어업·식품분야 일자리 창출 13. 농업분야 서비스산업 발전전략 수립 14. 간척지 활용 및 운영

	<p>15. 첨단농업·생명산업단지 조성 및 지원 16.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p>
	<p>1. 농지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농지법」의 운영 3. 농지의 소유 및 보전·이용 4. 농업진흥지역의 관리 및 제도정비 5. 농지관리기금의 관리·운용 및 제도개선 6. 농지은행제도의 운영 및 개선 7. 영농의 규모화 추진 및 제도운영 8. 농지연금제도 9. 농지의 종합정보화 10. 사업 준공된 간척토지의 관리 및 처분</p>
	<p>1. 농업분야 금융 및 대출제도 개선·운영 2. 농업종합자금 등 농업자금의 제도 및 지원 3.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융자업무 총괄 및 위탁관리기관의 업무지도·감독 4.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및 대손보전기금 운영·관리 5. 농업자금 및 부채대책자금 이차보전 6. 농어가부채 경감대책 7.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경제사업 분리 추진 등 협동조합 선진화 8. 농업협동조합의 설립·해산의 인가 등 행정조치 9. 농업협동조합의 정관례 제·개정 및 운영 10.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출자자·예금자 보호 11.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령 제·개정 및 운영 12. 농업협동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지도·감독 13. 농업협동조합 공동사업법인 육성 14.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공제(보험) 15. 농업 관련 조세·부담금·공공요금 업무 16.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및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운영</p>
	<p>1. 농촌용수 이용합리화 계획의 수립·추진 2.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지표수보강개발 사업계획의 수립·추진 3.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에 관한 계획 수립·추진 4. 지하수자원 관리사업 계획의 수립·조정 5.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 계획의 수립·추진 6. 개간·간척 등 농지 개발계획의 수립·추진 7. 대단위 농업개발사업 계획의 수립·추진 8. 농업기반정비사업으로 정비된 토지(사업 준공 된 간척토지 제외)의 관리·처분 9. 농업기반시설의 안전진단 및 재해대책 10. 수리시설 개보수 및 유지관리 11. 농업용수 수질오염 방지대책의 수립·시행</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2. 배수개선사업 계획의 수립·시행 13. 「방조제 관리법」의 운용 14. 방조제 개보수 및 유지관리 15. 말기반정비사업 계획의 수립·시행 16. 대규모 경지정리 및 경작로 확포장사업 계획의 수립·시행 17. 농업기반시설용 국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 및 운용 18. 농업생산기반정비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조정 19.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령」의 운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업재해대책 추진 및 농업기상 정보의 수집·전파 2.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경감 대책 추진 3. 농어업정책보험(공제) 정책수립 등 4.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및 사업 운용 5. 가축 재해보험 제도 및 사업 운용 6. 농업인재해공제 제도 및 사업 운용 7. 농어업재해보험기금 운용 8.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제도 및 사업 운용 9. 「농어업재해대책법(농업재해대책만 해당한다)」, 「농어업재해보험법」의 운영
	<p>식량정책과·식량산업과·농가소득안정추진단 및 친환경농업과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농업정책국장을 보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식량정책 총괄 및 양곡수급기본계획의 수립·조정 2. 쌀 공공비축 기본계획 3.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의 수립·조정 4. 식량자급률 목표치 설정 및 운용 5. 쌀 자조금 사업 6. 식량 관련 국제자료 조사·연구 및 해외곡물 수급동향 분석 7. 식량 관련 국제협력·통상협력 및 남북교류 협력 8. 쌀 수출입 9. 「양곡관리법」의 운영 10. 양곡관리특별회계 및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운용 11. 쌀 소비촉진 업무 12. 쌀 목표가격의 설정 고시 및 목표가격 변경의 국회동의 13. 양곡유통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14. 양곡유통구조 개선 15. 정부관리양곡의 매입·보관 및 판매 16. 양곡가격 등 유통정보조사 및 유통지도·단속 17. 그 밖에 식량정책관 소관사무 중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쌀산업육성계획의 수립 및 추진 2. 맥류·두류·서류 및 잡곡의 생산 및 유통 3. 식량작물의 병충해 예방 및 방제 4. 「농업기계화 촉진법」의 운영 5. 쌀 전업농의 선발 및 교육·훈련

제 2 장 국내 및 인접국의 방사능 누출에 따른 위기 수준별 조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6. 미곡종합처리장의 운영 지원 및 경영평가·개선 7.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 8. 양곡(쌀을 제외한다)의 수출입 관련 업무의 총괄 9. 농업기계의 안전관리 및 사후관리 10. 농업기계화 및 농업기계 이용 촉진 11. 농업기계 및 농업용 석유류의 세제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가단위 소득안정 직접지불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농업경영체 등록 3.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의 운영 4.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5.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6.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기금의 관리·운용 7. 쌀소득직접지불제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8.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9. 경영이양직접지불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친환경농업육성에 관한 중·장기계획의 수립·추진 2. 친환경농업육성사업의 추진 및 기술개발지원 3. 유기농업육성계획의 수립 및 지원 4. 자연순환농업 5. 토양 지력증진 6. 친환경유기농자재의 육성 7.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의 운영 8.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의 운영 9. 친환경농산물의 유통활성화 및 소비촉진 10. 비료의 공급·품질관리 및 제조·수출입 11. 「친환경농업육성법」 및 「비료관리법」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업분야 국제협력정책의 총괄 2. 경제협력개발기구 관련 업무 및 국내정책과의 조화 유도 3. 국제 농업 관련 단체 및 농업 관련 해외 주재 공무원의 업무 4. 농업환경과 관련한 국제협력 5. 농업통상기획 6.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등과의 농업협력 7.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와 관련된 농업통상 및 기술협력 8. 아시아유럽정상회의와 관련된 농업통상 및 기술협력 9. 개별국가와의 농업협력 및 농업통상현안 10. 동·식물 검역 및 위생 관련 국제협력 11. 농수산물 분야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 12. 세계무역기구의 위생및식물위생조치적용협정과 무역에대한기술장벽 협정 13. 국제식품규격위원회 14. 주요국의 농업정책 및 통상정책 정보수집·분석 및 배포 15.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공적개발원조사업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글로벌농림수산협력추진협의회의 운영 3. 국제농업협력사업 추진·평가 등 4. 국제기구, 지역농업기구, 국제구호단체, 외국정부, 국제민간기구 등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공적개발원조사업 관련 국제사회와의 협력 5.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상 무상원조시행기관 업무 6. 한국국제협력단의 농수산분야 무상원조 추진 관련 업무협조 7.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농림수산분야 운용계획 협의 8. 해외농업개발 중장기 전략수립 9. 해외농업개발사업 신고·추진·평가 등 10. 해외농업투자 환경조사 11. 해외농업개발협력단 운영 12. 외국인 투자위원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세계무역기구의 농수산업분야 다자협상 2. 세계무역기구의 농수산업분야 무역분쟁 3. 세계무역기구의 농수산업분야 이행 및 통보 4. 세계무역기구의 농수산업분야 가입 및 무역정책검토 5. 세계무역기구의 통일 원산지 6. 세계무역기구의 농수산업 관련 위원회 7. 세계무역기구 외 개도국간 무역특혜공여 및 다자협상 8. 농산물 시장접근물량 수입관리 및 관세제도 운영 9. 농산물 수입제도 운영 및 농업분야 산업피해구제제도 10. 남·북간 농산물의 반·출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역무역협정 농수산업분야 기본전략 및 대응계획 수립 2. 지역무역협정 농수산업분야 상품양허 협상 3. 지역무역협정 동식물 위생·검역 협상 4. 지역무역협정 농수산업분야 원산지 및 지적재산권 협상 5. 지역무역협정 농수산업분야 투자 및 서비스 협상 6. 지역무역협정 농수산업분야 분쟁해결 및 무역구제 협상 7. 지역무역협정 농수산업분야 의견수렴 및 영향분석 8. 지역무역협정 농수산업분야 협정문 작성 및 협의 9. 지역무역협정 농수산업분야 합의사항 이행 및 점검 10. 지역무역협정 국내외 동향 파악 및 홍보
제2차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식품산업의 육성·진흥 총괄 2.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조정 및 시행 3. 식품산업진흥심의회 구성 및 운영 4. 식품산업 통계의 조사 등 5. 한국식품연구원의 업무 6. 식품산업 기술개발

	<ol style="list-style-type: none"> 7. 식품산업 인력 양성 8. 식품산업 컨설팅 9.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 10. 농산식품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11. 식품명인의 발굴·육성 12. 「식품산업진흥법」, 「식생활교육지원법」의 운영 13.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른 식생활 및 식문화 보급·전파 14. 국가 식생활 교육 위원회의 운영 15.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육성·지원 16. 농식품 벤처기업 육성 17. 학교급식 등 집단급식의 지원 18. 지역농업, 식품클러스터 구축 및 연계 19. 식품의 영양성분 분석 20. 그 밖에 식품산업정책관 소관사무 중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통·발효식품산업의 진흥 2. 김치산업육성 및 김치연구소 업무 3.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 4. 식품제조·가공산업의 육성·지원 5. 산지가공산업의 진흥 6. 식품업체 규모화, 시설현대화 지원 7. 농어업인의 식품가공 활성화 8. 농어업생산자와 식품업체간 연계강화 9. 소금산업 및 염업조합 관리·육성 10. 식품 외식종합자금 운영 11. 품목별 가공산업 육성 총괄 12. 「염관리법」, 「염업조합법」 및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운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외식산업의 육성·지원 2. 식재료 가공산업의 육성 및 식재료 유통개선 3. 한식 세계화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4. 한식업체 해외진출 및 경쟁력 강화 5. 한식 및 식문화의 국내외 보급과 전문인력 양성 6. 해외 우수 한식당 추천제 운영 및 해외 한식당 협의체 등 네트워크 구축 7. 한식 우수성 해외홍보 8. 「외식산업 진흥법」의 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산물 및 식품의 수출진흥시책 수립·시행 2. 농산물 및 식품의 해외홍보, 무역정보의 수집 및 해외시장개척 3. 농산물 및 식품산업 관련 수출물류제도의 운영 4. 농산물 및 식품산업 관련 수출경영체 육성 및 관련단체의 지원 5. 식재료 수출진흥 6. 농식품 수출기반 구축

	<ol style="list-style-type: none"> 7. 농식품 해외 전진기지 구축·운영 8. 수출 농수산물 안전관리 9. 농식품 수출 통계 및 분석 10. 농식품 수출 국제협력 및 컨설팅 11. 농식품 수출신용·보험제도 운영 12. 수산물의 수출정책 수립 13. 수산물의 수출진흥 및 동향분석 14. 수산물수출의 관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산물유통구조개선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산지유통시설의 설치 지원 3.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운용 4. 농산물유통중사자와 생산자에 대한 유통교육 총괄 5.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지도·감독 6. 농산물 및 식품 가격안정 대책 종합·조정 7. 농산물도매시장과 공판장의 시설·운영 및 정비 등 8. 농산물 비축 9. 농산물 생산·유통정보화 업무 10.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운영지원 11. 농산물 직거래 및 소매유통 12. 농산물 표준규격화 및 물류표준화 지원 13. 소비자·산지 협력 14. 산지유통조직 육성 및 지원 15. 시군 유통회사 설립 지원 16. 농산물 전자거래 17.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농수산물유통공사법」의 운영 18. 농업관측 통계정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채소류(과채류 제외한 품목)·특용작물의 생산 및 수급안정 2. 채소류·특용작물의 수출 및 국제협력 3. 채소류·특용작물의 계약재배·수매·저장 및 유통업무 4. 채소류·특용작물 산업의 경쟁력 강화 5. 채소류·특용작물의 브랜드 육성 6. 원예농산물 자조금제도 운영 7. 채소류·특용작물의 재해대책 8. 특작용 기자재 보급·지원 9. 인삼산업 육성 및 생산·유통지원 10.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원예작물 경쟁력 제고 및 경영안정의 추진 11. 「인삼산업법」의 운영 12. 농산물의 품목별 대표조직 육성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과채류·과수류·화훼류의 생산 및 수급안정 2. 과채류·과수류·화훼류의 수출 및 국제협력 3. 과채류·과수류·화훼류의 계약재배·수매·저장 및 유통업무

제 2 장 국내 및 인접국의 방사능 누출에 따른 위기 수준별 조치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4. 과채류·과수류·화훼류 산업의 경쟁력 강화 5. 과채류·과수류·화훼류의 브랜드 육성 6. 과채류·과수류·화훼류의 자조금제도 운영 7. 과채류·과수류·화훼류의 재해대책 8. 시설원예산업 육성 및 현대화 9. 시설원예 에너지 대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축산발전기본계획의 수립 2. 축산자금의 지원·관리 및 축산업등록제 3. 한국마사회의 지도·감독 및 마필산업 육성 등 4. 가축개량종합계획의 수립·지원 5. 축산물 가공산업의 육성·지원 6. 도축·가공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 7. 축산물 유통 8. 축산물 등급제도의 운영 및 지원 9. 「축산법」,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한국마사회법」, 「말산업 육성법」 및 「도축장 구조조정법」의 운영 10. 그 밖에 축산정책관 소관사무 중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축종별 산업발전대책의 수립·추진 2. 축종별 생산기술 보급 및 지원 3. 축산자조금 운용 4. 주요 축종의 수급 5. 송아지 생산안정 및 양돈·양계 계열화 사업 6. 깨끗한 목장 만들기 사업·낙농체험사업 7. 우유 등 유제품 수급관리 8. 대북축산협력 지원사업 9. 축산물 브랜드 육성·지원 10. 사료산업의 육성과 사료의 안전성 및 품질관리 11. 축산 기자재 12. 초지의 조성 및 관리 13. 사료작물의 생산·지원 및 이용 14. 볏짚 등 국내 부존자원의 이용촉진 15. 「사료관리법」,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낙농진흥법」 및 「초지법」의 운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중가축의 전염병(인수공통전염병 포함) 방역대책 수립·추진 2. 수의사 면허, 수의인력 수급 및 수의료 정책 3. 동물 보호·복지 및 관리시책의 수립·시행 4. 실험동물 및 반려동물산업 육성 5. 공중방역수의사 제도의 운용 및 공중방역수의사 관리 6. 세계동물보건기구(OIE) 관련 업무 7. 「가축전염병예방법」, 「동물보호법」, 「수의사법」,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및 「한국진도개 보호육성법」의 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가축의 전염병(인수공통전염병 포함) 방역대책의 수립·추진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축산관련 환경오염의 방지 및 축산분뇨의 처리·이용(바이오에너지 포함한다) 대책의 수립·추진 3. 가축 사육환경의 개선 및 축산분뇨 등의 자원화 지원 4. 친환경축산 육성대책의 수립·추진 5. 환경친화 축산농장 지정·관리 6. 축산분야 재해대책 7. 동물약품제도의 운용 및 동물약품 산업육성 등 8. 축산물 이력시스템의 운영·관리 9. 구제역 등 동물백신 관련 업무 10. 가축 매몰지의 지표수 관리 업무 11.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의 운용
	<p>식품산업정책과·식품산업진흥과·외식산업진흥과 및 수출진흥팀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유통정책관은 유통정책과·원예산업과 및 원예경영과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축산정책관은 축산정책과·축산경영과·방역총괄과 및 방역관리과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소비안전정책관은 소비안전정책과·안전위생과 및 검역정책과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각각 식품산업정책실장을 보좌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식품 안전관리계획의 총괄·조정 2. 농식품 위험평가 3. 농식품 관련 위험정보교류 4. 농산물 및 식품산업 관련 소비자보호정책 총괄 5. 식품의 산업표준인증제도, 유기농식품인증제도 등 농산물 및 식품의 인증제도 6. 식품의 산업표준규격 및 국제식품규격 운영 7.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 8. 농식품안전 관련 기술개발 9. 「농산물품질관리법」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의 운영 10. 지리적 표시제 11. 제5호에 따른 인증제도, 제9호에 따른 원산지 표시제 및 제10호에 따른 지리적 표시제의 홍보 12. 그 밖에 소비안전정책관 소관사무중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축산물의 안전관리 2. 농축산물의 안전에 관한 교육·홍보 및 지도 3. 농축산물 안전성 조사 및 검사 4. 「축산물위생관리법」 및 「농약관리법」의 운영 5. 축산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제도 운영 6. 축산물 위생감시·단속 7. 삭제<2010.2.26> 8. 기능성 축산식품 위생관리 9. 농산물우수관리 제도 10. 농산물이력추적관리 제도

	<p>11. 농약의 안전성 및 품질관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삭제<2010.9.20> 2. 유전자변형 농수축산물표시제 운영 3. 농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관리정책의 수립 및 조정 4. 「식물방역법」의 운영 5. 수출입식물 검역 6. 수출입 축산물 안전성검사 7. 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의 검역 8. 수출입 수산물 안전성검사 9. 수출입 수산물의 검역 10. 수산물의 안전성관리 및 조사 <p>수산정책과·수산개발과 및 지도안전과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어업자 원관은 어업정책과·양식산업과 및 자원환경과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원양협력관은 원양정책과·국제기구과 및 어업교섭과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각각 수산정책실장을 보좌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산 관련 정책의 종합·조정 2. 중장기 수산업발전 종합대책 및 투융자계획의 수립 2의2. 세계무역기구 등 수산분야 협상관련 국내대응 총괄 2의3. 박람회 등 행사 관련 수산분야 종합·조정 3.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조합의 지도·감독 3의2. 어촌계의 지도·육성 4. 수산정책자금제도의 개선 및 운용 4의2. 수산발전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 총괄 4의3. 어업용 면세유 공급 및 사후관리 5. 수산분야의 외국인투자 6. 한국수산회의 육성·지원 7. 어업인교육문화복지재단 육성 및 지원 8. 수산물(양식수산물은 제외한다) 유통 및 수급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9. 수산물가공산업 육성 및 종합대책 9의2. 수산물가공시설 확충 및 현대화 9의3. 수산물가공품 개발 등 10. 수산물품질인증 등 인증·표시제의 육성·지원 10의2. 수산물의 표준규격화 11. 수산물 유통구조의 개선 12. 수산물 가격안정대책의 수립·조정 13. 수산물의 소비촉진 및 소비자 보호 13의2. 수산물 전자거래 14. 수산물 유통단지의 조성·육성 14의2. 수산물 위판장 및 시설개선 14의3. 수산물도매시장 시설지원 및 운영 15.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운영 16. 「해양수산업발전 기본법」(수산분야에 한한다), 「수산업협동조합 법」 및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의 운영
--	--

	<p>17. 그 밖에 수산정책관 소관사무 중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어촌종합개발사업의 계획수립 및 지원 2.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의 수립 3. 어촌체험마을의 조성 3의2. 어촌·어항 복합공간 및 어촌관광단지 조성 3의3.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3의4. 어촌경관 및 주택개량 3의5. 도시와 어촌 간의 교류촉진 3의6. 귀어·귀어촌 정책수립 및 지원 4. 국가어항의 지정·변경 및 해제 5. 국가어항의 기본계획·정비계획·환경개선계획의 수립 6. 국가어항의 시설운영 및 공사관리 7. 어촌정주어항의 시설계획 수립 및 변경 8. 국가 어항시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9. 국가 어항구역내의 공유수면 매립·관리에 관한 기술검토 10. 지방어항의 지정·시설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협의 11. 어항시설의 재해방지 및 피해복구 12. 국가어항공사의 품질관리 및 평가 13. 어항공사 관련 민간투자사업 14. 삭제<2010.2.26> 15. 어항기본시설물 안전점검 및 어항청소선 16. 어항구역의 권리설정·처분 등에 관한 관계기관과의 협의 17. 한국어촌어항협회의 육성·지원 18. 어선원 교육기관의 육성·지원 19. 어선원 수급 및 복지증진 20. 외국인 어선원 고용 21. 수산기술지도장비 및 기술지도선의 수급·조정 22. 어업인후계자 및 전업어업인의 육성·교육 23. 수산업협동조합의 공제업무에 관한 지도·감독 24. 어선원 및 어선의 재해보험 25. 삭제<2011.6.15> 26. 어업인 복지증진 등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총괄 27. 수산업경영인, 어업법인 및 관련단체의 육성·지원 28. 수산기술지도의 기획·총괄 및 기술지도 보급 지원 29. 수산기술개발 및 연구 30. 수산계학교 육성·지원 31. 수산직접지불제 및 어업경영체 등록 32.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및 「어촌·어항법」의 운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근해어선의 안전조업지도 2. 어업질서확립을 위한 종합대책의 수립 3. 불법어업 지도·단속 3의2.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 관련 행정처분 4. 어로한계선 주변해역 어장조정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4의2. 접경수역조업어선 월선·피랍 예방 등 안전관리 5. 어업지도선 수급계획의 수립 및 조정 6. 수산통신시설계획의 수립·운영관리 7. 어업정보통신국의 통제·지도 8. 연근해어선의 해상사고 예방 및 안전조업 지도 9. 어업관리단에 대한 지도·감독 10. 어선 안전조업 상황실 운영 11. 어업협정에 따른 조업지도 12. 수산분야 자연재해업무의 총괄 12의2. 어선위치추적시스템(VMS) 운영·관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산물생산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2. 연근해어업진흥정책의 종합·조정 3. 연근해어업제도의 조정·운영 4. 연근해어업의 허가 등 5. 연근해어업의 분쟁조정 6. 연근해어업 경영개선 및 경쟁력강화 7. 어획물운반업의 허가 8. 고래 및 다랑어 자원의 보존 및 관리 9. 국립수산과학원의 지도·감독 10. 수산시험·연구계획의 조정·평가 11. 연근해어업의 구조조정 12. 어업생산 관련 자료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 13. 어선의 건조(개조) 허가 등 14. 어선톤수 측정 및 등록·검사 제도의 연구·운영 15. 방치폐선(어선에만 해당한다) 처리업무의 총괄 16. 어선의 현대화 및 수급관리 17. 연근해어업 어구·어법의 관리 18. 「수산업법」, 「어업자원보호법」,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및 「어선법」의 운영 19. 그 밖에 어업자원관 소관사무중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양식수산물의 수급 및 유통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2. 수산용 의약품 및 백신 사용지도 및 관리 3. 기르는어업발전기본계획 수립 4. 삭제<2010.2.26> 5. 양식어업의 조정·운영 6. 적조대책 7. 어장이용개발계획의 수립 및 운영 8. 수산업 관측 및 수산업 유통협약과 이와 관련된 자조금 제도 운영 9. 수산질병 관리사·관리원의 운용 및 관리 10. 수산동물질병의 방역 11. 삭제<2009.10.1> 12. 삭제<2009.10.1> 13. 삭제<2009.10.1>

	<ol style="list-style-type: none"> 14. 수산물 이력제 및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제도 15. 외국과의 수산물 위생관리 협력 16. 수산물, 수산가공품 및 해역의 위생관리 17. 해조류 품종보호제도 18. 해면 및 내수면 양식어장 정비·단속 19. 양식어업 면허 및 허가 20. 삭제<2011.6.15> 21. 「농어업재해대책법」(어업재해대책만 해당한다), 「기르는 어업 육성법」,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및 「수산물품질관리법」의 운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근해 자원환경에 관한 정책수립 및 집행 2. 연근해 수산자원의 효율적 이용·개발 3. 총허용어획량(TAC)제도의 운영·관리 4. 자율관리어업의 육성 5. 수산자원 번식환경의 조성·관리 6. 수산종묘의 보급·관리 7. 인공어초시설, 바다목장화, 바다숲 조성 및 수산바이오메스 이용·개발 8. 수산자원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 9. 수산자원관리 관련 업무의 심사분석·평가 10. 삭제<2010.2.26> 11. 수산분야 공유수면 점·사용 및 매립 협의 12. 어장관리기본계획 수립 13. 삭제<2010.2.26> 14. 국토이용계획의 수산부문 15.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관리 및 운영 16. 낚시의 육성 및 관리 17. 유어장의 개발·운영 18. 낚시어선업제도의 운영 및 지도 19. 수산자원관리수면의 지정·관리 및 운영 20. 내수면어업제도의 조정·운영 21. 내수면어업 기본계획의 수립 22. 내수면양식어업의 육성 및 관리 23. 「수산자원관리법」, 「어장관리법」, 「낚시어선업법」 및 「내수면어업법」의 운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원양산업에 관한 중·장기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국제수산기구 등의 원양어업 관련 보존조치의 국내수용 3. 원양산업 진흥 및 정책자금의 지원·운영 4. 원양어업 경영구조개선 5. 해외어장 및 해외 양식·가공 등 수산자원개발 6. 한국원양산업협회의 육성·지원 7. 한·러 어업협정 체결 및 운영 8. 원양어업 생산계획의 수립 및 통계 9. 원양어업의 허가 및 조정 10. 원양어업의 안전조업 지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1. 해외 합작 수산물 관세감면 추천 및 신고수리 12. 수산물수입정책의 수립 13. 한국수산무역협회의 육성·지원 14. 수산물교역조건의 개선 15. 삭제<2011.6.15> 16. 수산물수입의 관리 17. 수산물관세제도의 협의 18. 원양산업 진출 및 지원 19. 「원양산업발전법」의 운영 20. 그 밖에 원양협력관 소관사무 중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산분야 국제협력 및 국제기구 2. 수산분야 국제법규 3. 수산 관련 해외 주재 공무원의 업무 4. 수산분야 외국정보자료의 수집·전파 5. 어업협정의 체결·운영(한·일, 한·중 및 한·러 어업협정은 제외한다) 6. 어업협정의 실무협상(한·일, 한·중 및 한·러 어업협정은 제외한다) 7. 수산분야 양자협력 8. 고래 등 희귀동식물 및 고도 희유성 어종에 관한 국제수산기구의 업무 9. 수산분야 대외 경제협력지원 10. 국제기구의 수산어업 관련 업무 및 국내 정책과의 연계방안 추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일 및 한·중 어업협정의 체결·운영 2. 한·일 및 한·중 어업협정의 실무협상 3.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규제 4. 인접 연안국과의 어업조정 5. 한·일 중간수역 및 한·중 잠정조치수역의 자원관리 6. 일본·중국 등 주변국가와 다자간 어업협력 7. 주변국간 민간어업협력 지원 8. 남북 수산분야 교류협력 9. 남북 수산분야 합의사항 이행 10. 남북간 수산물의 반·출입 11. 수산분야 무역자유화에 대한 국내대책 수립 12. 수산분야 무역자유화와 관련 대국민 홍보 및 교육 13.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의 운영

농림수산식품부의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위기대응센터, 기획조정과, 운영지원과, 축산물안전부, 동물방역부, 식물검역부, 수산물안전부, 동식물위생연구부 등이 있으며 조직도와 관련과는 아래의 <그림 4> 와 같다.



[그림 4]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조직도

농수축산식품 관련 농수축산 식품의 안전관리는 중앙정부인 농림수산식품부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다원화된 관리체계유지하고 있다. 즉, 식품의 안전의 수산물과 축산물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검사본부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농산물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식약청에서 주로 관리하고 있다.

<표 13> 농수산식품 관련 조직

구분	재배/사육/양식 등	수입		국내 가공	유통 (보관/운반)	소비 (최종판매)
		비 가공 / 단순 가공	고차 가공			
농산물	지자체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청/지자체		
수산물	농림수산 식품부	농림수산 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청			
축산물	지자체	농림수산식품부(농림수산식품검사본부)				

2. 일본 방사능 유출에 따른 국내 식품안전조치 현황

2011년 03월 11일 오후 2시 46분 규모 일본에서 일 9.0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여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시설이 파괴되었다. 이 사고로부터 유출된 세슘의 양만 하루에 500억베크렐로 예상된다. 국제원자력사고등급(INES)의 7등급인 '대형사고 대량의 방사성 물질 외부유출',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는 최고등급이다.

그러나 정부는 비상대응 활동을 수행하였지만 위기수준에 따른 국가 위기경보는 발령하지 않았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방사능 유출사고 대응기관으로 현재 일본 수입품, 일본을 경유하여 수입되는 농·임산물,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3월 19일부터 매 수입분에 대해 방사능 오염 여부 검사를 실시하였다

3월 28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주재로 일본 방사능 누출관련 농식품 안전성 확보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일본산 축수산물 방사능 오염 대응체계 점검 결과 언론 브리핑 및 일본 원전사고 대비 농축수산물 안전성 확보대책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였다. 일본방사능 오염지역의 식품을 잠정 수입중단하기로 결정하고 일본산 농축수산물의 검사결과를 매일 검사기관 홈페이지등에 공개하며 관련 조치사항을 효과적으로 수행 및 홍보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는 '방사능 안전관리 신속대응팀'을 구성 및 운영하며 현재까지 일본방사능 사고관련 농축수산물 검사동향을 파악하여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농식품안전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인접국 방사능 누출 현황		대한민국정부 조치사항			
일시	유출 지역	주체	조치	안전조치 대상품목	세부내용
2011.3.14	전지역	식품의약품 안전청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 실시	신선 농·임산물	신선 농·임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실시
2011.3.14	전지역	국립수의 과학검역원	수입축산물 방사능 검사 강화	축산물(식육, 유가공품, 식육가공품, 알가공품)	원전사고 발생일(3.12)이후 제조·가공된 축산물(식육, 유가공품, 식육가공품, 알가공품)전체에 대한 방사능 검사 강화
2011.3.19	전지역	식품의약품 안전청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 실시	농·임산물 (신선, 건조, 냉장, 냉동 포함),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원료 포함), 식품첨가물	농·임산물(신선, 건조, 냉장, 냉동 포함),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원료 포함), 식품첨가물 검사 확대
2011.3.28	전지역	국가정책 조정회의	잠정 수입 중단	·후쿠시마현산-엽채류, 화퇴류, 우유, 순무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현산-시금치, 카키나 ·우비라키현 - 우유, 파슬리	일본에서 섭취 제한 및 출하 정지 대상으로 지정한 품목에 대해서는 오염 우려가 해소될때까지 잠정적으로 수입을 중단
2011.3.28	전지역	농림수산식품부	축수산물 정밀검사	축수산물	·소비안전정책관을 팀장으로하는 방사능 안전관리 신속대응팀

인접국 방사능 누출 현황		대한민국정부 조치사항			
일시	유출 지역	주체	조치	안전조치 대상품목	세부내용
					구성 ·일본에서 수입되는 모든 축수산물 정밀검사 실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등 협조
2011.3.29	5개 지역	국가정책조정 회의	수입정지품목확대	사료	기존 시금치, 카키나, 원류등의 수입정지품목에 사료 추가
2011.4.1	-	식품의약품안전청	검사강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을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
2011.4.4	1개 지역	식품의약품안전청	잠정수입중단	엽채류, 엽경채류	치바현의 아사히시, 카도리시, 타코마치시에서 생산된 엽채류 및 엽경채류 잠정 수입 중단
2011.4.7	전지역	국립수의과학검역원축산물안전과	축산물방사능검사 강화	축산물	·가공유크림, 조제분유 등 일본산 축산식품 정밀검사 ·원전주변 우리나라 축산물에 대해서도 방사능 검사를 금주부터 실시

제 2 장 국내 및 인접국의 방사능 누출에 따른 위기 수준별 조치사항

인접국 방사능 누출 현황		대한민국정부 조치사항			
일시	유출 지역	주체	조치	안전조치 대상품목	세부내용
2011.4.14	전지역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청	농·임산물, 가공식품	1) 수입관리강화 ·5개현(후쿠시마, 이바라키, 토치키, 군마, 치바현)의 수입중단품목(엽채류 및 엽경채류)에 대해서는 수입잠정중단조치 ·8개도·현(미야기, 야마가타, 니이가타, 나가노, 사이타마, 가나가와, 시즈오카, 도쿄도)의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수입시 일본정부증명서를 제출토록하면서 매수입건마다 방사능 검사 실시, 기타 34개현에서 생산, 제도되는 식품등은 일본정부가 발행하는 생산지 증명서 제출 요구 ·매수입건마다 방사능 검사 실시 2) 영유아관리기준강화 ·요오드에 대한 영유아용식품에 대한 기준을 우유, 유제품과 별도로 신설하여 관리강화

국내 및 인접국 방사능 누출대비 원전 안전분야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 연구

인접국 방사능 누출 현황		대한민국정부 조치사항			
일시	유출 지역	주체	조치	안전조치 대상품목	세부내용
2011.4.15	1개 지역	식품의약품안전청	시마현 생산 버섯류 수입 중단	버섯류	후쿠시마현에서 생산된 버섯류의 잠정수입 중단조치
2011.4.20	1개 지역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일본후쿠시마현산 까나리 잠정수입 중단	수산물	일본후생노동성이 후쿠시마현에서 어획되는 까나리에 대해 출하제한과 섭취제한조치를 결정함에 따라 잠정수입중단 결정
2011.4.25	1개 지역	농림수산식품부	일본산 수입사료 검사	농산물	수입된 홍학 사료에서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었으나, 함량이 식품의 허용기준이내의 미미한 수준으로 적합한 것으로 세관에 수입신고
2011. 5.10	13개 지역		방사능기준적합증명서 및 산지증명서 요구	모든식품	3월 11일전에 수확, 제조한 식품에 대한 날짜 증명 요구
2011. 6. 8	4개 지역		수입정지	차, 매실	이바라키, 가나가와, 치바,

제 2 장 국내 및 인접국의 방사능 누출에 따른 위기 수준별 조치사항

인접국 방사능 누출 현황		대한민국정부 조치사항			
일시	유출 지역	주체	조치	안전조치 대상품목	세부내용
					도치키에서 생산된 차와 후쿠시마에서 생산된 매실의 수입정지결정
2011.6. 10	4개 지역		수입정지	시금치, 카키나, 매실, 원유, 버섯류, 죽순, 고사리, 사료 등	.
	13개 지역		방사능물질 검사증명서 요구	시금치, 카키나, 매실, 원유, 버섯류, 죽순, 고사리, 사료를 제외한 모든 식품	정부가 작성한 방사능물질 검사증명서 요구
	13개 지역		산지증명서 요구	모든식품	정부가 작성한 산지증명서 요구
2011. 6. 20	1개 지역		수입정지품목확대	까나리, 산천어	수입정지품목에 까나리, 산천어를 추가하여 총 10개품목(시금치, 카키나, 매실, 원유, 버섯류, 죽순, 고사리, 까나리, 산천어, 사료)으로 변경
2011. 7. 4	1개 지역		수입정지품목 확대	차	수입정지 품목에 차가 포함되어 총 4개 품목(시금치, 카키나, 사료, 차)으로 변경

국내 및 인접국 방사능 누출대비 원전 안전분야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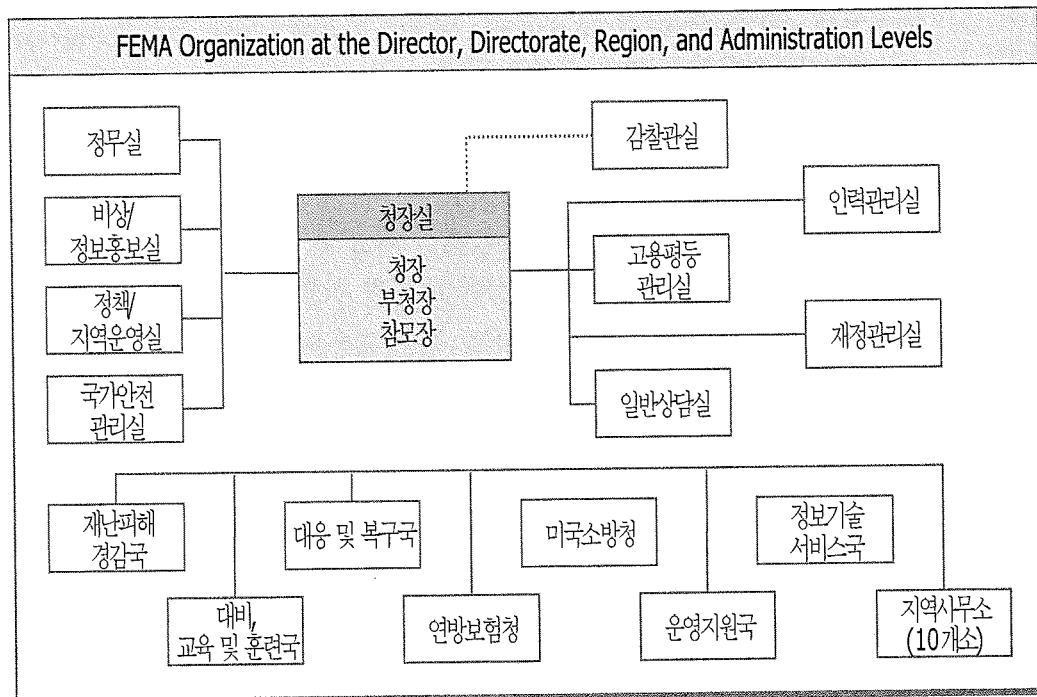
인접국 방사능 누출 현황		대한민국정부 조치사항			
일시	유출 지역	주체	조치	안전조치 대상품목	세부내용
2011. 8.30	1개 지역		수입정지품목 확대	유자	총 12개 품목(시금치, 카키나, 매실, 원류, 버섯류, 죽순, 고사리, 까나리, 산천어, 사료, 유자, 밤)으로 변경
2011. 9.27	1개 지역		수입정지품목 확대	황어, 은어	총 14개 품목(시금치, 카키나, 매실, 원류, 버섯류, 죽순, 고사리, 까나리, 산천어, 사료, 유자, 밤, 황어, 은어)으로 변경
2011.10.12	1개 지역		수입정지품목 확대	버섯류	치바현에서 생산되는 버섯류에 대해 12일부터 잠정수입 중단조치하여 치바현 수입정지 품목이 시금치, 카키나, 차, 버섯류로 확대
2011.10.17	1개 지역		수입정지품목 확대	버섯류	이바라키현에서 생산되는 버섯류에 대해 17일부터 잠정수입중단 조치하여 수입정지품목이 시금치, 카키나, 차, 원류, 사료, 버섯류로 확대

제 2 절 국외 방사능 누출에 따른 위기 수준별 조치사항

1. 국가별 위기상황 대응사례

가. 미국사례

미국의 위기상황 관리는 연방정부와 주정부, 지방정부 간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로 구성되며, 위기상황관리의 일차적인 책임은 주정부와 지방정부에 있고, 주지사의 요청시 연방정부의 조직인 연방위기상황관리청(FEMA: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을 중심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 미국 연방위기상황관리청(FEMA)는 9.11테러 이후 국토안보부(DHS) 산하로 통합되었다. FEMA와 중앙안전대책위원회, 비상대책기구 등의 조직이 있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연계하기 위한 조직들이 있음



[그림 5] 미국의 FEMA 조직

미국의 위기상황 관리 법제도는 재해구원·긴급사태지원법(Robert Stafford Act 1988)을 2000년 재해경감법(Disaster Mitigation Act)으로 수정(amend)하여 재해예방 및 경감의 강화와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책임증가시켰다. 예방정책의 제도화와 통합위기상황 접근의 시도로 민방위 주도의 위기상황 관리정책에서 국내비상프로그램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방향으로 전환된 스탠포드(Rebort T.Stafford)법으로 정착되었다. 위기상황 관리 관련법령은 Stafford 법령(The Robert T. Stafford Disaster Assistance and Emergency Relief Act)에 근거하여 입법/시행되고 있으며, Stafford 법령은 위기상황 관련 용어의 정의로부터 중앙 및 지방정부의 위기상황 준비 지원, 주요 위기상황의 지원 및 관리, 위기상황 지원 프로그램 등,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활동의 기본방향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표 14> Stafford 법령 내용

구성	주요 내용
chap.1	중앙정부의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 대한 자금의 지원과 주요 재해 위기 상황 선포절차와 용어의 정의를 규정
chap.2	중앙 및 지방정부의 재해준비 지원에 관한 사항 중앙 및 주정부의 재해지원 프로그램과 재해경고에 관한 내용을 규정
chap.3	주요 재해·위기상황 지원관리에 관한 사항 - 관리조건의 변경절차 - 조정관의 임명 및 기능과 주조정관의 임명 - 서비스 기능의 수행과 지방회사와 인력의 사용 - 구호조직의 협조 및 사용 - 물자의 사용 등
chap.4	주요 재해 지원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 주요 재해 선포절차 - 연방공공시설의 사용 - 재해공공시설의 대치/회복/보수 - 잔해제거 - 비상통신, 비상수송 등에 관한 내용과 연방비상지원 프로그램, 비상준비 등을 규정 등
기타	기부물자의 접수에 관한 규정 /법률, 비상요구예산을 초과한 재해지원금의 지출 등에 대해 규정

1) 미국 긴급지원기능 (ESF)

미국의 긴급지원기능(ESF)은 연방의 위기상황 사고대응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연방단위의 기관 간 지원을 조정(Coordination)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긴급지원기능(ESF)은 연방(Federal)에서 주(State)로의 지원을 의미하는데 스테포드법(Stafford Act)에 의거하여 대통령이 선언한 국가위기상황에 모두 적용되고 있다. 긴급지원기능(ESF)은 연방정부의 대응활동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연방정부의 작전지원 유형(예, 운송과 통신)과 주정부가 가장 필요로 하는 연방정부의 직접적 지원유형(예, 보건의료)으로 구성되어 있다. 긴급지원기능(ESF)들은 각각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상호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국가위기상황대응체계(NRF)에 의해 연방정부는 대응지원은 긴급지원기능(ESF)을 이용해서 위기상황대응활동을 수행한다. 연방정부의 임무할당(mission assignment)을 발동하여 주무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주무기관은 다시 보조기관에게 과업을 요청할 수 있다. 긴급지원기능(ESF)의 임무, 조직관계, 대응활동, 주무기관과 보조기관, 책임에 관한 사항은 긴급지원기능 부속명세(Emergency Support Function Annexes)에 나타나 있으며, 필요한 지원활동이 긴급지원기능(ESF)의 외부에 있을 때에는 국토안보부가 해당 연방기관에 필요한 자원을 가져오도록 직접 명령할 수도 있다. 지방(Local)정부의 지원요청은 지정된 주(State)정부의 기관을 거쳐서 부처에 전달된다. 주(State)정부가 확인한 대응요건을 토대로 긴급지원기능(ESF)은 자기의 상대역에 해당되는 주(State)정부의 기관과 협의하거나 또는 직접 지방기관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미국의 긴급지원기능(ESF)은 다음과 같이 15개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State)정부와 지방(Local)정부의 비상사태대처계획(EOP) 수립시 유형을 지정하고 있다

구 분	주요 내용
ESF #1 - Transportation (교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영공 관리와 통제 • 교통안전 • 교통기반체계 회복/복구 • 이동제한 • 손해와 피해평가
ESF #2 - Communications (통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신과 정보기술 산업과의 조정 • 통신기반체계 회복과 보수 • 국가단위 사이버와 정보기술 자원의 보호, 회복, 유지 • 연방 사고관리와 대응구조 내부에서 통화의 검토
ESF #3 - Public Works & Engineering (공공업무와 엔지니어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반체계보호와 긴급보수 • 기반체계회복 • 엔지니어링 서비스와 건축관리 • 생명구조와 생명유지 서비스를 위한 비상계약지원
ESF #4 - Firefighting (소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방 소방활동의 조정 • 황무지, 지방, 도시의 소방작전의 지원
ESF #5 - Emergency Management (위기상황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관리와 대응노력의 조정 • 임무과제의 수립 • 자원과 인적자원 • 사고행동기획 • 재무관리
ESF #6 - Mass Care, Emergency Assistance, Housing, & Human Services (집단돌보기, 긴급지원, 거주, 복지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단돌보기 • 위기상황지원 • 재해지역 거주 • 복지사업
ESF #7 - Logistics Management & Resource Support (물류관리와 자원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적인 국가단위 사고의 물류기획, 관리, 유지력 • 자원지원 (시설물 공간, 사무실 장비와 공급품, 계약서비스 등)
ESF #8 - Public Health & Medical Services (공공보건과 의료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보건 • 의료 • 정신보건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량사상 관리
o ESF #9 - Search & Rescue (수색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명구조 지원 • 수색구조 작전
ESF #10 - Oil & Hazardous Materials Response (기름과 위험물 대응)	기름과 위험물 (화학적, 생물학적, 방사능 등) 대응 장단기 환경청소
ESF #11 - Agriculture & Natural Resources (농업과 천연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양분 지원 • 동·식물 질병과 해충 대응 • 음식물 안전과 안보 • 천연자원, 문화자원, 역사적 유물보호와 회복 • 안전과 주택지역 애완동물의 복지
ESF #12 - Energy (에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기반체계 평가, 보수, 회복 • 에너지산업 유틸리티 조정 • 에너지 예보
ESF #13 - Public Safety & Security (공공안전과 안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물과 자원안보 • 안보기획과 기술자원 지원 • 공공안전과 안보지원 • 접근성, 교통, 군중통제의 지원
ESF #14 - Long-Term Community Recovery (장기적 차원의 지역사회 복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경제적 지역사회 피해평가 • 주, 지방정부, 민간분야에 대한 장기적 차원의 지역사회 복구지원 • 경감프로그램 집행의 분석과 검토
ESF #15 - External Affairs (외부관계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상황 공공정보와 보호행동 지침 • 대중매체와 지역사회 관계 • 미의회 관계와 국제관계 • 소수부족 관계와 격리지역 관계

<표 15> 긴급지원기능(ESF) 기능 및 주요 내용

긴급지원기능(ESF)은 특정한 기능별 영역의 권한, 자원, 능력에 따라 지정된 주무기관(Primary Agency)이 있다. 다른 기관들은 자원이나 능력에 따라서 한 두개의 긴급지원기능(ESF)를 지원하는 보조기관(Support Agency)으로 지정한다. 긴급지원기능(ESF)의 주무기관과 보조기관에 대한 지명은 다음과 같다.

<표 16> 긴급지원기능(ESF)별 주무기관과 지원기관 현황

기관	긴급지원기능 (ESF)														
	ESF #1 - 교통	ESF #2 - 통신	ESF #3 - 공공업무와 엔지니어링	ESF #4 - 소방	ESF #5 - 위기상황 관리	ESF #6 - 집단 돌보기, 긴급 지원, 거주, 복귀 사업	ESF #7 - 물류관리와 자원지원	ESF #8 - 공공 보건과 의료 서비스	ESF #9 - 수색구조	ESF #10 - 기름과 위험물 대응	ESF #11 - 농업과 천연자원	ESF #12 - 에너지	ESF #13 - 공공안전과 안보	ESF #14 - 장기적 자원의 지역 사회 복구	ESF #15 - 외부관계 (업무)
농무부(USDA)			S		S	S	S	S		S	C/P/S	S		P	S
농무부/산림청 (FS)	S	S	S	C/P		S	S	S	S	S			S		
상무부(DOC)	S	S	S	S	S		S	S	S	S	S	S	S	S	S
국방부(DOD)	S	S	S	S	S	S	S	S	P	S	S	S	S	S	S
국방부/미육군 공병단(USACE)	S		C/P	S		S	S	S	S	S	S	S	S	S	
교육부(ED)					S										S
에너지부(DOE)	S		S		S		S	S		S	S	C/P	S	S	S
보건복지부 (HHS)			S		S	S	S	C/P	S	S	S			S	S
국토안보부 (DHS)	S	S	S		S		S	S	S	S	S	S	S	P	C
국토안보부/연방위험관리청(FEMA)	S	P	P	S	C/P	C/P/S	C/P	S	C/P	S	S			C/P	P
국토안보부/국가통신체계 (NCS)		C/P					S					S			
국토안보부/해양경비대 (USCG)	S		S	S				S	P	P			S		
주택도시개발부 (HUD)					S	S								P	S
내무부(DOI)	S	S	S	S	S	S	S	S	P	S	P/S	S	S	S	S
법무부(DOJ)	S				S	S		S	S	S	S		C/P		S
노동부(DOL)			S		S	S	S	S	S	S	S	S		S	S
국무부(DOS)	S		S	S	S			S		S	S	S			S

C = 조정자, P = 주요(담당)기관, S = 지원(보조)기관

2) 미국 긴급사태처리계획 (EOP)

미국의 주(State) 및 지역(Local)정부에서 긴급사태처리계획(EOP: Emergency Operations Plan)을 수립하여 관할지역의 위기상황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긴급사태처리계획(EOP)은 관할지역의 다양한 위험요소에 대하여 개별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위험요소들에 공통된 효과를 줄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위기상황 발생시 예경보, 대피, 보건의료 등 기본적인 위기상황관리 업무에 대하여 체계화하고 있다. 긴급사태처리계획(EOP)은 기능(Functional format), 긴급지원기능(Emergency Support Function format), 국(청)/부(과) 등 조직 활동을 대상으로 계획이 구성되어 있다. 긴급사태처리계획(EOP)는 통합위기상황 준비의 안내 (CPG) 1-8과 주와 지방을 위한 안내서 (SLG-101)를 바탕으로 긴급사태처리계획안을 만들었으며, 전통적인 긴급사태처리계획(EOP)은 ①기본계획(Basic Plan), ②기능부속자료(Functional Annexes), ③위험세분화 별첨자료(Hazard-Specific Appendices)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계획(Basic Plan)은 관할지역의 긴급사태관리체계 개요를 제공함. 기본계획은 직면한 위험상황, 역량, 필요사항과 요구사항, 그리고 관할지역의 긴급사태관리구조를 간략히 설명함. 또한 각각의 긴급사태 국면에 대한 기대미션 수행을 검토하고, 주어진 긴급지원기능을 지휘하는 기관을 지정하고 있다. 기능부속자료(Functional Annexes)는 지휘·명령, 위기상황 정보통신 등 전달체계, 피해평가(Damage Assessment)와 같은 세분화된 대응 및 복구활동을 대상으로 수립되어 있다.

<표 17> 전통적 기능상 긴급사태처리계획(EOP) 수립 구성 내용

목 차	구성 내용
Chap 1. Emergency Operations Pla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unctional Approach - Task-Based Approach
Chapter 2. Basic Plan (기본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troductory Material - Purpose (목적) - Situation and Assumptions (상황 및 가정) - Concept of Operations (운영의 개념) - Organization and Assignment of Responsibilities (조직 및 책임의 할당) - Administration and Logistics (자원관리) - Plan Development & Maintenance (계획 및 유지) - Authorities and References (근거 및 참고자료)
Chapter 3 - Functional Annex (기능 부속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ttachment A - Direction and Control - Attachment B - Communications - Attachment C - Warning - Attachment D - Emergency Public Information - Attachment E - Evacuation - Attachment F - Mass Care - Attachment G - Health and Medical - Attachment H - Resource Management
Chapter 4 - Hazard - Unique Planning Considerations (위험세분화 부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ttachment A - Earthquake - Attachment B - Flood/Dam Failure - Attachment C - Hazardous Materials - Attachment D - Hurricane - Attachment E - Lethal Unitary Chemical Agents and Munitions - Attachment F - Radiological Hazards - Attachment G - Terrorism - Attachment H - Tornado
Chapter 5 - Linking Federal & State Emergency Response Operati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troduction - Relationship - Federal (National and Regional) Response Plans and the State EO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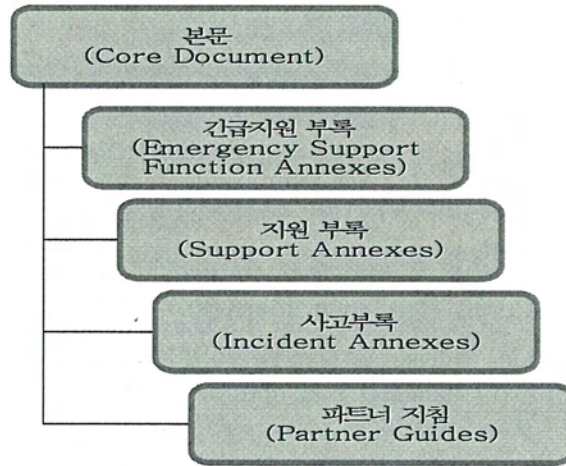
3) 국가위기상황대응체계(NRF)

미국의 국토안보부(DHS :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는 모든 위기 상황 대응을 위해 국가차원의 지침서(Guideline)인 국가위기상황대응체계(NRF : National Response Framework)를 2008년 1월에 발표하였다. 국토안보부는 국가 위기상황에 대한 총괄적인 대응을 위해 2004년과 2006년에 국가위기상황 대응계획(NRP : National Response Plan)을 수립하였으며, NRP가 위기상황 항목에 따른 각 기관의 역할을 규정하였으며, NRF는 위기상황 대응활동에 중심으로 수립되어 있다.

NRF는 국가차원에서 국가위기상황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조직, 비정부 조직(NGO), 개별민간(Private) 부분과의 협력을 위한 역할과 책임을 할당하고 인명 구조, 자원 및 환경 보호, 기본적인 인간의 필요 충족을 위한 즉각적인 활동으로 미리 계획된 긴급대응 계획을 수행하고 단기적인 복구를 지원하는 활동 등에 기술하고 있다.

NRF는 지방단위, 소수민족단위, 주단위, 국가단위에서 수차례 연습되고 보강된 공통적인 교훈과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허리케인 Katrina 와 Rita 의 사례를 통해 도출된 핵심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특히 치명적인 위기상황에 놓인 지역사회와 주(states)를 지원하기 위하여 연방정부가 어떻게 조직화되어야 하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를 관리하는데 지속적으로 템플릿을 제공해주는 국가사고관리체계(NIMS)에 기초하여 NRF를 수립하였다.

미국의 국가위기상황대응체계(NRF)는 본문, 긴급지원 부록(ESF Annex), 지원 (Support) 부록, 사고(Incident) 부록, 파트너 지침으로 구성되어 있다. NRF 본문은 발생하는 어떠한 사고에 대하여 국가차원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전체의 대응, 역할과 책임, 대응행동, 대응조직, 기획 의무사항의 원칙을 기술하고 있다.



[그림 6] 국가위기상황대응체계(NRF) 구성

<표 18> 국가위기상황대응체계(NRF) 구성

구 분	구 성 내 용
긴급지원 부록 (ESF Annex)	- 연방의 자원과 역량을 국가대응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기능으로 분류 (예, 교통, 소방, 집단 돌보기 등)
지원 (Support) 부록	- 모든 사고에서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기본적 지원을 기술 (예, 재무관리, 자원봉사자와 기부관리, 민간분야 조정 등).
사고(Incident) 부록	- 사고유형별 대응방안을 기술 (예, 생물학적 사고, 핵/방사능 사고, 사이버 사고, 집단대피 사고 등).
파트너 지침	- 지방, 소수민족, 주, 연방, 민간분야 위기상황대응 파트너의 역할과 행동을 설명

국가위기상황대응체계(NRF) 본문 구성은 ①역할 및 책임, ②대응활동, ③대응조직, ④구성요소 등으로 구성되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9> 국가위기상황대응체계(NRF) 구성 내용

목 차		구성 내용
본문	Overview	- 개요
	CHAPTER I - ROLES AND RESPONSIBILITIES (역할 및 책임)	- Local (지방정부) - The Private Sector and NGOs (민간기관) - States, Territories, and Tribal Governments (주정부) - Federal (연방정부)
	CHAPTER II - RESPONSE ACTIONS (대응활동)	- Respond (대응) - Recover (복구)
	CHAPTER III - RESPONSE ORGANIZATION (대응조직)	- Key Concepts (핵심개념) - Local Response: Structures and Staffing (지방정부 대응: 구조 및 인력) - State Response: Structures and Staffing (주정부 대응: 구조 및 인력) - Federal Response: Structures and Staffing (연방정부 대응: 구조 및 인력)
	CHAPTER IV - PLANNING: A CRITICAL ELEMENT OF EFFECTIVE RESPONSE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구성요소)	- The Framework and Planning (체계 및 계획) - The Value of Planning (계획수립의 가치) - National Preparedness Architecture (국가위기상황대비체제) - The Federal Planning Structure (연방계획 구조) - The State, Tribal, and Local Planning Structure (주계획 구조) - Criteria for Successful Planning (계획 기준)
	CHAPTER V - ADDITIONAL RESOURCES (추가사항)	- Supporting Documents & the NRF Resource Center (관련 문서와 NRF 자원센터) - Effective Date and Framework Implementation (유효기간, 체계 구현)
긴급지원 부록 (ESF Annexes)		- Emergency Support Function #1 ~ #15 (긴급지원기능)
지원 부록 (Support Annexes)		- Financial Management, Volunteer and Donations Management etc (재무관리, 자원봉사 및 기부관리 등)
사고부록 (Incident Annexes)		- Biological, Nuclear/Radiological, Cyber, Mass Evacuation etc (생화학, 사이버 등)
파트너 지침 (Partner Guides)		- 위기상황대응 파트너의 역할과 행동 등

4) 원자력 안전규제 관련 법령

가) 원자력관련 법규

미국은 약 10 여개의 원자력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핵연료주기시설의 개발과 안전규제를 수행한다. 하지만 선진 핵연료재순환시설의 규정과 인허가 관련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NRC에서 검토하여, NUREG-1909 (Background, Status, and Issues Related to the Regulation of Advanced Spent Nuclear Fuel Recycle Facilities)를 발간하였다.

<표 20> 미국의 원자력관련법규

구분	미국 법규	비고
1	Atomic Energy Act	1954
2	Energy Reorganization Act	1974
3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4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1969
5	Uranium Mill Tailings Radiation Control Act	1978
6	Nuclear Non-Proliferation Act	1978
7	West Valley Demonstration ProjectAct	1980
8	Nuclear Waste Policy Amendments Act	1982
9	Low-Level Radioactive Waste Policy Amendments Act	1985
10	Diplomatic Security and Anti-TerrorismAct	1986
11	Nuclear Waste Policy Amendments Act	1987
12	Solar, Wind, Wasteand Geothermal Power Production Incentives Act	1990
13	Energy Policy Act	1992

나) 규제요건

□ 선원물질의 소지 및 사용에 대한 특수허가(10CFR40)

정련, 변환, 가공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선원물질의 소지 및 사용에 대한 특수허가 일반요건은 총 6가지로 다음과 같다.

<표 21> 특수허가 일반요건(Sec.40.32)

구분	일반 요건	비고
1	우라늄 농축시설에서 선원물질 사용을 포함하는 허가신청의 경우 10CFR140의 해당규정을 만족할 것	
2	허가신청이 해당 특별허가요건을 만족할 것	
3	10CFR51, Subpart A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허가발급의 타당성을 입증할 것	
4	허가 발급이 안보 및 공중의 보건 및 안전에 유해하지 않을 것	
5	신청자가 건강을 보호하고 생명과 재산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신청목적에 맞게 선원물질을 사용하는데 합당한 훈련과 경력의 자격을 보유할 것	
6	허가신청이 법으로 인가된 목적의 것일 것	

□ 특수핵물질의 소지 및 사용에 대한 특수허가(10CFR70)

정련, 변환, 가공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특수핵물질의 소지 및 사용에 대한 특수허가 요건은 총 12가지로 다음과 같다.

<표 22> 특수허가 일반요건(Sec.40.32)

구분	일반 요건	비고
1	우라늄 농축시설에서 특수핵물질 사용을 포함하는 허가신청의 경우 10CFR140의 해당규정을 만족할 것	
2	허가 대상사업이 플루토늄 처리 및 핵연료가공, scrap 회수, UF6의 변환, 혹은 우라늄 농축시설에서 특수핵물질사용을 포함한다면 신청자의 비상계획이 적절할 것	
3	물리적 보안계획이 적절할 것	
4	운반 중 특수핵물질의 물리적 방호계획이 적절할 것	
5	허가 대상사업이 플루토늄 처리 및 핵연료가공시설의 운영인 경우 주요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건설이 신청서에 일치되게 완료할 것	
6	허가 대상사업이 플루토늄 처리 및 핵연료가공, scrap 회수, UF6의 변환, 혹은 우라늄 농축시설 건설 및 운영 혹은 기타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이라고 NRC가 판단되는 경우에 10CFR51, Subpart A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허가발급의 타당성을 입증할 것	
7	물질계량관리 절차가 적절할 것	
8	사업 특성이 NRC의 신중을 요하는 것일 경우에 법규에 일치되게 신청자가 사업에 추진하는데 재정적으로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보일 것	
9	건강을 보호하고 생명과 재산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는데 신청자의 절차서가 적절할 것	
10	신청자의 설비 및 시설이 건강을 보호하고 생명과 재산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는데 적합할 것	
11	법규에 일치하여 신청목적에 맞게 특수핵물질을 사용하는데 합당한 훈련과 경력의 자격을 보유할 것	
12	허가신청이 법으로 인가된 목적의 것일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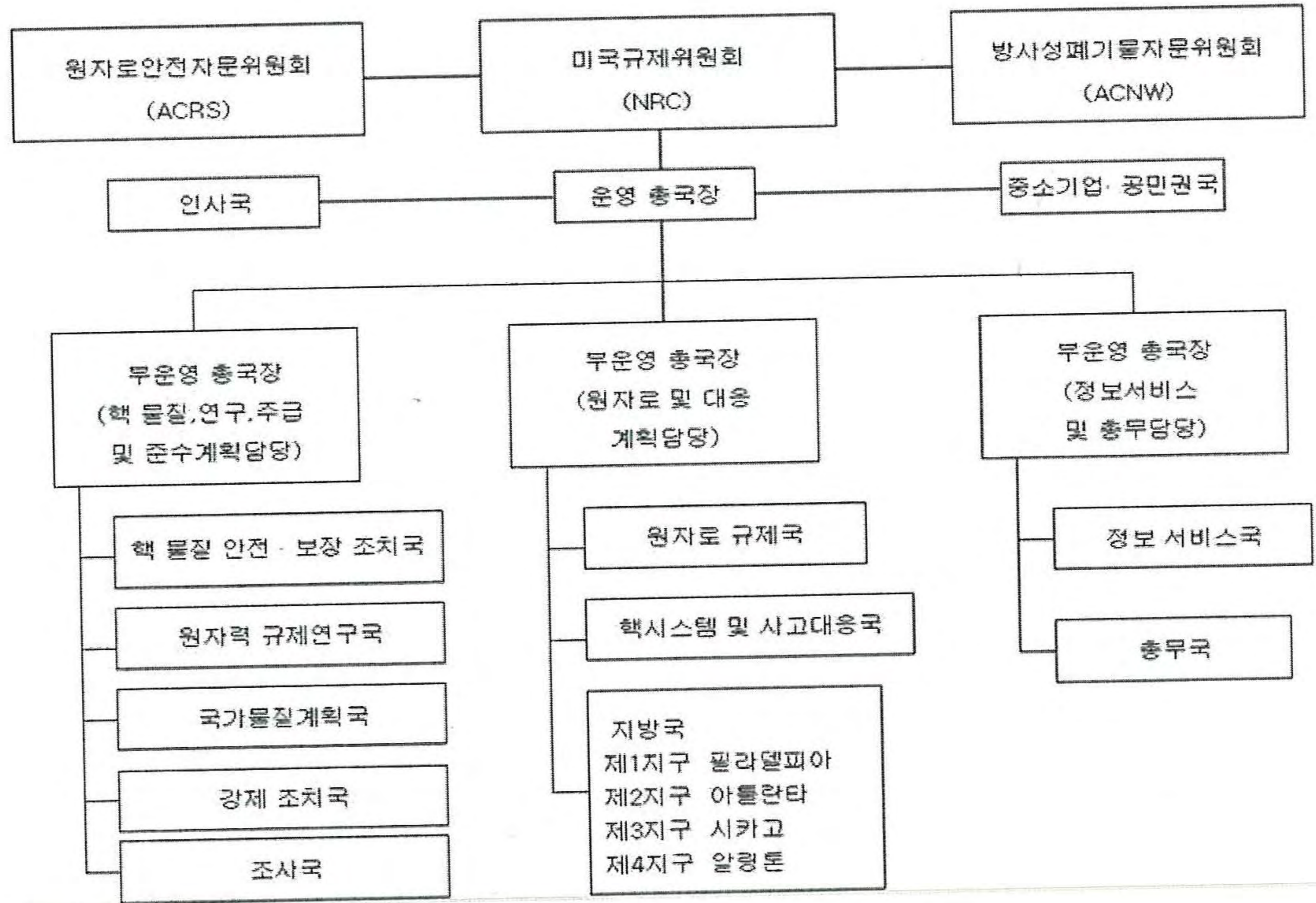
5) 원자력 안전규제 조직

1946년 Atomic Energy Act에 의해 원자력의 이용과 안전규제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기능을 가진 원자력위원회(AEC)가 설립되었으며, 공중 보거노가 환경 보호를 보증하고, 부산물, 선원 및 특수 핵 물질의 산업적 이용에 공중 보호와 안전을 증진하기 위하여, 1974년 에너지 재편 법(The Energy Reorganization Act)에 의해 AEC로부터 독립된 원자력 안전규제를 담당할 원자력규제위원회(NRC)가 설립되었다.

NRC는 1975년 1월 19일부터 규제업무를 개시하였는데, 규정 제정, 상용 원자로의 건설 및 운영허가, 핵물질의 소유 및 사용과 폐기물의 허가, 핵물질 도난 및 방사선적 사보타지로 부터의 시설 사찰, 원자력시설의 검사 및 규정의 집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NRC는 상용 핵연료주기 물질 및 시설, 폐 밀봉 선원을 포함하는 상용 밀봉선원 등을 규제하고 있다. 또한 NRC는 상용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독립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 그리고 고준위폐기물과 사용후핵연료 처분을 위하여 제안된 Yucca Mountain 처분장에 대한 허가에도 책임이 있다.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미국의 원자력안전규제 조직은 다음과 같다.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1970년에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이 설립되었는데, 이는 물, 공기 그리고 토양에 대하여 미국에서 점점 공중의 요구가 증가되었기 때문이다. EPA는 환경이 이미 받은 피해를 보수할 책임이 있고, 좀 더 청정한 환경에 대한 신규 기준을 마련할 책임도 있다. EPA는 위해 물질과 특정 방사성물질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일반 허용 환경기준을 설정한다. 이것과 후속 법규는 방사성 및 비방사성 우라늄 정련 부지의 복구활동을 위한 기준, 우라늄 연료주기의 환경기준 그리고 사용후핵연료, 고준위폐기물(HLW), 초우라늄 폐기물(TRU) 등의 관리 및 처분에 대한 환경기준을 설정하도록 EPA에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EPA는 국방관련 TRU 폐기물의 처분을 위한 WIPP(Waste Isolation Power Plant) 처분장의 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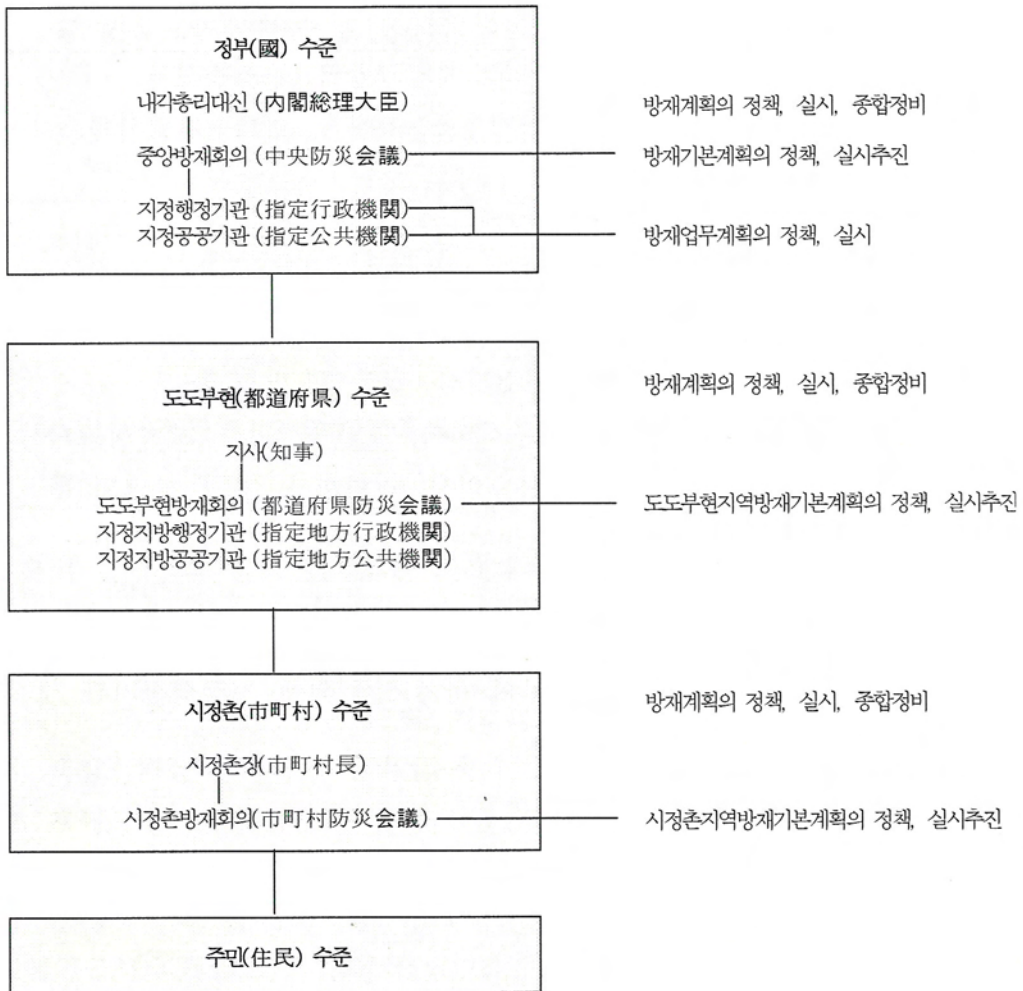
정 준수여부를 확인한다. 청정대기법 하에 있는 EPA 기준은 국방관련 사용후 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을 관리하는 DOE 부지로부터 방출되는 방사성핵종의 공기 중 부유입자를 제한한다.



[그림 기 미국의 원자력 안전규제 조직

나. 일본사례

일본의 위기상황 조직체계는 내각부(內閣府)에 위기담당 조직을 구성하여 사고재해를 포함한 다양한 위기상황 대책에 대해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하고 있다. 국가수준에서는 전각료 및 일본은행, 일본적십자 등의 공공기관의 대표자 등으로 구성되는 중앙방재회의를 설치되어 있다.



[그림 8] 일본의 위기관련 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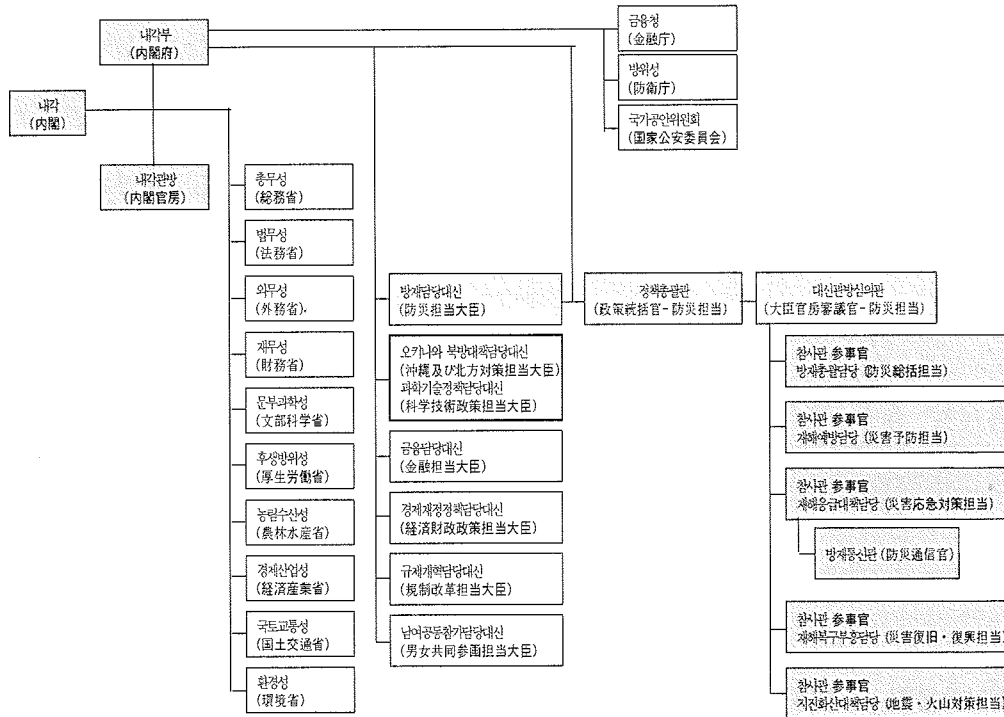
재해대책기본법에서 독립행정법인, 인가법인, 특수법인 및 민간회사 중에서 내각총리대신이 지정하여 위기상황대책의 역할을 부과하고 있다.

<표 23> 위기상황관리 관련 지정기관

구 분	지정 기관
지정행정기관 지정	○ 내각부, 국가공안위원회, 경찰청, 금융청, 총무성, 법무성, 소방청, 재무성, 문부과학성, 문화성, 후생노동성 등
지정지방행정기관 지정	○ 오키나와종합사무국, 지방경찰국, 종합통신국, 오키나와종합통신사무소, 재무국, 미토원자력사무소, 지방후생국 등
지정공공기관 지정	○ 독립행정법인 : 방재과학기술연구소, 방사선의학종합연구소, 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 국립병원기구 등 ○ 일본은행, 일본적십자사, 일본방송협회 등 ○ 회사 : 고속도로주식회사, 항만주식회사, 고속철도회사, 우체국, 가스회사, 전력회사, NTT 도쿄모 등

일본의 위기상황관리 중앙정부 조직은 내각부 정책총괄관 방재담당 및 중앙방재회의(中央防災會議)가 있고, 정부의 방재조직 외에 지정행정기관 및 지정공공기관을 두고 있다.

제 2 장 국내 및 인접국의 방사능 누출에 따른 위기 수준별 조치사항



[그림 9] 위기관련 중앙정부조직도

일본의 위기상황 관리 법제도는 재해대책기본법(災害對策基本法)에 규정되어 있고, 위기상황 형태별로는 대규모지진 대책특별조치법, 수방법, 석유코미나트 등 재해방지법과 같이 각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재해대책기본법(災害對策基本法)은 국가·지방공공단체 및 기타의 공공기관을 통하여 필요한 체제를 확립,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합과 동시에 방재계획의 작성, 재해예방, 재해응급 대책, 재해복구 및 방재에 관한 재정금융조치 그 밖에 필요한 재해대책의 기본을 제시하고 있다. 재해대책기본법의 내용으로는 ①방재책임 명확화, ②방재 체제, ③방재계획, ④재해예방, ⑤재해응급대책, ⑥재해복구, ⑦재정금융조치, ⑧재해긴급사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원자력 안전규제 범규

가) 규제요건

일본의 핵연료주기시설에 대한 규제요건체계는 핵원료물질, 핵연료물질 및 원자로 규제에 관한 법 및 시행령과 시설별 부령, 원자력안전위원회 지침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표 24> 일본 원자로등 규제법 체계

법률	시행령	부령	
핵원료물질, 핵연료물질 및 원자로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핵원료물질, 핵연료물질 및 원자로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호	핵연료물질 및 핵연료물질의 제련사업에 규칙
		제37호	핵연료물질의 가공사업에 관한 규칙
		제10호	가공시설의 설계 및 공사 방법의 기술기준에 관한 부령
		제10호	사용후 연료의 재처리사업에 관한 규칙
		37호	재처리시설의 설계 및 공사 방법의 기술기준에 관한 부령
		제73호	가공시설, 재처리시설, 특정폐기물관리시설 및 사용시설 등의 용접 기술 기준에 관한 부령

<표 25> 일본 원자력안전위원회 지침체계

기본지침	심사지침
핵연료주기시설의 입지평가상 필요한 플루토늄에 관한 최대피복선량에 대한 지침	핵연료시설안전심사기본지침 - 우라늄가공시설안전심사지침 - 재처리시설안전심사지침

나) 기술기준 체계

원자로 등 규제법에서 핵연료주기사업별로 허가, 지정 또는 인가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시설별로 경제산업부령에서 인·허가 및 검사 적용 기술기준으로서 설계 및 공사 방법, 용접 및 성능에 관한 기술기준과 운영안전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제정한 핵연료 주기시설 인·허가 기본 심사지침 및 시설별 지침이 있다.

재처리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지정기준, 재처리시설의 설계 및 공사방법 인가기준, 사용전검사 합격기준, 용접검사 합격기준이 규정되어 있으며, 재처리시설 지정기준의 내용은 재처리된 핵물질의 군사적 이용을 방지하는 규정과 함께 타 핵주기시설과 같이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의 양면적 성격을 띠면서 포괄적이면서 정성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표 26> 재처리시설 지정기준

구분	일반 요건	비고
1	사업수행에 확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 및 재정적 능력이 있을 것	
2	그 지정을 함으로써 원자력개발 및 이용을 계획적으로 수행하는데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3	재처리시설이 평화적 목적 이외에 이용될 우려가 없을 것	

원자로 등 규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처리시설의 설RP 및 공사방법 인가 기준, 사용전검사 합격기준, 재처리시설의 용접검사 합격기준은 각각 허가 받은 사항의 준수와 경제산업부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설계 및 공사방법 기술 기준」, 「성능 기준 및 용접기술기준」에 적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원자로 등 규제법의 규정에서 위임하여 경제산업부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재처리시설에 대한 기술기준은 첫째, 재처리시설의 설계 및 공사방법에 관한 기술기준, 둘째, 재처리시설의 성능에 관한 기술기준, 셋째, 재처리시설의 용접에 관한 기술기준 등이 있다.

다) 기술기준 구성항목 체계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시설의 설계 및 공사방법에 관한 기술기준, 성능 기술기준 그리고 용접기술기준 등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시설에 관한 기술기준의 구성항목은 다음과 같고, 설계 및 공사방법에 관한 가공사업과 재처리사업의 기술기준 항목을 비교하면 상당수 동일 순서로 나열되어 있어 체계의 일관성을 보여주면서도, 몇 개의 다른 항목들로 시설별 요건의 특이성을 보여주고 있다.

재처리시설의 설계 및 공사방법에 관한 기술기준은 핵연료의 임계방지, 화재 등에 의한 손상방지, 내진성, 재료 및 구조, 밀폐기능, 차폐, 환기 등 전문 총 19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27> 일본 재처리사업 법령상 기술기준 구성항목체계

부령	법령
성능기준	경보장치·비상용동력 장치등의 작동, 방사성폐기물 폐기시설의 처리능력, 방사선 관리시설의 성능, 방사성물질의 농도, 핵연료물질의 임계방지 능력 등, 핵분열생성물의 함유율, 제품의 회수율
운영안전요건	관리구역출입제한, 선량당량 등에 관한 조치, 재처리시설의 순시 및 점검, 재처리시설의 정기자주검사, 재처리설비의 운전, 공장 또는 사업소 내 운반, 핵연료물질 저장, 공장 또는 사업소 내 방사성폐기물 폐기, 방호조치, 위험시 조치
설계 및 공사방법 기술기준	정의, 특수방법에 의한 시설, 핵연료물질의 임계방지, 환재등의 손상방지, 내진성, 재료 및 구조, 폐쇄기능, 차폐, 환기, 사용후핵연료등에 의한 오염방지, 안전상 중요한 시설, 운송설비, 사용후핵연료 반입시설 및 저장시설, 계측제어계통시설, 제어실, 폐기물처리설비, 보관폐기설비, 방사선관리시설, 비상용전원설비

라) 원자력안전위원회 지침 구성항목 체계

핵연료시설 입지평가에 필요한 플루토늄에 관한 최대피폭선량에 대한 지침은 핵연료시설의 사고발생과 관련하여 입지조건을 적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플루토늄에 의한 최대피폭선량한도를 사람의 뼈에 대해 2.4 Sv로, 폐에 대해 3 Sv로, 간에 대해 5 Sv로 규정하고 있으며, 핵연료시설 안전심사기본지침은 우라늄가공시설, 재처리시설, 핵연료물질 사용시설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일본 핵연료시설 안전심사 기본지침의 구성 체계는 제정배경 및 목적의 서문을 비롯하여 가공시설, 재처리시설, 핵연료물질사용시설의 ①적용대상, 방사선업무종사자, 안전상 중요한 시설, 최대예상사고, 단일고장 등의 ②용어정의, 기본적 조건(지침1), 평상시 조건(지침2), 사고시 조건(지침3)의 ③입지조건, 및

폐기능(지침4), 방사선차폐(지침5), 방사선피폭관리(지침6)의 ④방사선관리, 방사성폐기물 방출관리(지침7), 저장등에 대한 고려(지침8), 방사선감시(지침9)의 ⑤환경안전, 단일물질의 임계관리(지침10), 복수물질의 임계관리(지침11), 임계사고에 대한 고려(지침12)의 ⑥임계안전, 지진에 대한 고려(지침13), 지진 이외의 자연환경에 대한 고려(지침14), 화재·폭발에 대한 고려(지침15), 전원상실에 대한 고려(지침16), 방사성물질 이동에 관한 고려(지침17), 사고시에 대한 고려(지침18), 공통사용에 대한 고려(지침19), 준거 규격 및 기준(지침20), 검사, 수리 등에 대한 고려(지침21)의 ⑦기타 안전대책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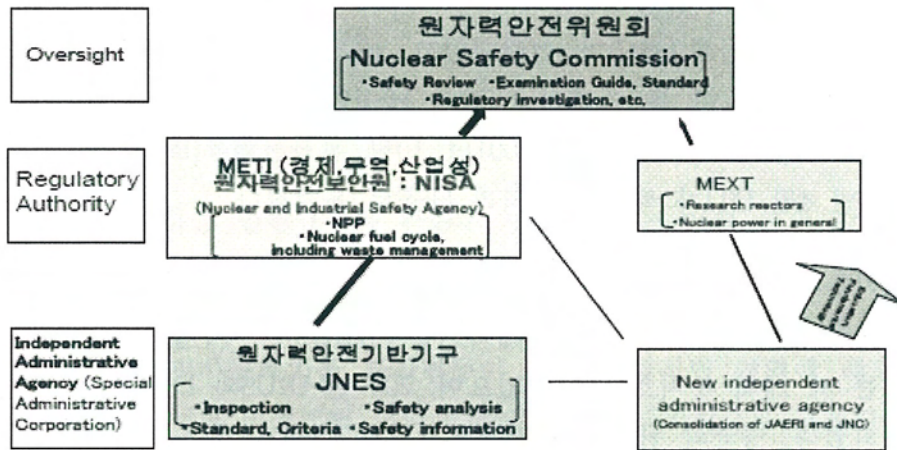
2) 원자력 안전규제 조직

원자력안전보안원(NISA)은 2001년 1월 자원에너지청의 산하기관으로 설립되었으나, 2003년 10월에 자원에너지청으로부터 분리되어 경제무역산업청(METI) 내의 한 부서로 독립되었으며, 이 부서를 기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일본원자력안전기반기구(JNES)가 2003년 10월에 설립되었다. 이러한 규제기관은 원자력시설의 설치, 건설, 운전 등의 각 단계에 걸친 규제업무를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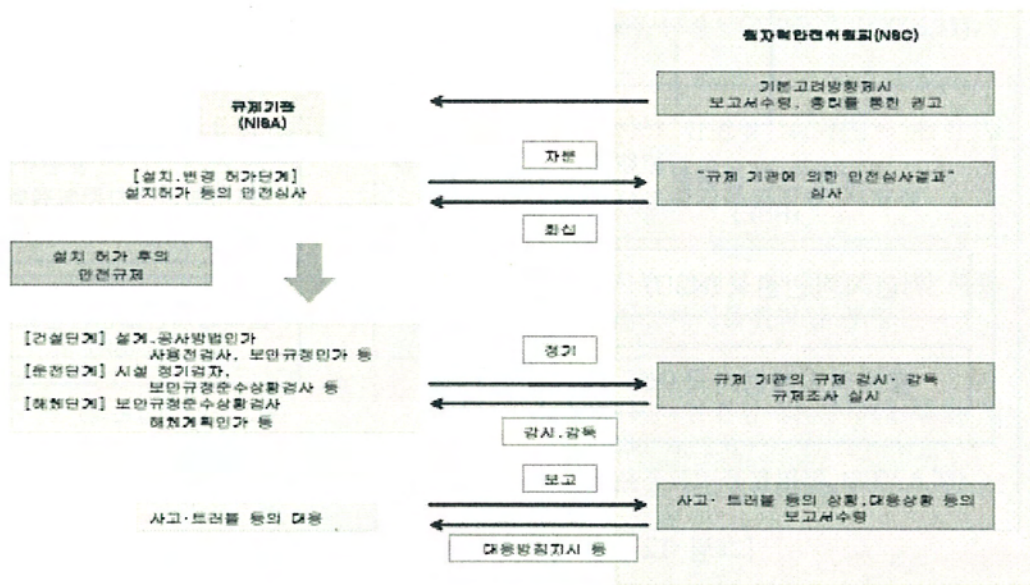
1995년 12월 19일자로 개정된 원자력기본법에 의거 원자력위원회(AEC)가 설립되었으며, AEC로부터 원자력의 사용과 원자력의 안전 간의 책임을 명확히 분리하기 위하여 1978년 10월 4일자로 개정된 원자력기본법에 의거 독립된 원자력안전위원회(NSC)가 총리실 내에 설치되게 되었다. 그러나 2001년 1월 6일 일자로 정부조직이 대폭 개편되면서 총리실에 속해 있던 AEC와 NSC는 내각부로 옮겨져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두 위원회 중 NSC는 1999년 9월 (주)JCO동해사업소 전환시험동에서 발생한 핵임계사고로 독립성을 보다 더 강화하기 위하여 과학기술국에서 총리실로 소속이 2000년 4월 1일자로 잠시 바뀌기도 하였다.

NSC는 위의 규제기관으로부터 원자력시설의 제반 안전에 관한 심사결과를 제출받아 이의 타당성을 심의하고, 위 규제기관의 규제활동에 대한 적정성을 감시/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규제기관의 조직과 원자력위원회와 규제기관

간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그림 10] 일본의 원자력 안전규제 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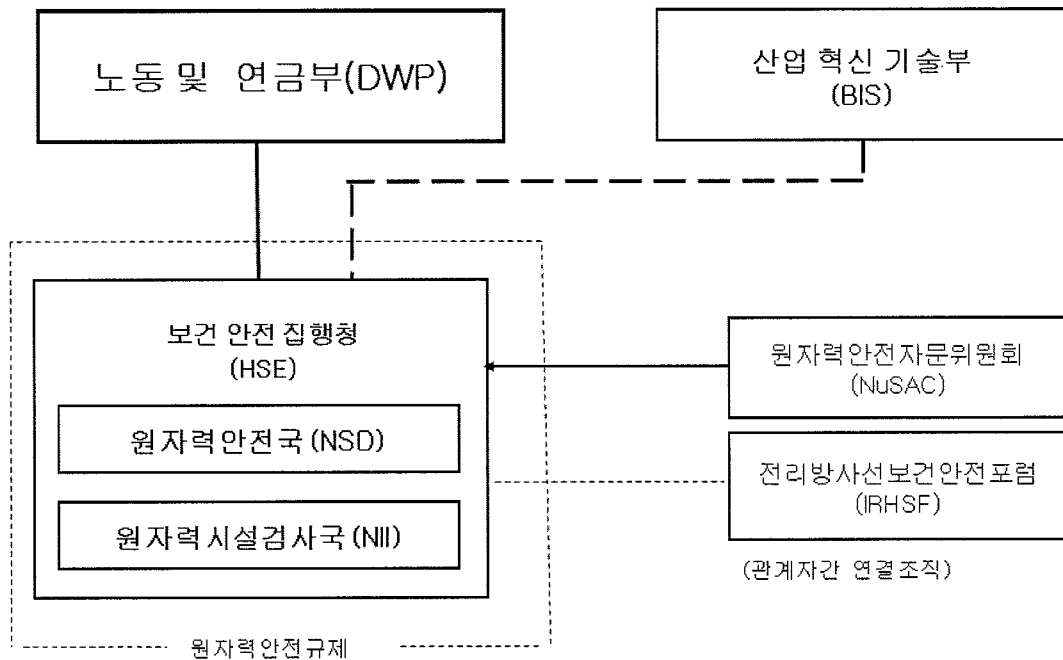


[그림 11] 일본 원자력 안전 위원회와 규제 집행 기관의 역할

다. 영국

1974년 보건안전위원회(HSC)가 설립되었고, 1975년 보건안전행정부(HSE)가 형성되었으나, 2008년 이 두 기관인 HSC와 HSE를 HSE로 합병하였다. 한편, 민간의 원자력보안사무실(OCNS)은 2001년 10월 통상산업부(DTI)내에 설립되었으나, 2007년 4월 DTI가 해체됨에 따라 HSE로 옮겨졌다.

기업혁신기술부(BIS)는 2007년 DTI를 해체하면서 교육기술부(DFES)를 없애고, 아동학교가족부(DCSF), 혁신대학기술부(DIUS), 사업기업규제개혁부(DBERR)라는 세 개의 부처로 개편되었으며, 2009년 DIUS와 DBERR을 통합한 BIS가 신설되었다. 영국의 원자력 안전규제조직은 다음과 같다.



[그림 12] 영국의 원자력 안전규제 조직

라. 프랑스

1) 원자력 안전규제 법규

가) 안전규제 법령체계

프랑스의 방사능 안전규제와 관련된 법령 체계는 아래 표와 같다. 규제지침은 가장 기초단위로써 ASN고시부터 행정법영역으로써 행정부 및 국회의 규제의 대상이 된다. 현재 방사능 관련 법은 2006년 제정된 방사능 안전성 및 투명에 관한 법과 방사능폐기물 관리법등이 있으며 행정법 영역에 해당하는 시행령, 부령 및 고시와 비행정법 영역에 해당하는 규제지침으로 구성되어있다

<표 28> 프랑스 방사능 안전규제 관련 법령 체계

구 분	영 역	부 서	관 련 법 규
규제지침	비행정법영역	-	-
ASN고시	행 정 법 영 역 (규제)	-	방사능안전청(ASN)설립(2006.11)-
시행령	행 정 법 영 역 (규제)	행정부	·방사능 안전성 및 투명에 관한 법 시행령 ·방사능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부령	행 정 법 영 역 (규제)	행정부	·방사능 안전성 및 투명에 관한 부령 ·방사능폐기물관리법 부령
법	입법영역	국회	·방사능 안전성 및 투명에 관한 법 (2006. 6. 13) ·방사능폐기물관리법 (2006.6.28)

나) 규제요건

프랑스 핵연료주기시설은 방사능폐기물처분시설과 함께 방사능시설이외의 기본방사능시설(BNI)로 분류된 기본안전규정(RFS)로 규정되어있다. 기본안전규정은 전체 5장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시설전체적용 일반설계 및 원칙, 주요계통의 일반 설계, 유출물 및 폐기물의 발생, 감시, 처리계통, 운전 적용규정, 일부계통, 구조물, 설비 관련 일반규정 등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으며 프랑스 원자로 이외의 기본원자력시설의 안전규정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29> 프랑스 원자로 이외의 기본원자력시설 기본안전규정체계

구분	구성항목	세부내용
제1장 시설전체 적용 일반 설계 및 원칙	1.1 외부발생 재해방호	항공기 추락 관련 재해
		인접산업환경과 교통로에 의한 잠재적 재해 평가
	1.2 시설 및 설계의 일반원칙	장·단 반감기의 중·저준위 고체폐기물의 장기저장 천층처분시설의 기술안전목표 및 설계기준
		전리방사선 발생장치의 기본개념
	1.3 전리방사선에 의한 위험 방지 규정	방사성물질 방출
		방사선피폭 위험
		책임계방지요건
	1.4 화학적 재해방지에 적용하는 규정	화재방호요건
		폭발 위험
	제2장 주요 계통의 일반 설계	2.1 대기 감시 계통
2.2 배기 계통: 원자로 이외의 시설에 설치된 환기계통요건		
2.3 집수 및 감시 계통		
2.4 전기 계통		
2.5 기타 계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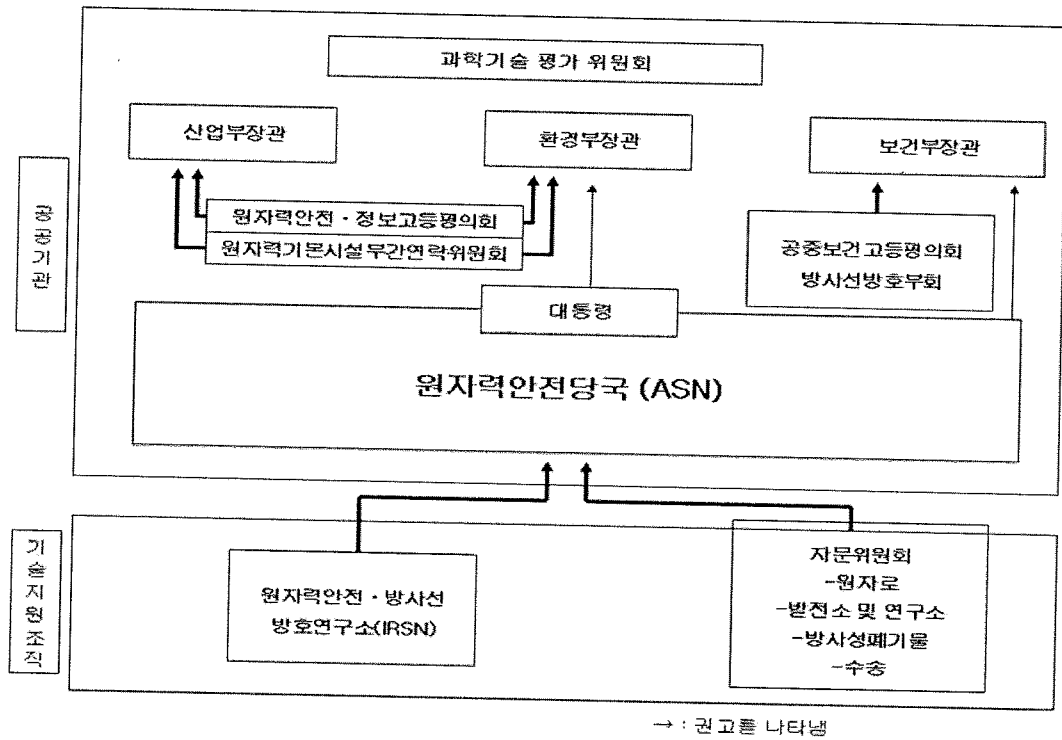
제3장 유출물 및 폐기물의 발생, 감시, 처리계통	3.1 액체 및 기체 유출물	
	3.2 고체폐기물	PWR연료처리로 생성되는 다양한 형태의 폐기물 생산, 관리, 처리, 포장 및 저장에 적용되는 일반 규정
		PWR연료처리로 생성되는 고준위 방사능의 유리화 폐기물의 생산, 관리, 처리, 포장 및 저장에 적용되는 특별규정
		PWR연료처리로 생성되는 중·저준위 역청고화 폐기물의 생산, 관리, 처리, 포장 및 저장에 적용되는 특별규정
		PWR연료처리로 생성되는 중·저준위 시멘트 고화 폐기물의 생산, 관리, 처리, 포장 및 저장에 적용되는 특별규정
		고체 방사성폐기물의 천층처분을 포장물 승인요건
		방사성폐기물의 심층처분장 처분요건
제4장 운전 적용 규정		
제5장 일반 계통, 구조물, 설비 관련 일반규정	5.1 품질보증	
	5.2 기타규정: SIN No A-4212/83 기상측정에 관한 규정	

2) 원자력 안전규제 조직

2006년 6월 13일자로 발효된 “Nuclesa Transparency and Safety(TSN)”, Law 2006-686호에 의거 원자력안전 및 방사선방호총국(DGSNR)과 11개소의

지방 원자력안전 및 방사선방호국이 하나로 합쳐진 원자력안전국(ASN)이 출범을 하게 되었고, 2007년 11월 2일자로 Interministerial Commission for Basic Nuclear Installations(CIINB)가 Consultative Commission for Basic Nuclear Installation(CCINB)로 명칭이 바뀌었다.

또한 2001년 5월 9일 제정된 법(ACT) 제 2001-298호에 의거 건강과 환경의 안전, 감시, 경보 등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할 목적으로 방사선방호 및 원자력안전연구소(IRSN)가 설립되었다. 프랑스 규제조직은 다음과 같다.



[그림 13] 프랑스의 원자력 안전규제 조직

2. 방사능 유출에 관련한 국외 식품안전조치 현황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유출사고 직후 내린 비로 프랑스에서는 빗물과 우유에서 방사성물질인 요오드131이 검출됐고 6일 중국 베이징과 텐진, 허난 지역 등 3개성의 시급치에서 방사성물질이 나왔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따른 방사능 유출로 특히 일본과 밀접한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약 40여개 국가에서 사고발생 즉시 일본산 전체제품의 수입 금지 및 통신품, 가구, 장난감등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공업제품에 대해서도 방사능 검사 실시 및 안전조치를 시행하였다.

대표사례로 러시아와 태국은 후쿠시마를 중심으로 5개현의 식품 수입을 중단한 뒤 우리나라와 중국에서 수입되는 수산물에 대해서도 방사능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인도는 3개월간 일본 전역의 식품을 수입 중지시켰고 타이완은 5개현에서 생산된 일부 식품만 수입을 중지하던 조치를 일부지역에 한하여 전체 식품으로 확대했다. 중국은 일본 12개현에서 생산된 식품뿐 아니라 동물 사료도 수입을 중단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는 사실상의 수입 중단 조치에 해당하는 일본 정부 및 지정기관에서 작성한 방사능기준적합증명서 및 산지증명서를 요구하였다

아시아뿐 아니라 다른 대륙도 국가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시행 중이다.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는 지난달 28일부터 식품 및 생수 수입을 막았고, 중동의 아랍에미리트연합과 유럽의 이탈리아도 일본 식품 수입을 전면 중단했다. EU를 중심으로 각국의 방사능 섭취 기준도 강화되었다.

국내 및 인접국 방사능 누출대비 원전 안전분야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 연구

1) 아시아지역

대응국	주체	일시	안전조치 대상품목	조치	세부내용
네팔		2011.4.15	식품	검사강화	일본수입식품에 대하여 샘플검사
대만	식품안전 관리국	2011.3.14	수출제품, 농산물	수출제품의 방사능 오염 모니터링 관리 및 통제	·후쿠시마현과 근접한 미야기현, 이바라키현의 수출 제품에 대해 방사능 오염 모니터링 관리 및 통제 강화 ·3월 12일 이후 일본에서 수출된 농산물에 대한 산지증명서 제시 요구
대만		2011.3.22	공업제품, 가공제품	방사능 오염 여부 검사 확대, 방사능 기준 초과시 반송조치	·일본산 제품 방사능 기준 초과시 반송 조치 ·국민생활밀착형 공업제품도 방사능 기준 초과시 반송조치 ·3월 12일 이후 일본 제도가공 포장제품 검사 강화
대만		2011.3.25	우유, 유제품, 채소, 과일, 수산물, 해조류, 음료수, 유아식 및 가공품	수입금지	일본 후쿠시마 등 5개현에서 생산된 식품을 25일부터 수입금지
대만		2011.4.8	식품, 과일, 채소, 수산물, 해조류, 유제품, 음료, 이유식, 가공식품		·오염이 심한 후쿠시마, 군마, 도치기, 이바라키, 치바현의 식품에 대하여 전면 수입 정지 ·5현 외 오염이 덜한 지역에서 생산한 과일, 채소, 수산물, 해조류, 유제품, 음료, 이유식에 대하여 대만에서 전수검사를 시행 ·가공식품에 대하여 샘플검사를 시행

제 2 장 국내 및 인접국의 방사능 누출에 따른 위기 수준별 조치사항

대응국	주체	일시	안전조치 대상품목	조치	세부내용
(중동)			제품, 허브, 차, 해초를 포함한 식물성 제품, 동식물성 기름, 살충제, 비료 등		해초를 포함한 식물성 제품, 동식물성 기름, 살충제, 비료 등에 대하여 수입정지
레바논 (중동)		2011.4.18	모든 식품, 사료	방사능기준적합증명서 요구	일본산 모든 식품 및 사료에 대하여 정부가 작성한 방사능 기준 적합 증명서 요구
레바논 (중동)		2011.6.2	모든 식품, 사료	수입정지 및 방사능 기준적합증명서 요구	일본산 모든 식품 및 사료에 대하여 정부가 작성한 방사능 기준 적합 증명서 요구
레바논 (중동)		2011.6.6	모든 식품, 사료	수입중지	일본산 모든 식품 및 사료에 대하여 수입중지
레바논 (중동)		2011.7.25	출하제한 품목 및 출하제한식품을 제외한 모든 식품	수입정지 및 방사능 기준적합증명서 요구	·6개현(후쿠시마현, 군마현, 도치키현, 이바라키현, 치바현, 가나가와현)의 출하제한품목에 대하여 수입정지함. ·출하제한 품목외의 식품에 대해서는 방사능 물질 검사증명서를 요구하고 레바논에서 자체검사함
말레이시아	보건부	2011.3.15	식품	수입식품 안전성 검사	일본산 식품에 대하여
말레이시아	보건부	2011.3.16	전품목	수입식품 '방사능 안전 증명서'의무화	일본에서 수입된 식품의 안정성 확인을 위해 4월 15일부터 수입식품 '방사능 안전 증명서' 제출 및 동봉을 수입요건으로 지정함. 대상식품은 과일, 채소, 생선, 생선제품, 육류제품임. 단 향신료는 검역 대상에서 제외함
말레이시아		2011.4.8	전품목	산지증명서 요구	·수출자가 작성한 산지 증명서 요구,

국내 및 인접국 방사능 누출대비 원전 안전분야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 연구

대응국	주체	일시	안전조치 대상품목	조치	세부내용
					말레이시아에서 전수검사함 ·단, 4월 15일부터 정부가 작성한 방사능기준 적합 증명서가 있으면 샘플 검사 실시
말레이시아		2011.4.28	모든식품	방사능 기준 적합 증명서 요구 및 산지증명서 요구	·정부가 작성한 산지증명서 요구함. 3월 11일전에 수확, 가공한 식품에 대해서는 날짜 증명을 요구함 ·11도현을 제외한 오염이 덜한 지역의 식품에 대해서는 정부가 작성한 산지증명서 요구함
말레이시아		2011.7.4	모든식품	산지증명서 요구 및 자체 전수검사	·오염이 심한 8도현의 식품에 대하여 정부가 작성한 산지증명서 요구와 함께 자전수체검사를 시행 ·8도현외의 지역에 대해서 정부가 작성한 산지증명서를 요구함
말레이시아		2011.8.3	모든식품	해당지역변경	·사이타마현을 제외한 오염이 심한 7도현의 식품에 대하여 정부가 작성한 산지증명서 요구와 함께 자전수체검사를 시행 ·7도현외의 지역에 대해서 정부가 작성한 산지증명서를 요구함
말레이시아		2011.9.27	모든식품	해당지역변경	·오염이 심한 8도현의 식품에 대하여 정부가 작성한 산지증명서 요구와 함께 자전수체검사를 시행 ·8도현외의 지역에 대해서 정부가 작성한 산지증명서를 요구함
말레이시아		2011.10.4	모든식품	해당지역변경	군마현, 카나가와현을 제외한 6현의 식품에 대하여 정부가 작성한 산지증명서 요구 및

제 2 장 국내 및 인접국의 방사능 누출에 따른 위기 수준별 조치사항

대응국	주체	일시	안전조치 대상품목	조치	세부내용
					전수검사를 시행
홍콩	식품안전 센터	2011.3.14	우유, 채소 등 신선식품, 육류, 냉동디저트	방사능 검사	일본산 식품(우유, 채소등 신선식품, 육류, 냉동디저트) 대상 방사능 검사
홍콩 (마카오)	민정총서	2011.3.14	해산물, 쇠고기	식품 안전 검사 강화	일본산 해산물, 쇠고기 등 식품의 방사능 오염 여부 평가 및 일본산 식품에 대한 샘플 검사 강화
홍콩 (마카오)		2011.3.24	식료품	식료품 수입 중단	후쿠시마와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지바 등 5개현의 음식물 수입을 중단
홍콩 (마카오)		2011.4.12	모든 식품	식료품 수입 중단지역 확대	식료품 수입중단 지역을 기존의 5개현에서 12개현으로 확대함
홍콩 (마카오)		2011.4.1	식품	식품검사	양곤공항과 양곤항을 통해 들어오는 식품에 대하여 방사능검사 실시
바레인		2011.4.12	식품	일본산수입식품에 증명서 요구	바레인으로 들어오는 일본산 식품에 대해 수출업체가 방사능에 오염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시 요구
바레인		2011.4.27	식품	수입금지	세계보건기구(WHO)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잠재적 오염 위험이 있다고 발표한 일본과 기타지역의 식품 및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도록 지시함
바레인		2011.5.2	모든 식품	방사능기준적합 증명서 요구	정부 또는 지정기관이 작성한 방사능기준적합 증명서 요구
아랍에 미리트		2011.3.25	그외식품	정부가 작성한 방사능 기준 적합 증명서 요구	
아랍에 미리트		2011.5.10	신선식품 외 모든식품	정부 또는 지정검사기관이	

국내 및 인접국 방사능 누출대비 원전 안전분야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 연구

대응국	주체	일시	안전조치 대상품목	조치	세부내용
				작성한 방사능 기준 적합 증명서 요구	
베트남		2011.3.28	신선식품, 유제품, 가공식품	식품 검사 강화	베트남으로 수출되는 식품에 대한 안전증명서를 일본에 요구
베트남		2011.4.28	가공, 포장식품, 신선식품	방사능기준적합 증명서 요구, 자체 샘플검사 및 전수검사	방사능 기준 적합서 요구 및 가공포장식품에 대하여 샘플검사, 신선식품에 대하여 전수검사 시행
베트남		2011.5.2	가공, 포장식품	방사능기준적합 증명서 요구	정부 또는 지정기관이 작성한 방사능기준적합 증명서 요구
브루나이		2011.3.30	농산물, 어류, 가공식품	식품수입중단 및 방사능기준적합증명서요구	·일본 Kanto지역과 후쿠시마현의 식품(가공식품, 신선어류 및 농업생산물)에 대한 수입을 잠정적으로 중단 ·8개현(후쿠시마, 이라바키, 도치기, 군마, 사이타마, 치바, 도쿄, 가나가와 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수출자가 작성한 산지증명서와 공적 기관에서 작성한 방사능기준적합증명서 요구
사우디		2011.4.16	일본산식품	수입일시정지	
사우디	사우디 식품의약청 (SFDA)	2011.4.19	일본산식품 및 동물사료	일본산수입식품관리 강화	4월 19일 일본산식품 및 동물사료 수입 모니터 실시 발표 일본산식품은 일본보건안전당국이 국제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한 증명서를 갖추지 않을 경우 사우디로 반입이 허용되지 않음
사우디		2011.7.7.	모든식품	수입정지 및 방사능 물질 검사증명서	·12도현(후쿠시마, 군마, 도치기, 이바라키, 미야기, 야마가타, 니가타, 나가노, 야마나시,

제 2 장 국내 및 인접국의 방사능 누출에 따른 위기 수준별 조치사항

대응국	주체	일시	안전조치 대상품목	조치	세부내용
				요구, 자체샘플검사	사이타마, 도쿄, 치바) 지역의 모든 식품에 대하여 수입정지 ·12도현외 지역의 방사능 물질 검사증명서 요구 및 자체 샘플검사를 시행함
싱가포르	농식품 수의청 (AVA)	2011.3.14	과일, 채소, 육류, 해산물 등 신선식품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 실시	안전조치 대상품목에 대하여 방사능 검사 실시
싱가포르		2011.3.24	과일, 채소	식료품 수입 중단	후쿠시마와 인근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치바, 에히메현에서 생산된 유제품과 과일, 채소, 수산물, 육류의 수입 중단
싱가포르		2011.3.27	과일, 채소	식료품 추가수입 중단	도쿄, 가나가와, 사이타마현지역에서 생산한 식료품 추가 수입 중단
싱가포르		2011.4.1	과일, 채소	식품 수입 중단	시즈오카산 평지에서 싱가포르의 기준을 초과하는 방사능 요오드가 검출되어 시즈오카산 과일과 채소의 수입을 중단
싱가포르		2011.4.4	우유 및 유제품, 수산물, 식육, 과채류	수입 중단	후쿠시마, 군마, 이바라키, 도치기현의 우유 및 유제품, 수산물, 식육, 과채류 수입 중단
싱가포르		2011.4.8	식육, 우유, 유제품, 과일, 채소, 수산물	원산지 증명 요구	지자체 또는 상공회의소에서 발행하는 산지증명서 요구 및 자체 샘플검사
싱가포르	농식품 수의청 (AVA)	2011.4.11	식품	일본 식품 수입 금지 해제	일본 에히메현 식품 수입 금지 해제
싱가포르		2011.4.18	농수축산물	일부 농수축산물 출하 제한 설정	후쿠시마 일부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목 표고버섯에 대한 출하 제한 설정
싱가포르		2011.4.21	식육, 우유, 유제품, 과일,	수입정지 및 정부가 작성한 산지증명	·4현(후쿠시마, 군마, 도치기, 이바라키)의 안전조치 대상품목에 대한 수입 정지 결정

국내 및 인접국 방사능 누출대비 원전 안전분야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 연구

대응국	주체	일시	안전조치 대상품목	조치	세부내용
			채소(가공물포함), 수산물	요구	·그 외 지역의 안전조치 대상품목에 대하여 정부가 작성한 산지증명 요구
싱가포르		2011.5.16	식육, 우유와 유제품, 과일과 채소(가공품 포함), 수산물	통관거부	·4현(후쿠시마, 군마, 도치기, 이바라키)의 안전조치 대상품목에 대한 수입 정지 결정 ·그 외 지역의 안전조치 대상품목에 대하여 정부가 작성한 산지증명 요구
싱가포르		2011.5.18	식육, 우유와 유제품, 과일과 채소(가공품 포함), 수산물	해당지역 확대	4현(지바, 도쿄, 가나가와, 사이타마) 지역의 과일과 채소, 채소가공품, 식육, 우유와 유제품, 수산물에 대하여 안전조치 대상품목으로 선정하고 수입정지조치 및 산지증명서 요구
영국		2011.3.23	생선 및 패류 등	검사강화	생선 및 패류 등 일본산 식품에 대해 방사능 물질 검사
오만		2011.4.4	식품, 동물사료	증명서 첨부 조건 부과	일본 및 후쿠시마 원전사태로 영향을 받는 모든 국가에서 수입되는 식품, 동물 사료에 대해 방사능 요오드에 오염되지 않았거나,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기준에 부합함을 입증하는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건을 부과함
오만		2011.4.8	신선식품, 과일, 유제품	방사능 검사	안전조치 대상품목에 대하여 샘플검사 실시
이란		2011.4.6	식품	방사능 검사	일본산 식품에 대하여 방사능 검사를 실시함
이집트		2011.4.1	식품	방사능 검사	일본산 식품에 대하여 방사능 검사를 실시함
이집트		2011.4.11	모든식품, 식물, 식물제품	수입정지	일본산 식품, 식물, 식물제품 수입 정지

제 2 장 국내 및 인접국의 방사능 누출에 따른 위기 수준별 조치사항

대응국	주체	일시	안전조치 대상품목	조치	세부내용
이집트		2011.6.8	모든식품, 식물, 식물제품 및 식물의 종묘 등	수입정지 및 자체검사	3월 11일 이후에 일본에서 출하된 모든 식품, 식물, 식물 제품에 대한 수입정지와 함께 3월 11일 이후에 일본에서 출하된 식물의 종묘에 대한 자체검사 시행
인도	식품안전 기준청	2011.3.16	해산물, 과일, 채소, 식육 등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 실시	3월 11일 이후에 수출된 일본산 해산물, 과일, 채소와 같은 신선식품 샘플에 대하여 방사능 오염 여부 검사
인도	보건가족 복지성	2011.4.5	식품	3개월간 식품 수입 전면 금지	3개월간 또는 방사능 물질의 위험정도가 용인할 수 있는 한도내로 줄어들었다는 신뢰할만한 정보가 나올때까지 모든 일본산 식품의 수입을 금지
인도		2011.4.7	식품	식품 수입 허용	해당 식료품의 검역 강화
인도		2011.4.8	식품	방사능 검사	모든 식품에 대하여 자체샘플검사
인도네시아		2011.3.24	식품	검사증명서 요구	정부가 작성한 방사능 검사 증명서 첨부를 요구
인도네시아		2011.4.8	수산물, 농산물(17품목), 축산물(10품목)	방사능 검사	증명서 제출과 함께 자체 샘플검사 시행
인도네시아		2011.4.25	가공식품	방사능기준적합증명서 요구	정부 또는 지정검사 기관이 작성한 방사능 검사 증명서 첨부를 요구
인도네시아		2011.5.25	가공식품, 우유, 유제품, 식육과 가공품, 곡물, 과일, 채소	품목추가	정부 또는 지정검사 기관이 작성한 방사능 검사 증명서 첨부를 요구
필리핀	정부	2011.3.15	식품	방사능 검사	일본산 농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 실시
태국	식품 의약품청	2011.3.15	식품	방사능 검사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 무작위 검사실시(유제품 및 해산물)

국내 및 인접국 방사능 누출대비 원전 안전분야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 연구

대응국	주체	일시	안전조치 대상품목	조치	세부내용
태국	식품 의약품청	2011.3.17	식품	방사능 추가 검사	한국, 대만, 중국 일부 지역에서 수입된 식품에 대해서도 방사능 오염 가능성 조사를 시작

2) 미주지역

대응국	주체	일시	안전조치 대상품목	조치	세부내용
나이지리아	보건국	2011.3.28	식품, 생수	부분수입중단	식품과 생수 수입 중단
멕시코	보건부	2011.3.17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 실시	수입식품방사능검사 실시	채소, 육류, 생선과 같은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해 엄격한 방사능 오염 검사 실시
미국	FDA	2011.3.17	FDA관할 대상 식품	방사능 안전성에 관한 입장 발표	일본에서 미국을로 수입된 모든 FDA의 관할 대상 식품에 대한 정보(재배지, 수확지, 제조지 등)를 수집하고 있으며, 국경에서의 제품 샘플링을 강화하는 등의 모니터링 전략을 수립
미국		2011.3.22	우유, 유제품, 신선채소, 과일 또는 그 가공품	수입경보발령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토치키현, 군마현에서 선적한 모든 식품 및 사료를 전수검사 대상으로 선정
미국	FDA	2011.3.23	원유, 시금치, 카키나 등	수입 정지조치	야채와 우유 등에서 방사능 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현에서 생산된 시금치와 카키나, 원유 등 수입 정지 조치 및 일본산 수산물에 대하여 방사능 검사 강화
미국		2011.4.8	우유, 유제품, 과일, 채소 및 가공품, 식품 및 사료	방사능 기준적합증명서 요구 및 검사 강화	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지역에서 생산된 우유, 유제품, 과일, 채소 및 가공품에 대해 방사능 기준 적합 증명서를 요구하고 4현의 지역의 식품 및 사료에 대하여 검사를 강화함
미국		2011.4.15	식품, 사료	수입정지 및 방사능 기준 적합 증명서	·후쿠시마, 이바라키현의 시금치, 카키나, 원유 등에 대하여 수입을 금지

국내 및 인접국 방사능 누출대비 원전 안전분야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 연구

대응국	주체	일시	안전조치 대상품목	조치	세부내용
				요구 및 자체 샘플 검사	·6현(후쿠시마, 군마, 도치기, 이바라키, 사이타마, 치바)의 우유, 유제품, 과일, 채소 및 가공품, 그 외 식품과 사료에 대하여 기준적합 증명서를 요구함 ·6현외 지역의 식품 및 사료에 대하여 자체 샘플검사를 시행함
미국		2011.4.21	시금치, 카키나, 원유, 우유, 유제품, 과일, 채소와 그 가공품, 그 외 식품, 사료 등	수입정지 및 방사능 기준 적합 증명서 요구 및 자체 샘플 검사	·후쿠시마, 이바라키현의 시금치, 카키나, 원유, 버섯에 대하여 수입금지 조치 ·6현(후쿠시마, 군마, 도치기, 이바라키, 사이타마, 치바)의 우유, 유제품, 과일, 채소 및 가공품, 그 외 식품과 사료에 대하여 기준적합 증명서를 요구함 ·6현외 지역의 식품 및 사료에 대하여 자체 샘플검사를 시행함
미국		2011.4.22	시금치, 카키나, 원유, 버섯, 캐나다 치어 등	수입정지품목 확대	수입정지품목을 후쿠시마의 캐나다, 치어 대상을 포함하여 시금치, 카키나 원유, 버섯 등으로 확대함
미국		2011.5.18	시금치, 카키나, 원유, 버섯, 캐나다 치어, 죽순, 청나래 고사리, 우유, 유제품, 과일, 채소와 그 가공품, 그 외 식품 사료	수입정지품목 확대 및 지역변경	·수입정지품목을 후쿠시마, 도치기의 죽순, 청나래고사리를 포함하여 시금치, 카키나, 원유, 버섯, 캐나다 치어 등으로 확대함 ·3현(후쿠시마, 도치기, 이바라키)의 우유, 유제품, 과일, 채소와 그 가공품에 대하여 방사능기준적합증명서를 요구 ·3현외 지역의 식품 및 사료에 대하여 미국에서 샘플검사를 시행함
미국		2011.6.16	시금치, 카키나,	수입정지 및 방사능	·후쿠시마 도치기, 이바라키의

제 2 장 국내 및 인접국의 방사능 누출에 따른 위기 수준별 조치사항

대응국	주체	일시	안전조치 대상품목	조치	세부내용
			원유, 버섯, 까나리 치어, 죽순, 청나래 고사리, 우유, 유제품, 과일, 채소와 그 가공품, 그 외 식품 사료	기준 적합 증명서 요구 및 자체 샘플 검사	안전조치대상품목을 수입정지함 ·3현(후쿠시마, 도치기, 이바라키)의 우유와 유제품, 과일, 채소와 그 가공품에 대하여 방사능 물질 검사증명서를 요구 ·3현외 지역의 식품 및 사료에 대하여 미국에서 샘플검사를 시행함
미국		2011.7.12	시금치, 카키나, 원유, 버섯, 까나리 치어, 죽순, 청나래 고사리, 은어, 황어, 산천어, 우유, 유제품, 과일, 채소와 그 가공품, 그 외 식품 사료	수입정지 및 방사능 기준 적합 증명서 요구 및 자체 샘플 검사와 대상 지역확대	·후쿠시마 도치기, 이바라키의 안전조치대상품목을 수입정지함 ·3현(후쿠시마, 도치기, 이바라키)의 우유와 유제품, 과일, 채소와 그 가공품에 대하여 방사능 물질 검사증명서를 요구 ·3현외 지역의 식품 및 사료에 대하여 미국에서 샘플검사를 시행함
미국		2011.10.24	시금치, 카키나, 원유, 버섯, 까나리 치어, 죽순, 청나래 고사리, 은어, 황어, 산천어, 유자, 우육제품, 우육제품, 차, 우유, 유제품,	수입정지 및 방사능 기준 적합 증명서 요구 및 자체 샘플 검사와 대상 지역확대	·후쿠시마, 도치기, 미야기, 이와테, 이바라키, 카나가와, 군마, 치바현의 안전조치대상품목의 수입정지 조치 ·3현(후쿠시마, 도치기, 이바라키)의 우유, 유제품, 과일, 채소와 그 가공품에 대하여 방사능 물질 검사증명서를 요구 ·3현외 지역의 식품 및 사료에 대하여 미국에서 샘플검사를 시행함

국내 및 인접국 방사능 누출대비 원전 안전분야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 연구

대응국	주체	일시	안전조치 대상품목	조치	세부내용
			과일, 채소와 그 가공품, 그 외 식품 사료		
브라질	보건부 산하 위생감시국 (Anvisa), 농업부, 핵에너지위원회 (CNEN)	2011.3.30	식품	식료품 검역 강화	방사능물질오염가능성이 있는 일본산 식료품에 대한 검역을 강화 브라질에 수입되는 일본산 식료품은 4월4일부터 정부가 작성한 방사능 기준 적합 증명서를 요구함
브라질	보건부 산하 위생감시국 (Anvisa), 농업부, 핵에너지위원회 (CNEN)	2011.4.4	전체식품	검사강화	방사능물질오염가능성이 있는 일본산 식료품에 대한 검역을 강화 브라질에 수입되는 일본산 식료품은 4월4일부터 정부가 작성한 방사능 기준 적합 증명서를 요구함
브라질		2011.4.12	식품과 식품원료	증명서 요구	·12도현(후쿠시마외11개지역)의 식품과 식품원료에 대하여 정부가 발행한 신고서(CODEX기준에 적합, 연구분석진단서, 포르투갈어번역)요구

제 2 장 국내 및 인접국의 방사능 누출에 따른 위기 수준별 조치사항

대응국	주체	일시	안전조치 대상품목	조치	세부내용
					·12도현을 제외한 지역의 식품과 식품원료에 대하여 정부가 발행한 산지증명(포르투갈어 번역)요구
브라질		2011.4.26	모든식품	검사실시	12도현외의 모든 식품에 대하여 산지증명(포르투갈어번역)에서 검사실시로 변경

국내 및 인접국 방사능 누출대비 원전 안전분야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 연구

3) 유럽지역

대응국	주체	일시	안전조치 대상품목	조치	세부내용
EU		2011.3.16	식품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 권고	식품 및 사료 신속경보시스템(RASFF)를 통하여 일본에서 수입되는 식품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할 것을 유럽연합 회원국들에게 권고.3월 15일(화) 이후 EU 회원국들은 의무적으로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는 방사능 오염 여부를 검사하고 유럽연합에 이에 관한 정보를 보고해야 함.
네덜란드		2011.3.23	식품		일본산 수입 식품에 대해 추가로 방사능 검사 시작
노르웨이		2011.4.20	식품	EU규제적용	일본에서 수입되는 전식품에 대하여 EU의 규제기준을 적용함
노르웨이		2011.5.25	모든 식품, 사료	방사능물질 검사 증명서 제출 및 산지증명 요구	정부가 작성한 방사능 물질 검사증명서 요구 및 샘플검사, 오염이 덜한 12도현 이외의 지역은 정부가 작성한 산지증명서를 요구하며 일본에서 샘플검사 시행함
노르웨이		2011.6.10	모든 식품, 사료	방사능물질 검사 증명서 제출 및 산지증명 요구	오염이 심한 13도현지역의 식품 및 사료에 대해서는 정부가 작성한 방사능 물질 검사증명서 요구하여 일본에서 샘플검사를 실시함. 오염이 덜한 13도현외 지역의 식품 및 사료에 대해서는 정부가 작성한 산지증명 및 샘플검사를 요구함
뉴칼레도니아 (프랑스령)		2011.4.15	모든 식품, 사료	수입정지	
뉴칼레도니아 (프랑스령)		2011.6.2	모든 식품, 사료	수입정지 및 산지 증명 요구	오염이 심한 12도현의 모든 식품 및 사료에 수입정지 및 오염이 덜한 12도현 외 지역에서 3월 11일 이전에 수확, 제조한 식품에 대해서는 날짜 증명을 요구함

제 2 장 국내 및 인접국의 방사능 누출에 따른 위기 수준별 조치사항

대응국	주체	일시	안전조치 대상품목	조치	세부내용
독일	연 방 식품 농업 소비자 보호 부 (BMELV)	2011.3.15	-	조기경보시스템 작동	조기경보시스템을 설치하여 관찰
독일	노 르 트 라인 베 스트 팔 렌 주	2011.3.16	식품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 실시	뒤셀도르프, 쾰른 및 뒤이스부르크시의 공항검사서 일본산 식품 검사 명령
독일	연 방 식품 농업 소비자 보호 부 (BMELV)	2011.3.17	식품, 사료, 지하수, 토양, 식물, 슬러지, 쓰레기	식품방사능 검사 실시	·일본산 식품에 대해 방사능 검사 실시 ·조기경보시스템 작동 ·식품과 사료, 지하수, 토양, 식물, 슬러지 등 감시
독일	허 센 주 소비자 보호부	2011.3.17	식품	수입식품 검사 강화	·국경수의약검사소에 도착하는 모든 식품 검체(특히 수입시 사전검사 의무가 있는 동물성 식품)의 검사를 강화함 ·EU의 일본산 식품에 대한 검사권고 이후 모든 식물성 식품에 대한 검사를 지시함
독일		2011. 3. 23	식품	검사강화	일본산 수입 식품에 대한 특별 검사 시작
이탈리아		2011.3.16	식품	일본산 동·식물성 식품의 검사명령	일본산 식품 전체의 수입금지 명령
러시아		2011.3.24	식품	식료품 수입 중단	3월 11일부터 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치바, 나가노 6개현에서 생산된 농식품의 수입과 수송을 잠정 중단
러시아	러 시 아	2011.3.28	수산물	수입 수산물 검사	수입수산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 방사능 물질과

국내 및 인접국 방사능 누출대비 원전 안전분야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 연구

대응국	주체	일시	안전조치 대상품목	조치	세부내용
	극동 연 해주 지 역의 위 생 당국			강화	독성 물질 함유 여부 검사를 포함한 품질 및 안전도 검사를 강화
러시아	동 식 물 위 생 검 역청	2.11.3.29	수산물	수입 수산물 검사 강화	일본, 중국, 한국산 수산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조치로서 검사대상 표본을 증가시킴
러시아	러 시 아 농 수 산 물 감 독 청	2011.4.7	수산물	수입금지 확대	242개 일본 수산물 가공회사제품에 대해 일시적 수입금지조치를 취함 (이달초 200개 정도의 금수대상 일본 회사를 확대조치)
러시아		2011.4.26	모든식품	수입정지 지역 확 대 및 자체검사	후쿠시마, 군마, 도치기, 이바라키, 도쿄, 치바에 나가노지역을 추가하여 수입정지
러시아		2011.6.30	모 든 식 품, 수산물, 수 산가공품	수입정지 지역 변 경 및 자체검사	후쿠시마, 군마, 도치기, 이바라키, 도쿄, 치바현 이외 지역의 모든 식품에 대해서 러시아에서 검사
리히텐슈타인		2011.4.18	식품	EU규제적용	일본 수입식품에 대하여 EU의 규제를 적용함
리히텐슈타인		2011.5.25	모 든 식 품, 사료		·정부가 작성한 방사능물질 검사증명서 요구 및 자체 샘플 검사 실시 ·오염이 덜한 지역의 식품에 대해서 정부가 작성한 산지증명 요구 및 자체 샘플 검사 실시
리히텐슈타인		2011.6.2	모 든 식 품, 사료	방사능물질 검사 증명서 요구 및 산 지증명 요구 등	오염이 심한 13도현의 식품 및 사료에 대하여 방사성 물질 검사 증명서 요구 및 자체 샘플검사를 시행함. 3월 11일 이전에 수확제조한 식품에 대해서는 날짜증명을 요구하고 6월 2일 수출분부터 카나가와지역 식품을 대상에 추가함. 13도현외 지역의 식품에 대해서는 정부가 작성한 산지증명 요구 및 자체 샘플검사를 거침

제 2 장 국내 및 인접국의 방사능 누출에 따른 위기 수준별 조치사항

대응국	주체	일시	안전조치 대상품목	조치	세부내용
리히텐슈타인		2011.8.8	모 든 식 품, 사료	방사능물질 검사 증명서 요구 및 자체샘플검사, 산지증명 요구가 필요한 지역변경	야마가타지역 삭제
모로코		2011.5.23	모 든 식 품, 사료	수입정지	일본전역에서 생산되는 모든식품 및 사료 수입정지
모로코		2011.9.15	모 든 식 품, 사료	정부 또는 지정검사기관이 작성한 방사능 물질 검사 증명서 요구 및 산지증명 요구	정부 또는 지정검사기관이 작성한 방사능 물질 검사증명서를 요구함. 3월 28일 이전에 출항하고 3월 11일 이전에 수확, 가공한 식품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함
벨라루스	보건성	2011.3.29		수입강화	일본 수입식품에 대한 수입관리 강화
스위스		2011.3.31	식품	식품규제강화	일본에서 수입되는 식품에 대해 EU의 규제 적용
스위스		2011.5.25	모 든 식 품, 사료	방사능물질검사증명서 및 산지증명 요구	·12도현(후쿠시마 외 11개 지역)지역의 안전조치 대상품목에 대하여 정부가 작성한 방사능물질 검사증명서 요구, 수입국에서 샘플검사 ·12도현을 제외한 지역의 안전조치 대상품목에 대하여 정부가 작성한 산지증명을 요구 ·3월 11일 이전에 수확, 제조한 식품에 대해서는 날짜 증명을 요구
스위스		2011.6.2	모 든 식 품, 사료	해당지역 확대 (12도현→13도현)	·13도현(후쿠시마 외 12개 지역)지역의 안전조치 대상품목에 대하여 정부가 작성한 방사능물질 검사증명서 요구, 수입국에서 샘플검사 ·13도현을 제외한 지역의 안전조치 대상품목에 대하여 정부가 작성한 산지증명을 요구 ·3월 11일 이전에 수확, 제조한 식품에 대해서는 날짜 증명을 요구

국내 및 인접국 방사능 누출대비 원전 안전분야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 연구

대응국	주체	일시	안전조치 대상품목	조치	세부내용
스위스		2011.8.8	모든 식품, 사료	해당지역 확대 (13도현→12도현)	·12도현(후쿠시마 외 11개 지역)지역의 안전조치 대상품목에 대하여 정부가 작성한 방사능물질 검사증명서 요구, 수입국에서 샘플검사 ·12도현을 제외한 지역의 안전조치 대상품목에 대하여 정부가 작성한 산지증명을 요구 ·3월 11일 이전에 수확, 제조한 식품에 대해서는 날짜 증명을 요구
스웨덴	NFA (National Food Administration)	2011.3.23	육류, 수산물, 채소, 과일, 버섯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 실시	EU권고를 따라 3월 11일 이후에 수입된 일본 식품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실시
스페인	식품 안전청 (ASEAN)	2011.3.17	채소, 육류, 사료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 실시	채소, 육류 등 일본산 수입식품 및 사료에 대한 방사능 오염도 조사 실시
아일랜드	식품 안전청	2011.3.18	-	입장발표	아일랜드 방사능 보호연구소(RPII), 세계보건기구(WHO), 유럽위원회 및 기타 식품안전 기관들과 정기적으로 연락하며 방사능 오염 가능성이 있는 일본산 식품이 아일랜드에 유입되는지의 여부를 확인
아일랜드		2011.3.25	식품	검사강화	EU차원에서 일본산 식품 수입 검사 강화
아이슬란드		2011.4.25	식품	EU규제 적용	
아이슬란드		2011.5.25	모든 식품, 사료	정부가 작성한 방사능 물질 검사증명서 요구 및 산지증명 요구	·정부가 작성한 방사능물질 검사증명서 요구 및 자체 샘플 검사 실시 ·오염이 덜한 지역의 식품에 대해서 정부가 작성한 산지증명 요구 및 자체 샘플 검사 실시
아이슬란드		2011.8.1	모든 식품,	해당지역 확대	·안전조치대상지역에 카나가와현 추가

제 2 장 국내 및 인접국의 방사능 누출에 따른 위기 수준별 조치사항

대응국	주체	일시	안전조치 대상품목	조치	세부내용
			사료		·정부가 작성한 방사능물질 검사증명서 요구 및 자체 샘플 검사 실시 ·오염이 덜한 지역의 식품에 대해서 정부가 작성한 산지증명 요구 및 자체 샘플 검사 실시
오스트리아	연 방 보 건부	2011.3.16	식품	동·식물성 식품의 검사 명령	일본산 수입 동·식물성제품의 검체채취 및 검사명령

4) 오세아니아지역

대응국	주체	일시	안전조치 대상품목	조치	세부내용
뉴질랜드		2011.3.25	우유, 유제품, 식육, 과일, 채소, 차, 해조류	식품 방사능 강화	일본 4개현에서 생산되는 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
뉴질랜드		2011.4.6	우유, 유제품, 식육, 과일, 채소, 수산물, 버섯, 차, 곡물, 콩제품, 생강, 겨자 등	원산지 신고	수입업자, 통관업자가 원산지를 신고하면 보통의 수입검사로 대체함
뉴질랜드		2011.4.15	우유, 유제품, 식육, 과일, 채소, 차, 해초, 열채류, 모든 식품	검사강화	우유, 유제품, 식육, 과일, 채소, 차, 해초, 열채류에 대하여 검사를 강화하고 모든 식품에 대하여 원산지 신고를 거침. 원산지 신고는 수입업자, 통관업자가 산지를 자진신고하면 통상적인 수입 검사로 진행함
뉴질랜드		2011.6.2	우유, 유제품, 식육, 과일, 채소, 차, 해초 등	검사강화	
뉴질랜드	차		검사강화		
뉴질랜드	우유, 유제품, 식육, 과일, 채소, 수산물, 버섯, 차, 쌀, 곡		원산지 신고	수입업자, 통관업자가 산지를 자진신고하면 통상적인 수입 검사	

제 2 장 국내 및 인접국의 방사능 누출에 따른 위기 수준별 조치사항

대응국	주체	일시	안전조치 대상품목	조치	세부내용
			물, 대두와 대 두제품, 홍생 강, 고추냉이 등		
뉴질랜드		2011.6.6	차	검사강화	

제 3 장

방사능 위기대응 조치 및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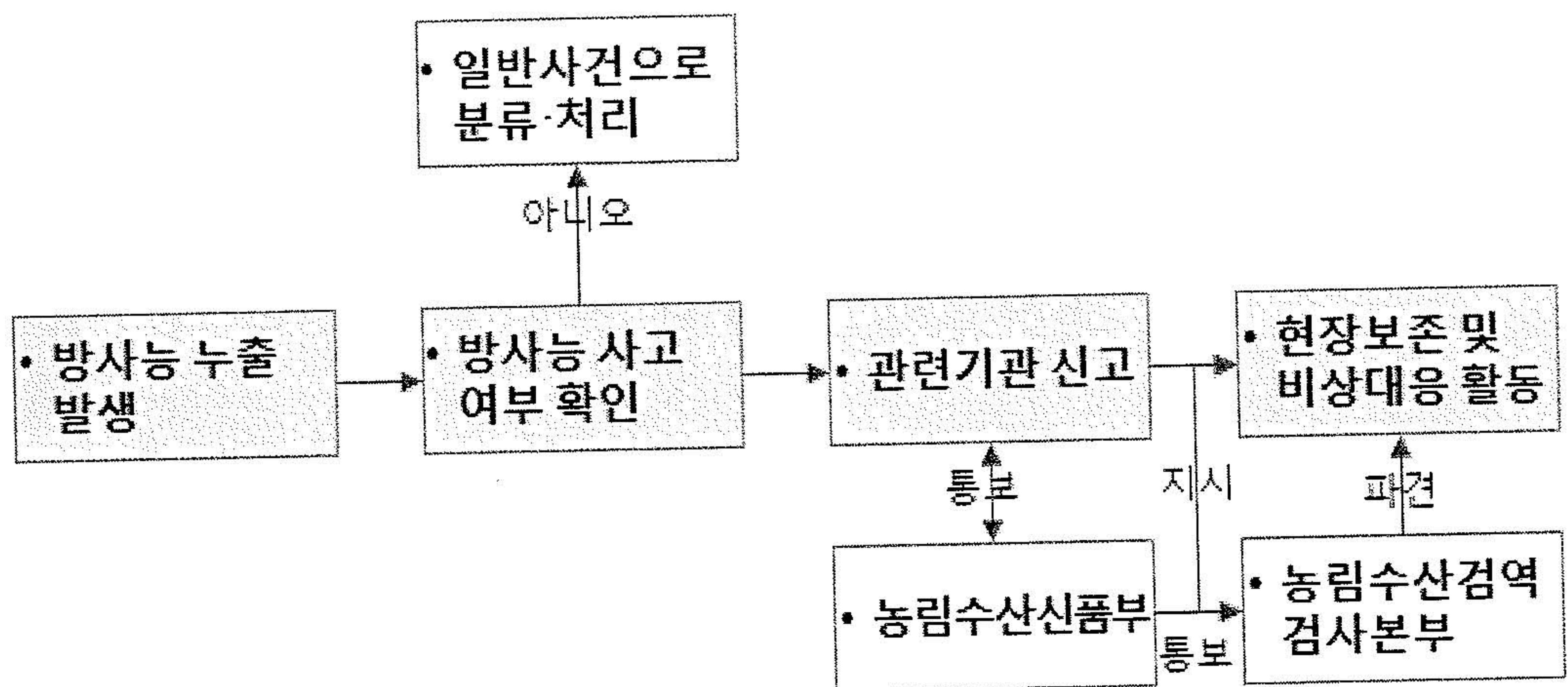
제 3 장 방사능 위기대응 조치 및 절차

제 1 절 상황전파 및 유관기관 협조

방사능이 누출되어 주변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에서 방사능 물질이 검출될 경우 각 관련기관에 상황전파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구축함

1. 사고발생신고 및 보고

가. 신고 및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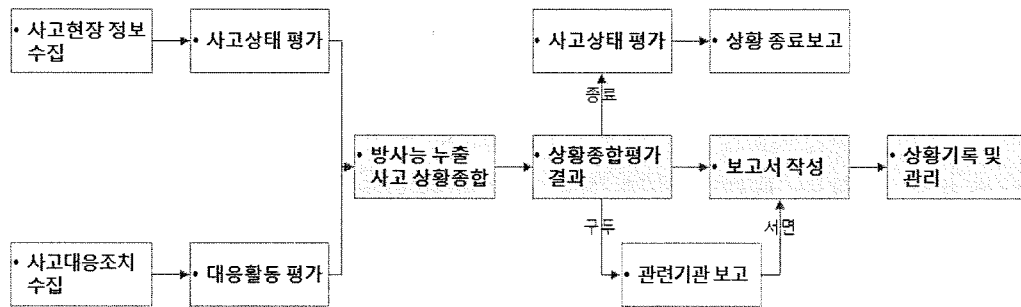


[그림 14] 방사능 누출사고 신고 및 보고

신고 및 보고는 1단계로 사고발생 확인, 2단계 사고발생 신고, 3단계 대응활동 등 3단계로 나누어진다. 1단계 사고발생 확인은 사고발견자 또는 담당자는 방사능 누출사고 발생을 방사능 표지 유무, 사고 현장 방사능 누출량 측정하여 확인한다. 2단계 사고발생 신고는 사고발견자는 신속하게 육하원칙에 따라 관련기관(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 소방관서, 경찰관서, 지자체

체 및 유관기관 등)에 신고를 한다. 3단계 대응활동은 사고 신고자가 비상대응 요원들이 도착할 때까지 사고현장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며, 비상대응요원이 사고현장에 도착하면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그리고 인명구조가 필요한 경우 접수자의 지시를 받아 인명구조 활동을 실시하고 인적사항과 조치상황을 기록한다.

나. 후속 상황보고 및 통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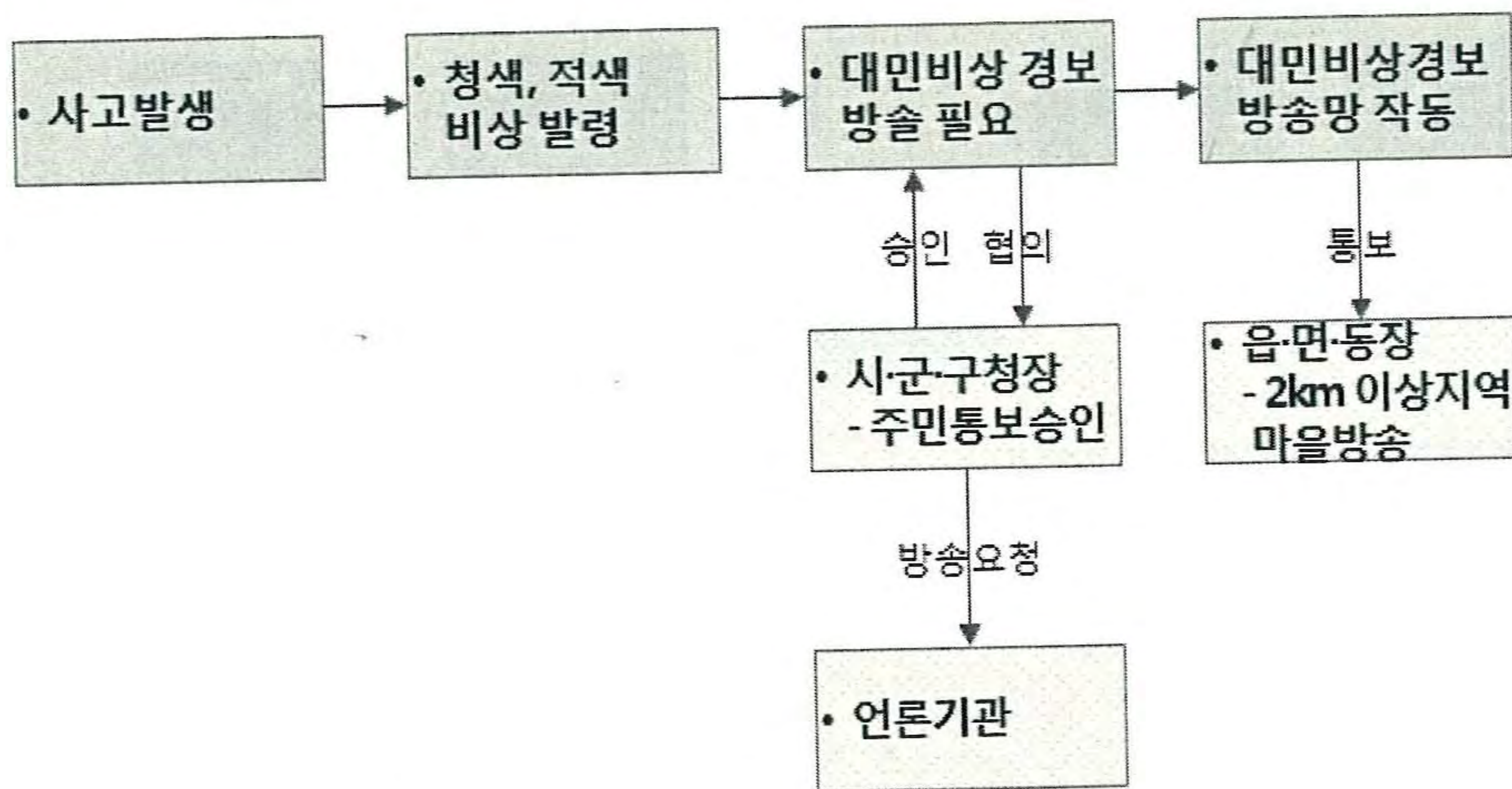
[그림 15] 방사능 누출 사고 후속 상황보고 및 통보

후속 상황보고 및 통보는 1단계 상황정보 수집, 2단계 후속보고, 3단계 보고주기 조정으로 나누어진다. 1단계 상황정보 수집은 방사능 누출사고 발생이후의 사고상황 내용, 피해정보 및 평가결과, 방사능 누출량 측정결과, 피폭환자 발생 여부, 비상대응 활동 내용 등 상황정보를 수집 및 평가하고, 사태악화 여부를 평가하여 후속상황을 보고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2단계 후속보고는 현장상황을 종합하여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소방관서, 경찰청 및 지자체 및 유관기관에 주기적으로 보고 또는 통보를 비상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보고한다. 3단계 보고주기 조정은 장기적인 대응이 필요한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하여 후속보고의 시기를 조정한다.

2. 사고발생의 통보

가. 지역주민에게 사고발생 통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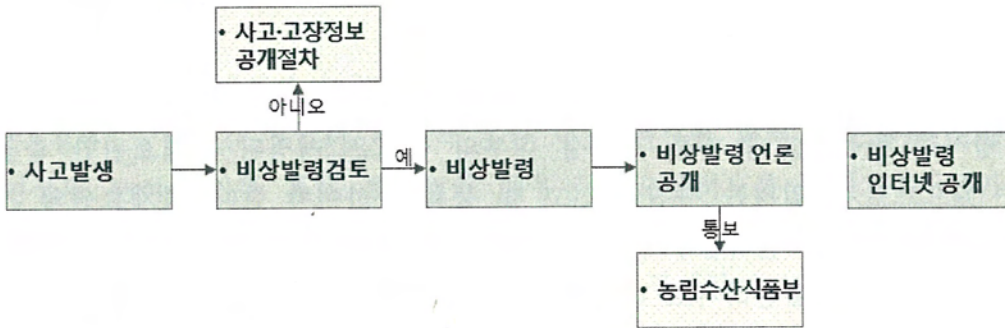
방사능 누출 사고가 발생하여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사고발생사실을 통보해야한다



[그림 16] 지역주민에게 사고발생 통보

지역주민에게 사고발생 통보는 1단계 주민통보결정, 2단계 통보체계, 3단계 언론매체 활용으로 나누어진다. 2단계 주민통보결정은 대민경보방송을 시·군·구 방사능 대책본부장에게 요청하고 경보문안과 대상지역을 지역본부장과 협의하고 시·군·구 지역본부장은 방송요청을 검토, 승인하고 통보자는 예측되는 사고 영향과 주민의 초기행동요령을 포함하여 통보한다. 2단계 통보체계는 시·군·구 지역본부장은 대민비상경보시설이 없는 읍·면·동 지역에 대민비상경보를 통보하도록 지시하고 사고발생의 통보는 민방위체계 및 경찰관서에 통보하거나 TV, 라디오 등 방송매체를 활용한다. 3단계 언론매체 활용은 시·군·구 지역본부장은 TV, 라디오 등 언론매체에게 직접 경보발령방송을 요청하고, 사고발생 통보로 인한 주민의 혼란, 사고내용과 영향 및 행동요령 등에 대한 질의·답변 대책 등을 강구한다.

나. 사고발생정보의 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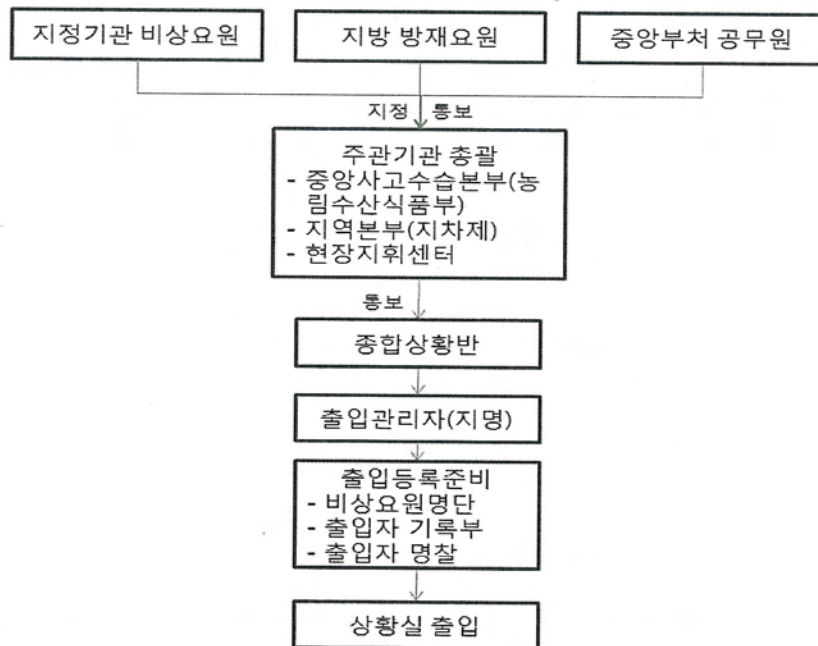
[그림 17] 사고발생정보의 공개

사고발생정보의 공개는 1단계 언론보도자료 작성, 2단계 언론사 통보로 이루어진다. 1단계 언론보도자료 작성은 담당자가 비상발령에 대한 언론보도자료를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보도자료에는 예측되는 사고영향과 방사능 누출 피해를 포함한다. 2단계 언론사 통보는 담당자가 30분 이내에 언론보도자료를 지역 언론사에 통보하고, 중앙언론기관에 대한 언론보도문을 작성하여 공개하고 언론사에 공개한 보도자료는 농림수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공개한다.

제 2 절 방사능 대응조직운영

1. 방재요원 등록 및 상황실 출입

방사능 누출사고에 따른 상황실 내부의 출입은 지정된 방재요원만 출입할 수 있으므로, 출입자는 사전에 신고 및 등록을 하여야 한다. 방재요원의 지정 및 등록은 농림수산식품부의 상황실 운영책임자가 상황실 출입을 관리하는자를 지정하고, 출입관리자로 하여금 출입자를 통제해야한다. 출입관리자는 건물 출입구에서 사전에 통보된 요원의 신원을 확인하고 인적사항을 기록한 후 출입명찰을 교부하여야 한다. 상황실 출입은 통보되지 않은자가 해당 상황실을 출입하고자 할 때 상황실 운영책임자의 허가가 필요하다. 방재요원으로 지정되지 않은 자를 파견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계기관간 인적사항과 담당업무 등을 통보되어야 한다. 허락받지 않은 자는 통제구역 외부의 보도시 등 까지 출입이 허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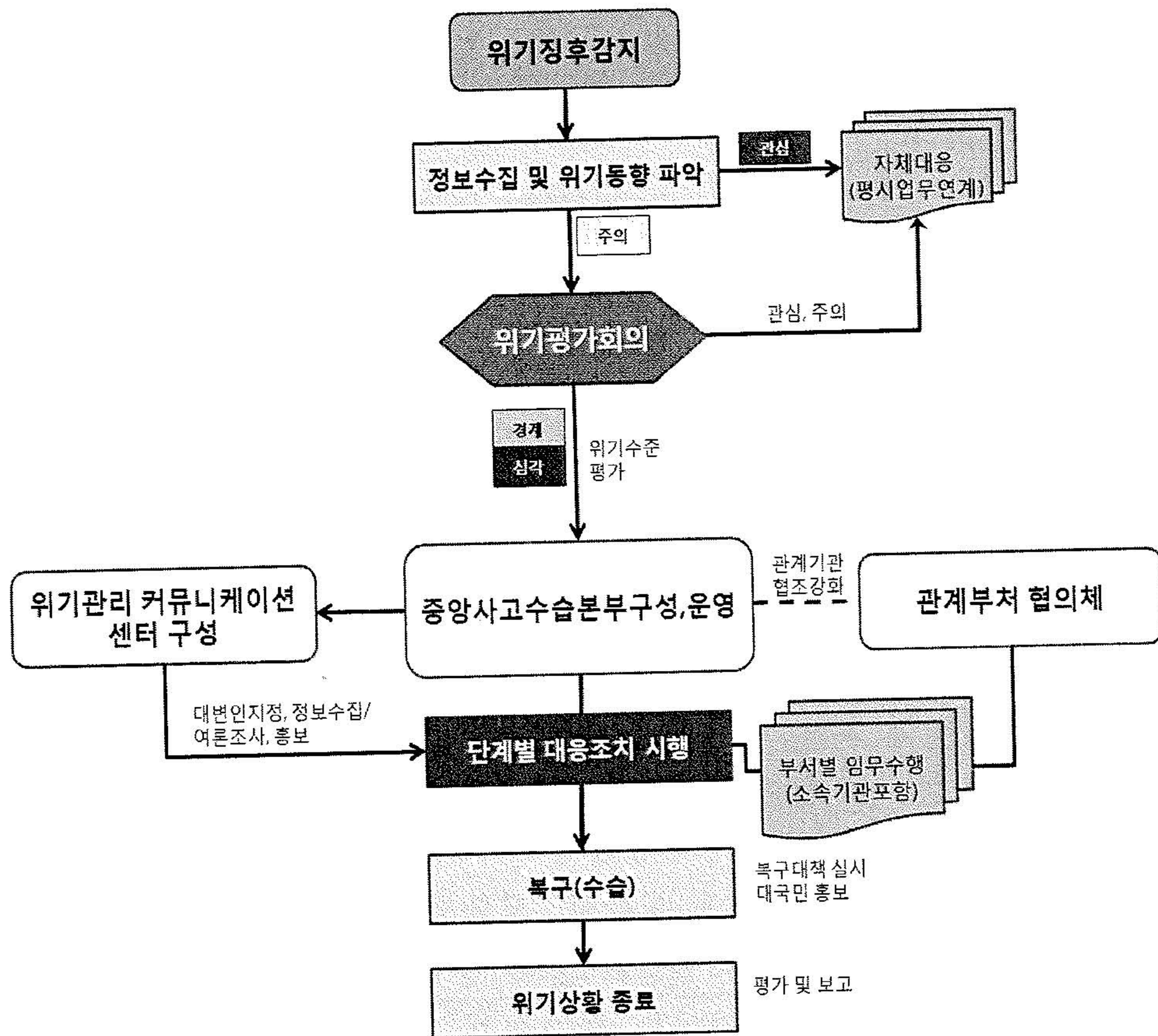
[그림 18] 방재요원 등록 및 상황실 출입업무 흐름도

2. 위기평가회의

농산물 안전과 관련하여 「주의」 이상단계의 위기상황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국민건강 보호와 사회적 혼란 및 관련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위기상황 분석·평가를 통해 효과적인 대응전략 모색하도록 한다. 위기평가회의의 구성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대변인, 식품산업정책실, 식품산업정책관, 유통정책관, 소비안전정책관, 농업정책과장 등으로 구성하여 필요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및 외부전문가가 참석하여 평가회의의 자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운영은 소집, 평가, 결과 등으로 이루어 지며 소집은 농산물 안전과 관련하여 「주의」 이상 단계의 위기상황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식품안전정책실장 요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기상황에대한 대응여부와 판단을 결정하도록 한다. 평가는 상황의 심각성, 시급성, 확대가능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국내외 여론, 대응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및 대응전략 마련하도록 하고, 그 결과는 위기수준 평가내용 및 참석자 발언요지 등을 수록한 회의록을 작성, 장·차관 보고 및 관리하도록 한다.

위기평가회의의 임무는 위기 수준에 대한 판단 및 평가, 대응전략 모색하고, 평가결과 「경계」 또는 「심각」 단계인 경우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가능한 구체적(인원, 주관부서 등)으로 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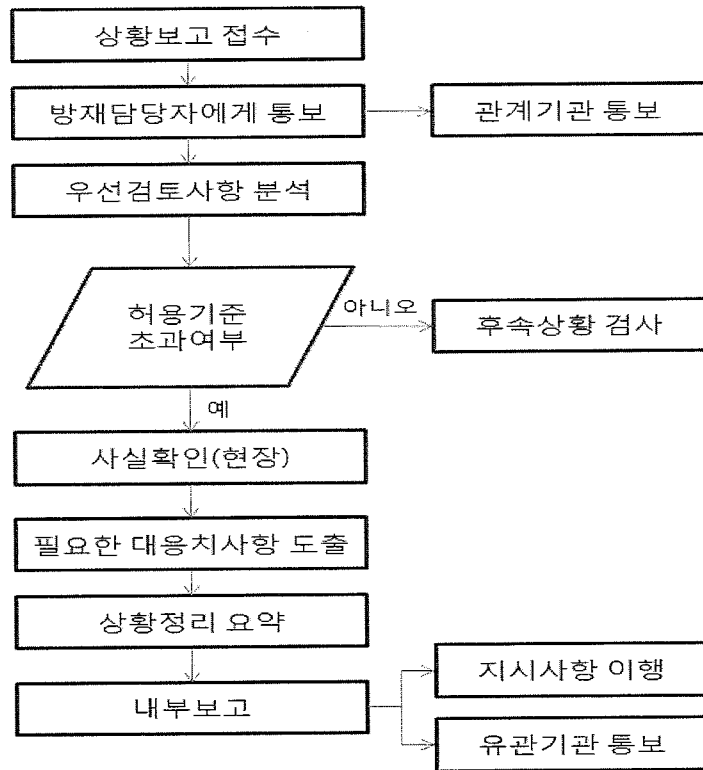
[그림 19] 위기평가회의의 구성도

3. 초기상황에 대한 상황 파악 및 보고

방사능 누출사고에 대한 초기상황 파악 및 보고는 상황파악에서부터 상황정보의 분석, 상황보고 및 지시이행으로 이루어진다. 상황파악은 신고, 보고 접수기관의 방재요원은 신고 및 보고된 상황정보로부터 다음의 사항은 우선 검토한다. 비상발령과 사고발생원인, 원자력 시설 운전상태의 안전성, 방사능 물질의 방출여부, 검사결과, 주변 주민의 예상피폭선량 등을 상황 파악한다. 또는 필요시 전문기관의 기술자문을 요청한다.

상황정보의 분석은 초기상황정보로부터 우선검토사항을 분석하여 비상발령

기준이나 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평가한다.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후속 상황정보를 감시하고, 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하여 사고현장에 사실 확인을 하고 상황에 대한 대응조치사항들을 강구하여야 한다. 대응조치사항들을 강구할 시에는 사고원인조사의 실시여부, 사고로 인한 영향평가, 비상대응 조직의 발족, 방재요원의 소집, 유관기관에 상황전파, 대언론발표 등의 사항을 강구하여야 한다. 상황보고 및 지시이행시에는 수집된 상황정보와 대응방안을 요약하여 지어리하여 조직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책임자의 지시사항을 이행하고, 후속조치를 유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그림 20] 초기상황에 대한 상황 파악 및 보고

4. 상황발표(위기관리커뮤니케이션센터)

방사능누출사고에 대한 초기단계 상황발표는 상황의 중요도 분석, 보도문 작성, 언론 보도 등으로 이루어 진다. 상황의 중요도 분석은 지자체공보관의 비상대응정보를 수집하고 초기사고상황과 대응조치가 수반되어야하는 것을 보도 대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각 비상조직 별로 제공되는 정보를 종합하여 발표자료를 선정하고 사고상황의 진전내용, 방사능 영향이 미치는 범위, 주민 보호조치관련 상황 등을 분석한다. 사고현장과 대응조직 담당자에게 사실 확인을 한다. 보도문의 작성은 보도문작성 팀을 구성한다. 보도문 작성팀은 해당 업무담당부서원과 공보관으로 이루어 지고 보조 및 설명자료를 작성한다. 보조 및 설명자료는 예상질의 및 답변자료도 함께 작성되어야 한다. 언론보도는 기자회견으로 언론발표를 하는 경우로써 언론기관에 통보하고, 회견장을 준비하고, 질의답변자료를 분비, 관련기관 질의 답변자 배석을 한다.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것으로 언론발표를 하는 경우는 언론기관에 보도자료 전송배포와 보도실을 운영하는 경우 보도실에 복하여야 배포한다.

위기상황이 경계 및 심각의 상황일시 농림수산 식품부에 중앙사고 수습본부가 만들어 지고 언론대응과 관련해서는 위기관리커뮤니케이션 센터가 운영된다.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센터는 대변인이 센터장이 되고 정보수집 및 여론조사 분석, 위기대응 홍보반으로 구성되어진다. 주요 업무로는 센터장인 대변인의 경우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전반을 총괄하고, 언론대응 및 홍보, 대책발표하게 된다. 정보수집 및 여론조사 분석반장인 홍보담당관은 사고관련 정보의 수집 및 농림수산식품 대책발표나 조치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다. 위기대응 홍보반은 대언론 신속대응 커뮤니케이션 수행한다.

언론대응과 관련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 언론대응 및 농림수산식품부 언론대응 매뉴얼을 참조하여 대응하여야 한다.

<표 30> 농림수산식품부 언론대응

1. 모든 관련 사실의 수집
 - 가. 정확한 사실 파악을 위해서 사태의 원인, 현재 진행상황, 향후 전망, 피해규모와 정부대책에 관한 사실 파악
 - 나. 특히, 사고발생시 사고가 언제, 어떻게, 왜 발생했는가의 사실과 피해지역, 피해규모, 방재 진행현황과 향후대책, 인명피해자 여부, 등은 필히 파악
2. 관련기관과의 사전협의를 통한 보도시점 결정
 - 가. 업무관련 유관 부서뿐만 아니라 언론홍보관련 국무총리실 등과의 협의를 통해 보도시점을 결정
 - 나. 중요사항은 홍보대상, 주요제기 쟁점, 대응논리 등이 담긴 사전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정책발표 전 점검
3. 단일화된 창구를 통한 정보배포
 - 가. 위기사 상호 모순되거나 불필요한 추측을 불러일으키는 불완전한 정보의 제공을 방지하기 위해 “대변인”등 단일화된 채널을 통한 정보의 배포
 - 나. 위기사 대변인이 위기관리 대변인으로서 우리부의 공식 입장은 대변인을 통해서만 언론에 노출되도록 주의
4. 신속, 정확한 정보제공 및 나쁜 뉴스라도 정직한 제공
 - 가. 주요 상황의 변화시 언론기관 및 관련기관에 신속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해 유언비어와 추측보도 방지
 - 나. 정보은폐에 의한 공신력 실추의 방지를 위해 가장 나쁜 뉴스라도 가급적 대변인 통하여 정직하게 전달
 - 다. 언론사의 정보제공 요청을 거부하거나 논평을 거부할 경우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제시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 불식
5. 사건에 대한 기록 유지
 - 가. 사건 종료후 법적대응, 후속보도, 위기관리커뮤니케이션 계획의 수정을 위해서 사진, 서류, 비디오테이프 등을 이용한 기록의 유지

<표 31> 농림수산식품부 언론대응 매뉴얼

<p>보도자료 작성시 고려사항</p> <p>가. 일반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론 홍보는 적극적·조직적·선행적·예방적 홍보활동인 미디어 퍼블리시티(Media Publicity)와 사후 대응적인 미디어 서비스(Media Service)로 구분 ○ 미디어 퍼블리시티 활동은 보도자료 제공, 인터뷰, 기고문, 기자간담회 및 기자회견, 국내외 현장 취재 지원, 공동 기획 특집 등 다양한 형태가 있으며, 그 중 보도자료 제공은 가장 기본적인 홍보활동임 ○ 보도자료 제공은 정확한 정보의 시의적절한 제공이 가장 중요 <p>나. 보도자료 배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간용일 경우 전일 10 : 00 이전 배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간용은 기자들이 데스크에 보고하는 시간이 대략 09:00 ~ 09:30분경이므로 가급적 09:30 이전에 배포 - 오후에 보도자료 배포는 피하되, 불가피하게 오후에 배포해야 할 경우 기자들이 오후 메모를 올리는 시간(13:30 ~ 14:00)을 감안하여 14:00 이전에 배포 ○ 석간용일 경우 전일 18:00경 배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무회의 안건은 주로 석간용으로 배포 ○ 앱바고가 지켜져야 할 중요 자료는 조간과 석간신문을 구분해서 배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간신문이 앱바로를 깎을 경우, 다음날 조간신문의 기사가치가 없어지므로 석간신문에는 조간신문판 1차 마감시간인 16:00이후에 자료 배포 ○ 기자들에게 보도자료 배포시 문자메시지 통지 <p>2. 보도 결과에 대한 언론사 문의시 대응요령</p> <p>가. 타 부처의 보도자료 등에 의하여 기자들의 확인전화가 올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통 조간신문의 판마감 시각이 16:00이므로 우리부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최소 15:00까지 해명자료나 보충 설명 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

○ 배포 후 신속하게 문자메시지 통보 및 확인전화

나. 우리부 출입기자가 기사를 작성한 경우

○ 오보를 낸 해당 언론사에 담당부서에서 공문(국장명의로) 정정 또는 반론보도 요청

○ 공문발송 이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요청(해당부서 대응, 대변인실 지원)

○ 해명자료 배포범위는 담당 경제·사회 데스크 및 우리부 출입기자

다. 우리부 출입이 아닌 기자가 기사를 작성한 경우

○ 오보를 낸 해당언론사에 담당부서에서 공문(국장명의로)으로 정정 또는 반론보도 요청

○ 공문 발송 이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요청(해당부서 대응, 대변인실)

○ 해명자료 배포범위는 기사의 중요도를 판단해서 배포

○ 구분이 모호할 경우 언론사 편집국장 및 보도본부장, 우리부 출입기자에게 해명자료 배포

3. 보도자료 배포 사전 점검사항(Checklist)

○ 담당자가 이메일은 최근 것이며 신문을 통해 직접확인했는가?

○ 이메일 송부시 자료의 용량은 얼마나 되는지 확인했는가?

○ 쉬우면서도 짧고 명확하게, 그리고 군더더기는 제거 했는가?

○ 작성된 자료를 소리내어 읽어보고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없는지 확인했는가?

○ 숫자나 도표, 맞춤법 등 잘못된 곳이 없는지 확인하고 타인에게 최종 교정을 보았는가?

○ 이메일 송부시 특히 '제목'의 차별성은 무엇인가?

○ 기자들이 이 보도자료를 꼭 읽어야 하는 이유 혹은 개연성이 있는가?

○ 새로운 시각으로 재미있거나 흥미롭게 다시 만들 수는 없는가?

- 보도자료의 내용에 대해 작성자 스스로가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 첨부파일을 지양하고 문서로 작성된 것을 그대로 복사하여 이메일 본문에 넣었는가?
- 파일 첨부시 바이러스 검사는 했는가?
- 사진 이미지는 신문과 잡지 등 매체 성격에 따라 적절한 용량으로 했는가?
- 사진 송부시 컬러의 경우 '흑백 사진'의 이미지도 미리 확인했는가?
- 사진은 부분 확대 이미지와 전체 이미지의 두 종류를 준비했는가?

커뮤니케이션 리스크 분석표

일 자	
정 책 명	
담당부서	
정책목표	
추진기간	
주요내용	
쟁점사항	

단 계	타킷오디언스	이슈	커뮤니케이션 리스크	최악의 시나리오
사고진행				
언론보도				
대국민여론 조사결과				
정부대책 발표 및 집행				
정책평가 및 사후관리				

※ 표 행과 열의 크기는 내용구성상 변경하여 사용 가능

<표 32> 기자회견 사전점검표

- 대변인은 회견에 가장 적합한 시간을 선정한다.
- 보도진에게 시간과 장소를 통보한다
- 참석을 통보한 기자, 편집자 등 언론인들의 명단을 준비한다.
- 기자들의 관심을 끌만한 배경 자료를 준비해둔다
- 외부 전문가가 필요하다면 동석시킨다
- 직원중 누군가가 기자회견의 물리적 서비스를 담당한다
- 의자, 탁자 및 발언대의 수는 충분한가?
- 마이크나 기타 비디오, 오디오 장비가 필요한가 등 홍보요원들에게 회견 주제, 발언자 및 회견 일정을 브리핑 해 둔다.
- 인사말을 준비하고 이를 가장 중요한 발표자와 함께 검토한다.
- 예상질의, 답변을 발표자들과 검토한다
- 행사전에 모든 음향기와 기타 장비를 점검한다.
- 회견장에 방명록을 비치하여 참석자의 이름과 소속을 파악한다.
- 보도자료를 포함하여 새로운 정보와 유인물 등 배경자료를 회견장에 가져다 놓는다
- 보도진을 회견장으로 안내한다
- 직원을 지정하여 개회사를 하도록 하고 회견의 기본 규칙을 설명한다
- 질문과 대답을 주의깊게 모니터한다. 회견이 끝나기 전에 해명할 부분은 해명한다.
- 회견을 녹음해 두고 발언내용은 조속히 기록해 둔다
- 직원들에게 기자회견이 열린다는 사실을 알리고 회견장이 산만하지 않도록 관계없는 직원들의 참석을 통제한다.

<표 33> 언론발표시 요령과 원칙

- 발표내용이 확실하지 않으면 어떤 기자에게도 말하지 마라
- 필요하면 시간을 끌어라. 사실 확인이 완료되지 않으면 기자와 이야기를 시작하지 말라. 대답을 즉시 할 수 없을 경우 기자의 이름을 물은 뒤 데스크인 내에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하라. “지금은 모릅니다. 알아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등 절대 추측하여 말하지 않도록 한다.
- 발표문의 헤드라인은 하나만 써라. 그리고 이 헤드라인에 따라 일관성 있고 분명하며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라
- 어떤 회견이든 사전에 준비하라. 이는 기자와 조직체 모두에게 바람직한 일이다.
- 예상 답변을 준비하고 연습하라.
- 인터뷰 직전에 변화된 사항이 없나 마지막으로 점검하라.
- 추측을 하게 만들지 마라. 대변인이 공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면 기자들은 타인의 추측을 소스로 삼을 것이다. 그러므로 가능하면 공식적으로 준비된 발표문을 낭독하라
- 비공식적 발언을 삼가라.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또는 위기관리 담당자와 사전에 상세히 협의하지 않는 내용은 절대로 비공식적 발언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는 복잡하고 문제성이 다분하므로 피해야 한다.
- 기술적 자료는 항상 서면자료를 이용하라. 기술야의 전문가가 아닌 기자들을 상대할 때는 시간을 들여서 기자들이 요점을 파악할 때까지 하

나하나 짚어 주어야 한다.

- 어떤 기자가 제시한 논점에 대해 답변을 할 수 없으면 코멘트 할 수 없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결코 물러서지 말아야 한다. 그냥 '노코멘트(No Comment)'라고만 하면 안된다. 왜 말을 할 수 없는지를 분명히 밝혀주어야 한다. 그리고 준비된 자료를 낭독할 경우 낭독한 내용에 충실해야 하며 가능하면 발표자 자신의 해석이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 정부가 사태를 우려하고 있는 것을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한다. 다만 이로 인해 공황(panic) 상태가 발생해서는 안된다.
- 보도기관으로부터 전화로 문의 받은 사항은 가능하면 24시간 가동체제로 답해야 한다.
- 학자, 정부관계자, 유명인사, 기타여론 선도자 등 호의적인 제3자의 견해 및 객관적인 자료를 보여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5. 방사능 재난의 선포

방사능 재난의 선포는 방사능 재난상황의 확인, 방사능 재난의 선포, 방사능 재난의 보고 및 통보로 이루어진다. 방사능 재난상황의 확인은 방사능재난의 발생여부를 확인하고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방사능 재능을 선포해야하는 조건에 해당되면 이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통보한다. 국내 및 인접국의 방사능 누출사고에 따른 방사능 재난의 위기경보 발령기준은 관심, 주의, 경계, 심각의 순으로, 국내 및 인접국의 방사능누출 사고 발생과 관련된 소관 분야의 위기 징후가 포착되거나 위기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주관기관(농림수산식품부)에 위기경보 발령을 요청한다. 농림수산식품부 관련실(수산정책실·식품산업정책실)에서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등 소속기관과 관계기관들의 수산물 위생·안전 분야의 동향을 상시 파악하고 수집된 제반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 공유하고 소속기관은 위기징후 목록 작성, 징후 발견보고 및 전파의무적으로 해야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방사능누출 사고 발생과 관련된 위기 징후가 포착되거나 유관부처에서 위기경보 발령을 요청받는 경우, 그 위협 또는 위협의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자체 위기평가회의」를 운영하고, 평가 및 판단 결과에 따라 위기경보를 발령(황이 시급할 경우 先 발령후, 후속회의 개최)한다. 위기평가 시 상황의 심각성, 시급성, 확대 가능성, 전개 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국내의 여론, 정부의 대응능력 등을 고려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위기경보 발령시 대통령실(국가위기관리실) 및 관련기관에 신속히 통보하고, 범정부차원의 평가와 조치가 요구되는 수준(심각단계)의 경보 발령시에는 대통령실(국가위기관리실) 및 행정안전부와 사전 협의 하에 경보 발령한다. 「관심·주의」 단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국장 중심으로 평상시 업무와 연계하여 대응하고, 「경계·심각」 단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가동·운영하여야하며,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대책본부 구성을 협조하고, 각 단계 위기경보 수준을 수정 및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대통령실(국가위기관리실) 및 행정안전부와 사전 협의를 통해 조정

<표 34> 위기경보 발령기준

구 분	판 단 기 준
<p>관심 (Blu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또는 인접국가 원자력 누출 사고발생 ○ 국내·외 정보를 통해 방사능 물질에 오염되거나 오염 우려가 있는 농수축산물이 수입 또는 유통 될 가능성이 확인
<p>주의 (Yellow)</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또는 인접국가 원자력 누출 사고로 인해 방사성물질의 환경 누출 확인 ○ 방사능 누출 지역의 농수축산물의 국내 유입(유의할 수준) ○ 언론·시민단체 등이 방사능 물질 오염 농수축산물의 유통 사실을 발표한 경우
<p>경계 (Orang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러지역의 수거 농수축산물에서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어 전국적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 방사능 누출사고지역 또는 가공된 농수축산물의 수거검사에서 방사능 물질이 반복 또는 다량 검출
<p>심각 (Red)</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및 인접국의 방사성물질이 국내로 대량 유입되어 농수축산물의 보호조치가 필요한 단계 ○ 전국적으로 다품목 및 대량의 농수축산물에서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고 위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6. 중앙사고수습본부운영

농림수산식품부의 중앙사고 수습본부의 운영은 관심, 주의의 경우 대책본부장은 식품산업정책실실장 또는 수산정책실장 등으로 구성하여 평상시 업무와 연계하여 처리한다. 위기평가회의에서 위기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중앙사고 수습본부를 구성해야하는 경계 및 심각의 상황에 대해서는 농림수산 식품부 장관이 대책본부장이 되고 중앙사고 수습본부를 구성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표 35> 위기단계별 대책본부 및 중앙사고 수습본부구성

위기경보 구분	관심 (Blue)	주의 (Yellow)	경계 (Orange)	심각 (Red)
대책본부장	식품산업정책실장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운영방법	평상시 업무와 연계처리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운영	

※ 「위기평가회의」에서 위기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중앙사고 수습본부를 구성.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에 대한 목적은 안전한 농수축산물의 생산·공급으로 국민건강 보호 및 피해예방, 신속한 복구 대응을 위한 것으로, 운영기간은 경계(Orange) 이상 단계부터 상황 종료시까지이다. 관심·주의단계에서는 해당 국장을 중심으로 별도의 위기대응대책반 구성없이 관련국에서 평상시 업무와 연계하여 즉시 대응하고, 경계단계의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설치되기 이전에는 해당부서에서 위기대응 역할을 수행한다. 경계단계」부터는 및 중앙사고수습 본부로 확대·운영한다. 중앙사고 수습본주의 장소는 농림수산식품부 종합상황실로써, 중앙사고수습본부 확대·운영으로 공간이 협소 할 경우 별도 회의실에 수습본부 설치할 수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조직 구성 및 임무는 각 반별 5명 내외로 구성하되, 상황전개 추이에 따라 조정, 운영할 수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센터 구성·운영한다. 각 반별 임무는 각종 상황의 신속한 파악·보고, 대외홍보 등 관계기관과 협조체제유지(자료제출 포함) 업무 등을 중심으로 이 행된다. 각 반별로 상황을 고려, 반장이 주관하여 내부적으로 세부 운영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위기경보별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은 「관심·주의」 단계에서의 본부장은 해당 정책실의 장으로 구성되며, 평상시 업무를 포함하여 수행한다. 관심 단계 등에서 상황변화가 없고, 관련규정에 의한 대응처리 방침이 있는 경우에 그에 따라 운용되어야 한다. 근무요령, 인원구성은 위기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결정하되 상황보고, 대응시기 등은 적절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경계·심각단계(중앙사고수습본부)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본부장으로 하여 부분부장은 차관이 되며, 언론대응은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대변인)에서 이루어진다. 대책본부 4개반 운영한다. 주관부서 지정은 해당 반별 주관부서 지정은 위기형태, 위기등급, 주요 관련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위기상황에 소속기관의 공동대응이 필요한 경우 반별로 주관부서 협조부서로 구분하여 추진 할 수 있다. 반별 임무는 위기대응대책단 가동시 상호 협조체계 유지하고,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연계를 추진되어야 한다.

<표 36> 반별임무

구분	주요임무	주관부서
본부장	수산물 위생·안전 위기대응 총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총괄반	일일상황및 대책 종합 농수축산물유통실태 파악 및 지도	식품산업정책실장
검사반	방사능 오염원인 추적 조사	소비안전정책관
기술지원반	방사능오염 검사지원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과학원

※ 반별 상호 협조와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연계체계 확보

제 3 절 사고의 상황 분석·평가

국내에서 발생하는 방사능 사고의 비상 단계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17조에 규정되어 있다.

<표 37> 국내 방사능사고의 비상단계

단계	내 용
백색비상	발전소의 안전성에 상당한 손상이 발생하였거나 진행 중인 사고 및 방사성 물질의 누출로 인한 방사성 영향이 발전소 건물 내에 국한된 경우로서, 발전소 내 비상대응의 개시 및 외부방재 대책기관의 경계(Warning)가 요구되는 비상사태 ▶이 경우, 주민보호조치는 취하지 않고 앞으로 사태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청색비상	발전소의 주요 안전기능의 손상이 발생하였거나 진행 중인 사고로서, 발전소 내 비상대응의 강화 및 외부 방재대책기관의 비상대응체제로의 전환이 요구되는 비상사태 ▶이 경우, 주민보호조치는 취하지 않아도 될 정도이나, 보다 심각한 사고에 대비하여 지역사고 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모든 상황을 주민들에게 알려 주고, 필요시 주민안전조치를 취하게 된다.
적색비상	격납용기 건전성 상실에 대한 가능성 및 노심의 손상 또는 용융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방사성 물질의 대량 누출이 예상되는 사고로서, 소외 비상대응 활동의 개시 또는 발전소 부지조변의 주민에 대한 보호조치가 요구되는 비상사태. ▶이 경우, 정부차원의 비상대응을 위한 중앙사고대책본부를 가동하여 지역사고 대책본부와 원활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며 가능한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주민보호조치를 강구한다.

1. 운전상황의 분석 및 평가

가. 사고정보의 분석

1) 사고정보의 수집

사고정보의 수집은 첫 번째, 사고평가는 운전 관련되는 중요한 안전변수들을 수집하는데 실시간 정보, 원전 현장에서 보고되는 운전상황 보고, 원전사업소의 수집 정보 등의 정보를 수집한다.

두 번째, 사고현장의 수습활동과 방재대응활동과약을 위하여 현장의 기술지원실 및 비상대책본부에 파견한다.

세 번째, 기술지원실에 원전의 운전상황을 감시·보고하며, 비상대책본부에 원전사업자의 방재대책 수행현황을 파악·보고 하며,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수집된 상황정보와 자료를 정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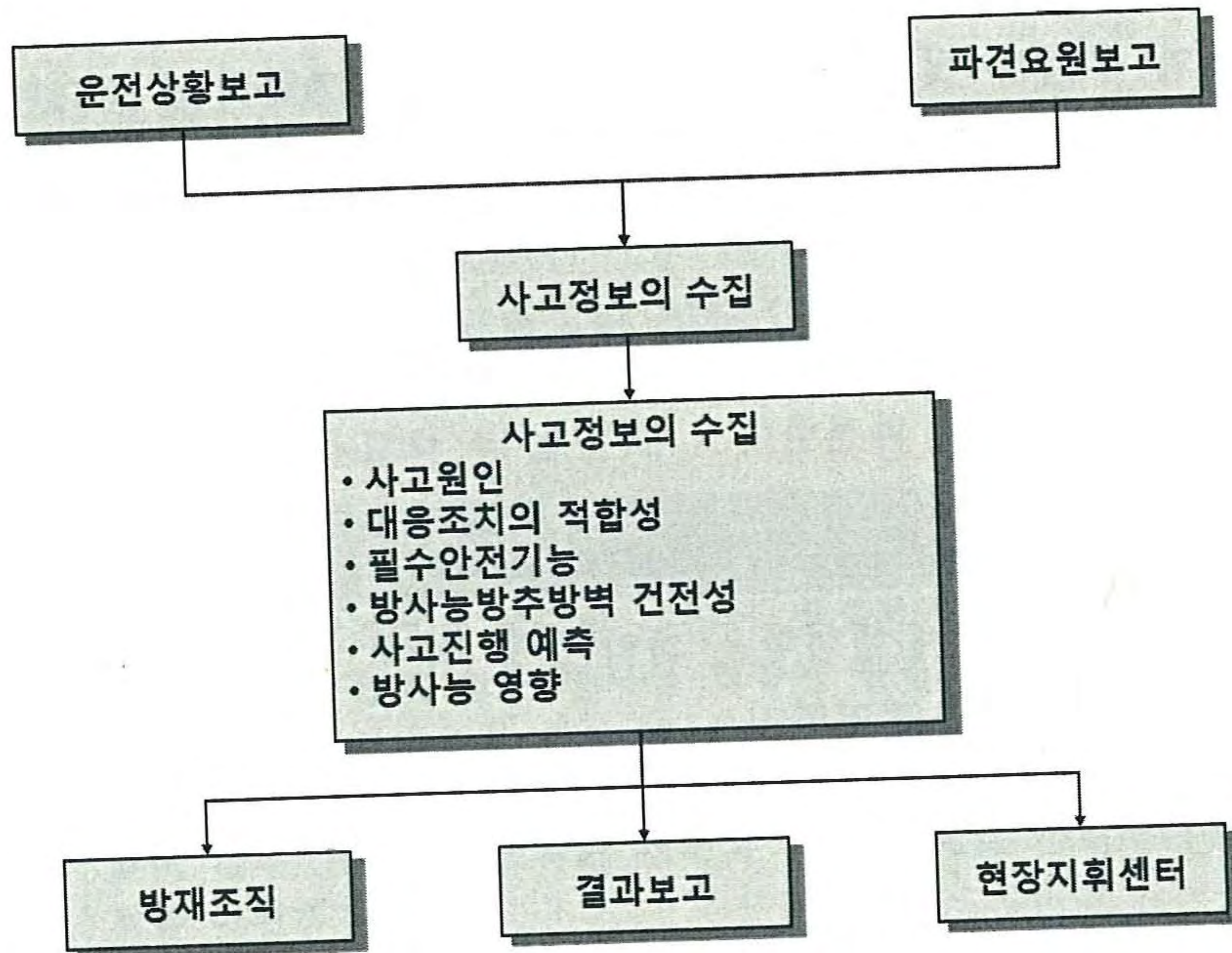
2) 사고정보의 분석

사고정보의 분석은 첫 번째, 사고평가는 수집된 정보로부터 사고발생원인, 운전원 대응조치의 적합성을 운전절차서와 비교·분석, 필수안전기능 분석, 방사성 물질 방벽에 대한 건전성, 사고의 확대 가능성 및 진행 예측, 방사성물질 방출 여부, 방사선 및 방사선학적 영향, 주변주민을 보호하는 긴급 조치의 필요성 등의 사항을 분석한다.

두 번째, 현장파견은 현장에서 사고원인, 사고 진행 및 분석결과를 해당 방재조직 본부에 보고한다.

세 번째, 자세한 분석 평가가 필요한 경우 본부의 지원을 요청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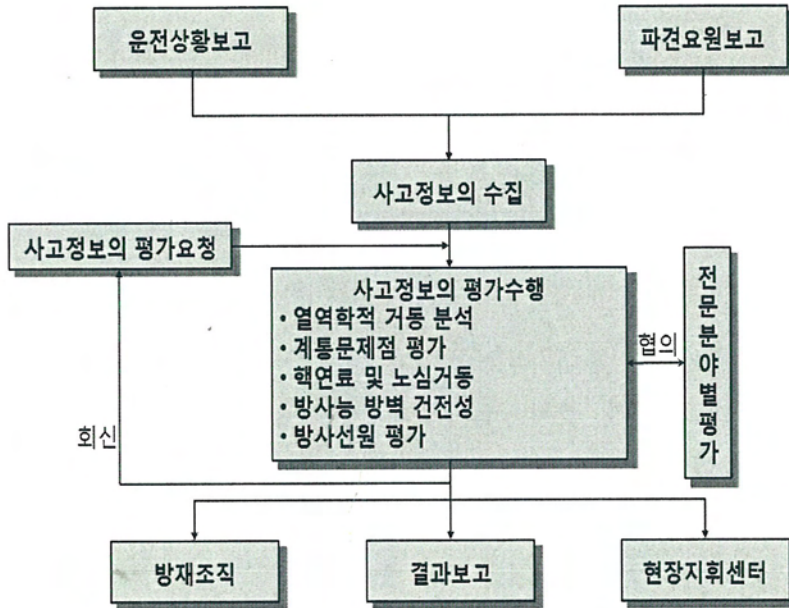
네 번째, 분석결과를 요약·정리하여 평가에 활용하고 외부 방재조직에게 통보한다.



나. 사고정보의 평가

1) 사고정보의 평가접수

사고정보의 평가접수는 사고평가 방재요원이 현장파견 방재요원, 타 방재조직으로부터 사고정보의 분석 평가요청을 접수하며, 방재요원은 사고의 열역학적 거동분석, 원전발전소 계통의 문제점(기계, 계측제어 등) 평가, 원자로의 핵연료 및 노심 거동분석, 방사능 방벽의 건전성 등 상황의 종합적인 분석 평가를 수행하고,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 한다.



2. 방사선원항 평가

가. 방사선원항 평가

방사선원항 평가는 2가지의 주의사항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첫 번째, 방사선원은 인근 주민의 방사선 피복선량을 계산하는 기본 정보이며, 두 번째, 사고로 기기들의 신뢰도가 떨어지므로 기기 지시치에 의존하지 않는다.

1) 시설내 방사선조건 분석

시설내 방사선조건 분석은 첫 번째, 방사선 평가는 비상발령조건에 대한 정보를 원자력 정지 상태, 공학적 안전설비 운전 상태, 시설내부의 방사선 조건, 냉각여유도, 원자로 계통 및 안전기능 상태 등으로 수집하여, 필수 안전기능의 위험도, 원자력시설의 상태 및 방사선 상태를 파악한다.

두 번째, 노심노출 시간, 원자로 냉각재수위, 노심출구 온도, 방사선 준위 등 수집된 정보로부터 원자로 심의 손상정도를 평가한다.

세 번째, 방사성물질의 방출경로를 결정하는 정보를 시설내 각 건물의 방사선준위(격납건물 등), 원자로 계통의 운전상태 자료로부터 방출경로 분석 등으로 수집하여 분석한다.

네 번째, 방출조건의 확대/감소여부와 방출저감화 조건에 대해 방사능 방출 방벽에 대한 건전성평가 결과, 원자로계통에 대한 사고확대가능성 평가, 격납용기 살수 작동 여부, 격납용기 건물 누설률 등으로 분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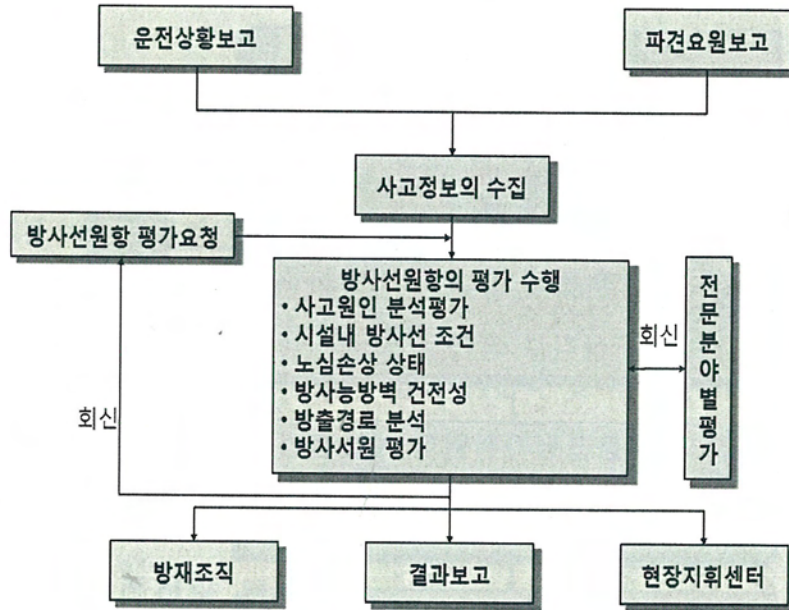
2) 방사선원항 평가

방사선원항 평가는 첫 번째, 방사선원항 분석 평가가 필요한 경우 본부의 지원을 요청한다.

두 번째, 현장정보의 제공 또는 수집된 정보로부터 방사선원항을 평가하며, 필요시 정보 수집을 요청한다.

세 번째, 시설의 사고원인, 사고 진행 등 운전상태 정보를 수집, 방사선원항 평가한다.

네 번째, 평가결과를 요약·정리하여 통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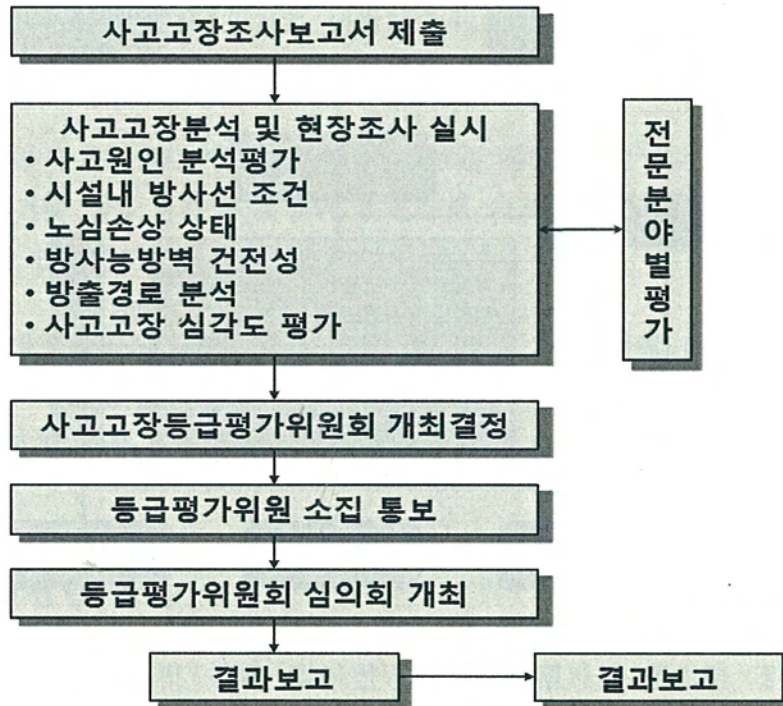


3. 사고 등급 판정

가. 사고 등급 평가

1) 사고고장 등급평가 위원회 개최

사고고장 등급평가 위원회 원전사업자로부터 사고고장조사보고서를 접수하고, 제출된 사고고장조사보고서로부터 사고고장의 심각도를 분석 평가하며, 적정 등급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시 현장조사활동을 실시한다. 그리고 원자력안전시굴원장은 원전사고·고장 등급평가위원회를 소집하는 한편, 원자력안전기술원장은 원전사고·고장 등급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하고,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원전사고·고장 등급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확정 발표하고 국제원자력기구에 통보한다.



제 4 절 농수산물식품의 방사능 영향평가

1. 대기확산 및 기상예측

가. 기상정보분석

1) 기상정보 수집

기상청의 자동기상관측 자료, 기상청의 수치예보자료, 원전의 기상관측 정보, 기상관측정보를 활용 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기상정보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인근 기상대 또는 원전에 확인하며, 수집된 정보를 수집 분석 수집한다.

2) 대기확산계수 평가

기상청으로부터 대기확산계수 평가자료(평가에 필요한 전산프로그램 입력자료, 현재시간 대기확산평가 자료, 2시간 이상의 장시간 변화 예측자료, 대기확산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 수작업에 의한 대기 확산평가를 수행한 자료, 그리고 수작업에 의한 대기확산 평가는 전문지식을 가진 동일 분야의 업무수행자가 평가 등의 자료)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 및 정리한다.

2. 방사선피폭선량 평가 및 예측

가. 방사선 피폭선량 평가

1) 방사선원항 및 입력자료 수집

조사반으로부터 방사선원항 정보 및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발전소 운전 상태에 관한 정보를 노심손상정보, 노심방출조건, 중요 방출경로 및 방출조건, 방사성 물질의 조성 및 방사성 핵종 분포, 공간 방사선량률 측정자료 등의 정보를 수집한다. 그리고 기상청으로부터 현재 및 예보자료를 시설주변의 자동 기상관측망(AWS) 관측자료, 강우 또는 강설 예보, 광역 수치 예보 기상자료 등으로 수집하며, 방사선피폭선량 평가 및 예측에 필요한 입력 자료를 추출할 수 있다.

2) 방사선 피폭선량 평가 및 예측

피폭선량 평가를 위한 자료 준비를 요청하고, 평가에 필요한 전산 프로그램 입력자료를 작성한다. 예비계산을 하고 검토하며, 입력 자료의 추가 또는 보완을 거쳐 최종계산을 수행하며, 방사선피폭 선량 평가를 2시간 이상의 장시간 예측, 누적 피폭선량 등을 계산하고, 계산결과를 검증하고, 필요한 대응조치방안을 강구하며 이를 요약하여 통보한다.

피폭선량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 수작업에 의한 방사선피폭 선량 평가를 수행하며, 평가결과를 요약하고 통보한다.

3. 주민보호조치의 평가

가. 주민보호조치 평가

보호조치는 지역 주민들에게 동등하게 실시하며, 어린이, 노약자 및 위험성이 더 높은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보호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비상발령상태에 의한 초기 조치

발전소 상황정보를 통보받아 발전소의 비상발령 상태를 평가하고, 방사성물질이 방출중인 경우에는 방사선피폭선량 예측결과 또는 환경방사능 감시결과를 근거로 하여 주민보호조치를 권고한다. 그리고 방사능운이 통과한 후에는 침적에 의한 오염과 주변 공간선량률 값에 근거하여 주민 보호조치의 권고를 고려해야 하며, 원자력 시설 주변지역의 방향과 거리별로 필요한 주민보호조치 대상을 주민소개 및 대피지역, 갑상선방호 약품 배포 대상지역, 음식물 섭취 제한 대상지역 등으로 표시하여, 주민보호 조치 내용과 대상지역의 설정을 보고 한다.

2) 주민보호조치 설정 변경

주민보호조치는 상황변화에 따라 운영 개입준위를 재평가하여 주민보호조치를 환경시료를 채취하고 분석평가한 결과 운영개입준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고상황이 안정화된 경우, 사고진행과정이 예측될 수 있는 경우, 운영개입준위가 주민보호조치의 시행에 큰 영향을 주는 경우 등의 이유로 변경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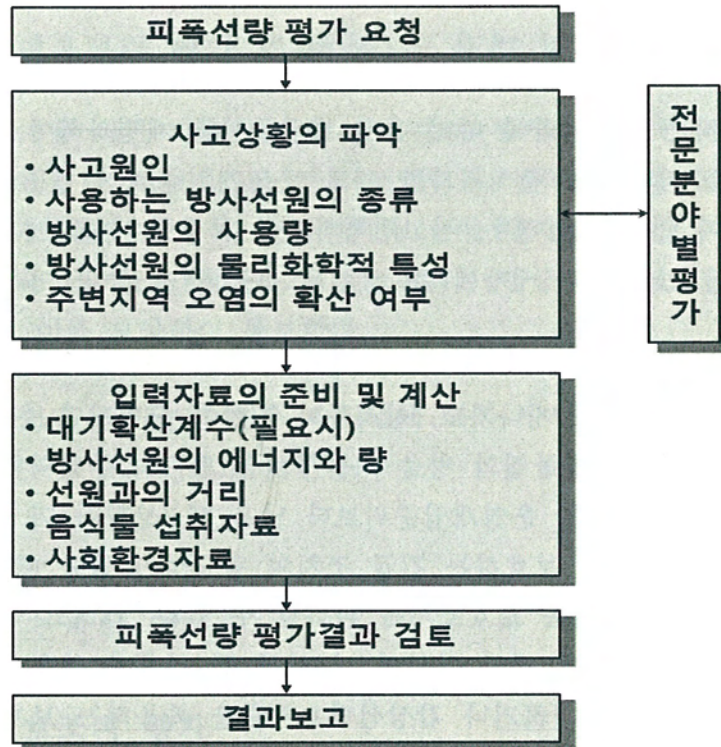
방사능 방출의 위협이 지나가고, 침적물의 조성이 규명되면 운영개입준위를 재평가하며, 향후 방사성물질의 방출 가능성이 없을 때, 주변의 공간선량률이 일시 이주 또는 영구정착 운영개입준위보다 낮을 때, 상황이 더 악화 될 징후가 없을 때, 주변주민을 보호하는 긴급 조치의 필요성이 있을 때 등의 조건이 나타나면 주민을 소개하는 보호조치를 완화할 수 있다. 그리고 향후 방사성물질의 방출 가능성이 없을 때와 상황이 더 악화 될 징후가 없을 때 등의 조건이 나타나면 주민을 대피하거나 갑상선방호약품을 복용하는 보호조치를 완화할 수 있으며, 향후 방사성물질의 방출 가능성이 없을 때, 음식물 시료 채취 분석결과 개인준위이하일 때는 음식물 섭취 제한 조치를 완화 할 수 있다.

방사선방호 전문가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상세한 방사선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주민보호조치와 의사결정사항을 기록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4. 방사능 사고 영향 평가

가. 방사능 사고의 영향평가

방사선원의 피폭선량 평가는 점선원, 지역선원 등 다양한 형태가 있으며, 사고 상황에 따라 평가방법이 다르므로 사고상황을 먼저 파악하여야 한다.



1) 방사선원 및 입력자료 수집

사고발생기관의 보고 또는 이력카드로부터 사고시설의 종류와 특성을 조사하여 계산 입력 자료를 준비할 수 있으며, 수집된 정보로부터 계산 입력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표 38> 방사선원 및 입력자료 수집

구분	내용
준비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의 원인 - 사용하는 방사선원의 종류 - 방사선원의 사용량 - 방사선원의 물리화학적 특성 - 주변지역 오염 여부

작성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사선원의 에너지 조성 - 방사선원과의 거리 - 차폐물질의 고려여부 - 피폭되는 주민의 식생활 자료 - 음식물 섭취 자료 - 사회 환경자료 등 - 오염확산된 경우는 대기확산계수를 평가
------	--

2) 방사선피폭선량 평가 및 예측

입증된 계산방법을 적용하여 피폭선량 평가를 수행하며, 필요시 전문가의 지원을 요청한다. 그리고 예비계산결과를 점검하여 입력 자료의 추가 또는 보완이 필요한지를 판단하고 최종계산을 수행한다.

주민 방사선피폭선량 평가는 가능한 실제의 경우를 적용하고, 피폭선량 평가결과를 검증하고 필요한 대응조치 방안을 강구하며 이를 요약하여 보고 한다.

제 5 절 농수축산민 보호 및 구호

방사능누출에 따른 농수축산분야의 농수축산민의 보호 및 구호는 주민대피, 오염구역설정, 출입통제, 음식물 섭취제한, 방사능물질회수 및 처리 등으로 볼 수 있다.

1. 주민 대피

방사능 누출에 따른 농수축산민의 건물의 대피는 최대 2~3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주민대피 시행계획 수립에서부터, 주민대피령 통보, 주민대피 시행에까지 이루어져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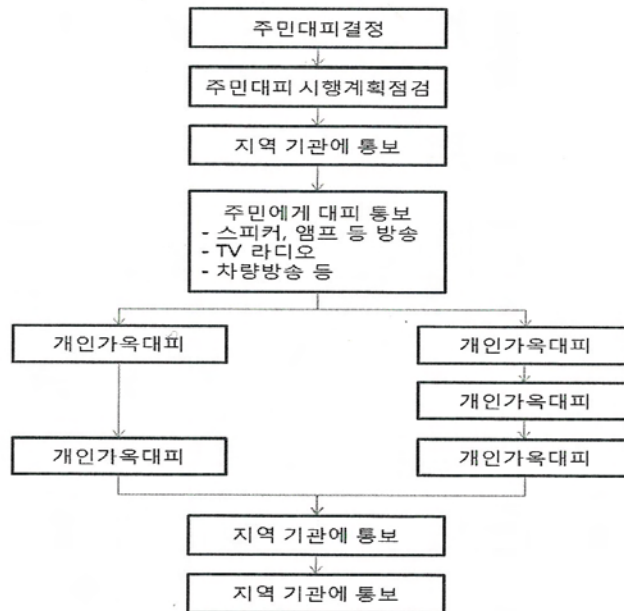
주민대피시행계획 수립의 경우 지역관할 담당자는 현장지휘센터장의 주민보호조치의 실시 결정에 따라 기 수립된 주민보호계획을 점검하고, 지역담당자는 세부대피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주민예상피폭 선량 평가결과, 기상상태, 사고현장 또는 방사능오염 피해 현장의 인구분포, 대피로, 대피소 등의 정보, 시행가능성과 시행시 발생하는 위험, 영향범위내의 주민분포아래의 사항을 고려해야한다.

지역담당자는 현장 지휘센터장이 정한 방사능 피해 영향권에 있는 지역의 범위를 설정하고, 주민에 대한 대피령을 발동하고 주민대피령을 해당지역 행정관서에 통보하고, 지역민방위대 동원, 경찰 및 군부대 지원 요청 등 주민대피를 통제하기 위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또한 주민보호계획에 다른 지역 방재 유관기관의 대응활동을 요청하고, 필요시 중앙본부, 인접지역 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에 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주민대피령 통보는 주민대피령을 통보받은 지역 행정기관은 자체계획에 따라 주민에게 대피령을 통보(스피커, 앰프 등을 통한 긴급방송, TV, 라디오 등을 통한 통보, 민방위 차량방송, 마을 비상연락망을 통한 통보) 등을 하여야 한다. 또한 지역주민에게 대피령을 통보하기 위하여 민방위법에 의한 주민대

피령 통보를 언론기관, TV, 라디오 등 언론매체에 요청한다. 병원이나 학교 등 사람이 많이 모인곳은 전화 등을 활용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주민에게 대피령을 통보하는 경우 주민 행동요령을 함께 통보하고, 주민대피령은 반복적으로 통보하여 모든 주민이 대피 할 수 있도록 조치되어야 한다.

주민대피 시행은 주민대피시 주민행동요령을 숙지하고 지역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대피는 외부방사능에 의한 오염수준을 저감화하기 위하여 지하실이나 건물의 중앙에 들어가며, 오염공기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창문과 출입문을 밀폐하여야 한다. 가옥내에 대피한 주민은 대문에 노랑색 천을 걸어 건물내에 대피하고 있음을 표시한다. 주민보호조치시행결과는 기록 관리하며, 향후 주민 보호조치 확대시 연계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군,경, 민방위대 등은 대피지역의 출입을 통제하는 요원은 대피지역내의 출입을 제한하고, 치안을 유지하여야하며, 경찰, 군, 소방서, 민방위대 등과 협조하여 지역 주민의 대피 결과를 점검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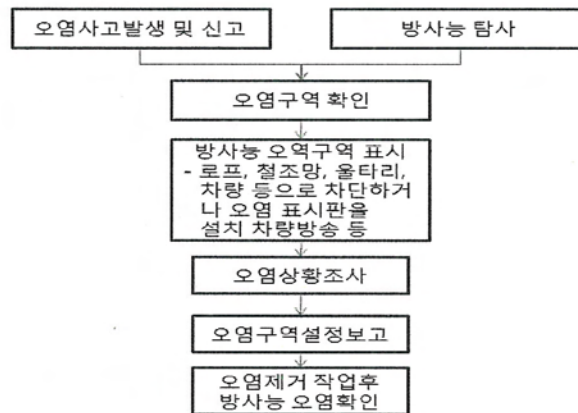


[그림 21] 주민대피 흐름도

2. 오염구역설정

방사능 누출에 따른 오염구역설정은 방사능 물질이 주변지역으로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모든 것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농수축산물 뿐만 아니라 주민에 대해서도 오염지역에 대한 확인 및 설정, 오염지역 감시 관리를 하여야 한다.

오염지역 확인 및 설정은 오염현장을 직접 목격하거나 환경방사능 탐사결과 비정상적으로 높은 방사능지역을 오염구역으로 설정하는 것이다. 오염구역에 대한 표시는 담으로 주변을 차단하거나, 울타리, 철조망, 차량 등 물리적인 구조물, 오염지역표시판을 설치하여 표시를 한다. 오염구역설정상황을 상위부서 또는 유관기관에 보고하는 것은 지역명, 위치, 오염지역설정상태, 오염정도 및 오염의 특성 등을 보고한다. 오염지역의 감시는 오염구역에 대한 방사능 조건 확인을 전문탐사팀 또는 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에 의뢰하고, 오염구역을 외곽에서부터 중심쪽으로 조사하며, 오염의 상태, 특성 등을 확인하고 기록한다. 필요시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을 한다. 오염지역에 대한 제염은 제염절차에 따르며, 수거된 폐기물 또는 오염된 농수축산물은 폐기물처리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오염구역에 대한 제염작업을 실시하고 방사능 오염상태가 허용치 기준 이하로 낮추어 지면 출입을 허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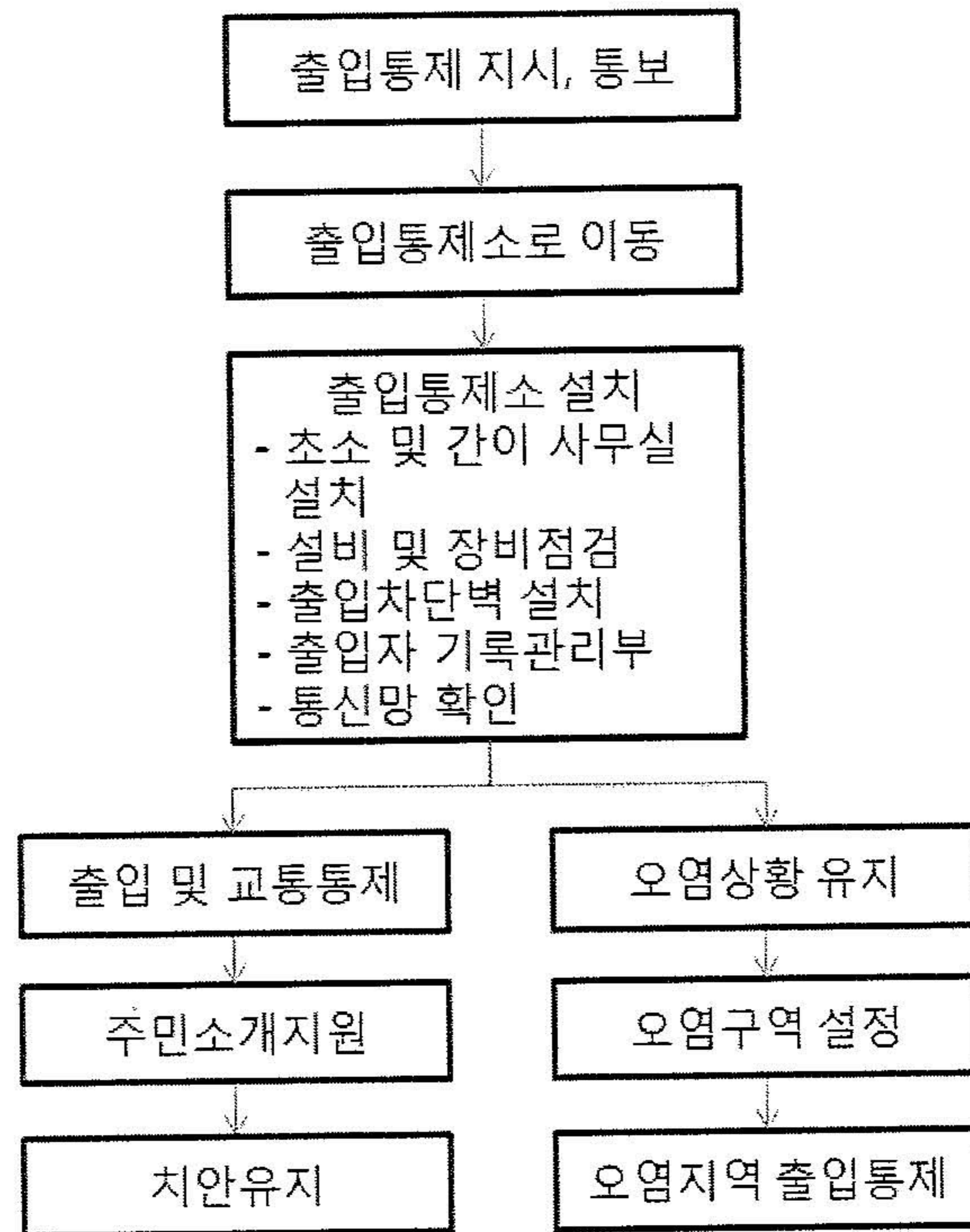


[그림 22] 오염구역설정 흐름도

3. 출입통제

출입통제는 출입통제소 설치, 보호조치구역 출입통제, 오염구역 출입통제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출입통제소 설치 출입통제요원은 청색비상 또는 출입통제소 설치 지시를 받아 지정된 출입통제소로 신속하게 이동하여야 한다. 출입통제소장은 출입통제소의 편성인원을 점검관리한다. 출입통제소의 편성은 경찰, 소방, 지역자치단체, 민방위대원, 지역군부대, 원전사업소요원, 방사능 감시요원 등이다. 출입통제소장은 출입을 감시하는 초소를 설치하고, 비상요원들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간이 사무실도 설치하여야 한다. 보호조치구역출입통제는 출입통제소장은 출입통제소에서 사용할 장비와 설비들의 가용성을 점검하여야 한다. 장비와 설비로는 통신설비, 방사능설비, 개인방사선량계, 교통통제설비, 출입통제 안내판 및 출입차단벽, 출입자 기록부 등 이다. 출입통제소장은 현장지휘센터장, 지역본부장의 출입허가를 받은자에게 보호조치구역내의 출입을 허용에 대한 내용을 관리하여야 하며, 보호조치구역출입자의 인적사항과 내용을 기록관리(인적사항, 출입사유, 출입시간 및 장소, 특이사항, 방사능 감시 장비 휴대여부, 감상선방호약품 복용여부)를 하여야 한다.

출입통제소는 보호조치구역출입자 통제와 방재대책인원 및 물자의 반출입 등 재난대응업무를 수행하는 중간 집결지로 활용하고, 출입통제소장은 보호조치구역내를 통과하는 차량에 대한 교통통제와 우회로를 확보하고, 보호조치구역을 나오는 모든 사람과 문건들에 대한 오염걸사를 실시 하여야 한다. 오염지역의 식품, 농작물, 가축 등의 반출을 통제하고 지역본부 또는 현장지휘센터 등과 긴밀한 연락과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방사능 물질이 이동 확산되거나 오염 또는 공간선량율이 높아 거주성이 상실되면 현장지휘센터의 철수지시에 따르 보조 출입통제소로 이동하여야 한다. 오염구역 출입통제는 방사능 사고로 인한 방사능 오염구역의 설정을 방사능 탐사팀의 지원을 받아 설정하며, 오염지역을 표시하고 기록 관리하는 것이다. 오염구역에서 나오는 모든 사람과 문건, 물건, 제품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방사능 사고 현장 주변에 있는 일반인 등을 필요시 대피 등 안전조치를 실시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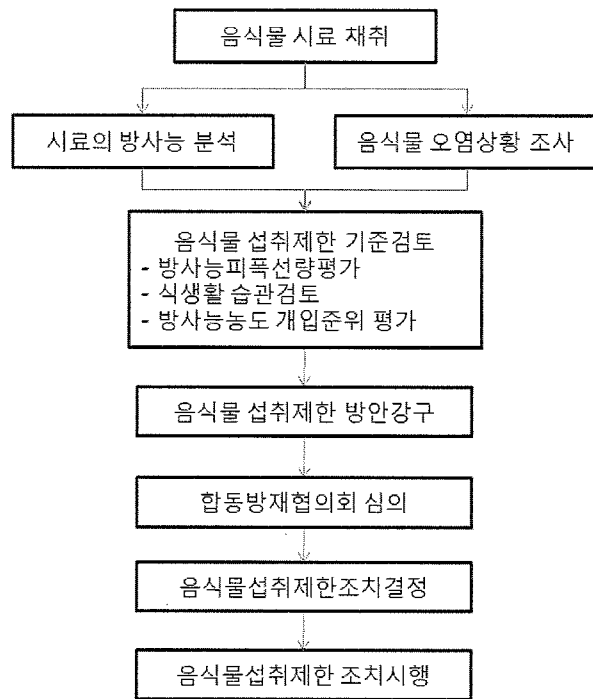
[그림 23] 출입통제 흐름도

4. 음식물섭취제한

음식물의 섭취제한은 음식물의 오염상황조사, 음식물 섭취제한 조치로 이루어진다. 음식물 오염상황의 조사는 지역담당자 또는 현장지휘센터장은 음식물 시료에 대한 방사능 분석을 실시하여 오염상황을 조사하고, 방사능 농도 분석결과로부터 주민이 음식물 섭취로 인하여 받는 방사선피폭선량을 평가하여 기본개입기준과 비교한다. 방사선 피폭선량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중요 음식물 섭취 경로별로 식생활 습관을 고려하여 개입준위값을 평가한다. 음식물의 섭취를 제한하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조합하여 개입준위를 평가하고 적절한 음식물섭취 제한방안을 강구하게 된다. 음식물 섭취제한조치는 현장지휘센터장 또는 지역담당자의 방사능 오염 상황을 조사하여 방사능 오염을 확인하고 합동방사능 방재대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음식물 섭취제한조치를 결정하고,

방사능 오염의 확산을 제한하는 음식물 섭취 제한 방안을 고려하게 된다. 제한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고려사항으로는 오염된 음식물의 농도를 낮추는 방법, 오염된 음식물을 가공 처리하여 장기간 보관하는 방법, 가축사료로 공급하는 방법, 폐기처분하는 방법 등이 있다. 오염된 음식물의 섭취제한 조치로는 오염된 식품은 폐기하고, 오염된 식품과 오염되지 않은 식품과의 혼합을 방지하고, 오염정도가 낮거나 반감기가 짧은 핵종으로 오염된 경우에는 감쇄 또는 처리후 사용하거나 오염된 음식물의 판매 및 가공처리를 방지한다.

오염된 농축산물 및 가축사료에 대해서는 단반감기가 핵종으로 오염된 식품, 가축사료 등은 일시 저장후에 사용하고, 장반감기가 핵종으로 심각하게 오염된 경우에는 영구폐기한다. 목초지가 기준치 이상으로 오염된 경우 가축을 안전지대로 이동시키고 오염되지 않은 사료를 공급한다. 지역담당자는 주민의 생활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대체 음식물 확보 및 비상급수 공급체계 등의 장단기 대책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그림 24] 음식물섭취제한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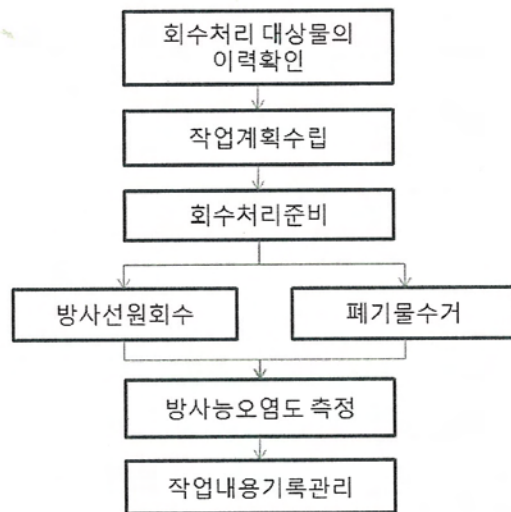
5. 방사능 물질 회수 및 처리

방사능 누출에 따른 오염방제는 방사능 물질 또는 제염물의 회수 및 제거과정에 방사능 오염이 확산되거나 2차 오염 유발에 주의하여야 한다. 방사능 물질의 회수와 처리의 경우 방사능물질 회수 처리준비, 방사능물질 회수 및 처리, 방사능 폐기물 수거 처리 등으로 이루어 진다. 방사능 물질 회수 처리 준비의 경우 방사능 물질 처리 담당자는 방사능 물질의 회수 또는 제거 작업 구역을 선정하여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하고, 현장의 상황을 파악,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지를 판단하여 인력, 시설 및 정비를 비치, 점검하여야 한다. 회수 및 처리 작업자는 방호복, 신발, 장갑, 개인선량계 등 적절한 갱니 방호장구를 착용하여 방사능피폭 및 신체의 오염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액체나 분말인 방사능 물질은 오염을 제거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또는 방사능 물질이 흙, 물 또는 부스러기와 쉽게 혼합될 수 있는 경우 상황 파악시 까지 회수, 제염 및 처분작업을 유예하여야 한다.

방사능 물질 회수 및 처리는 방사능 물질을 회수하기 위한 준비 상태를 확인하고, 미비시는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방사능과 관련된 운송사고시에는 화학약품의 위험 또는 운송에 관련한 생물학적 위험, 사고 결과에 따른 위험이 혼재 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상황을 파악한 후에 작업하여야 한다. 필요시 중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차폐가 안된 방사능 물질이송과정에서 방재요원의 방사능 피폭 또는 오염확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방사능 물질의 형태, 고정상태, 차폐상태를 확인하고, 방사능 위험을 경감시키는 작업방향을 결정한다. 손상을 입은 방사능 용기인 경우 방사능 위해 받지 않도록 오염파편을 함께 제거하여야 하고, 방사성 물질을 이동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이동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방사능물질의 제거, 제염, 오염 검사에 사용된 장비, 물품 및 참여인원에 대해 오염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오염된 장비나 물품 중 재사용 대상물품은 별도 포장한 후 방사성 물질 표지를 붙여 나중에 제염조치를 하고, 방사능 물질의 제거 및 제염이 완료된 구역에 대해서는 정밀 오염검사를 실시한 후 기록을 유지하며,

그 결과에 따라 후속 제염 또는 출입통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방사능폐기물 수거 처리는 차폐가 안된 방사능 물질을 옮기는 과정에서 재
 뷰우에 의한 비상대응요원의 방사능 피폭 또는 오염을 방지하고, 시방대응 요
 원들이 적합한 방호장비를 갖추고 있는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수거한 폐기물
 을 용기에 봉입한 후 측정한 표면 방사능선량률 값을 포함하여 각 포장물을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수송적하목록을 기록하고 방사능 물질의 제거, 제
 염, 오염 검사에 사용된 장비, 물품 및 참여 인원에 대해 오염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다. 방사능 물질의 제거 및 제염이 완료된 구역에 대해서는
 정밀 오염 검사를 실시한 후 기록을 유지하며, 그 결과에 따라 후속 제염 또
 는 출입통제 등의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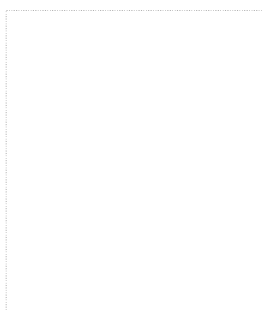
[그림 25] 방사능 물질 회수 및 처리

제 4 장

국내 및 인접국 방사능 누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안)

『국내 및 인접국 방사능 누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농림수산식품부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제1편

농수축산물의 위기대응

제1장

실무매뉴얼 개요

제1절 목적

- 「국내 및 인접국 방사능 누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로써 농수축산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농수축산식품분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위기대응에 적절히 대처
- 인접국가의 원자력시설에서 대규모 환경방사능 누출 또는 방사성물질에 의한 대규모 환경오염 가능성 발생시 국내 환경 감시 강화 등 신속한 대응 및 정확한 정보 공개 등을 통해 대국민 안심 도모
- 농수축산물 관련 대규모 식품사고가 발생했을시 관련기관의 유기적 협력으로 피해를 예방 또는 최소화하고 위기상황을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해 대응 절차와 조치사항을 규정
- 농림수산식품부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부여하여 유관기관 및 실무기관과의 연계성 확보가 가능하도록 규정, 기관별 활동사항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명시

제2절 법적 근거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식품안전기본법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식품위생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
원자력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제3절 적용범위 및 대상

1. 적용범위

가. 국내 및 인접국의 방사능 누출사고와 관련되어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수축산분야에 대한 안전관리 활동에 적용

- 대응기관간 신속·정확한 상황 전파 및 공유 체제 확립
- 관련기관 및 국제기구, 인접국가와의 협력체계 구축·운영

나. 방사능 누출에 다른 농수축산물 위생·안전 업무를 관리하는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지자체, 농·수·축협 등 관련기관과 단체의 농수축산물 위기대응 활동에 적용

- 국내외 전문가, 전문기관 등과 연계한 정확한 평가·예측
- 국내 유관기관간 일관된 대응체계 전개

다. 안전한 농수축산물의 생산 및 공급으로 국민건강 보호 및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관련 산업의 피해복구에 적용

- 신속한 환경감시 및 정확한 정보공개로 국민 신뢰 확보
- 유언비어 등으로 인한 국민 동요 및 심리적 공황 등의 방지

2. 적용대상

- 가. 농수축산물 생산 및 수입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방사능 물질 등에 의한 대규모 위기 발생 시 적용

- 나. 농수축산물 안전 업무와 관련되는 농림수산물부, 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 국립수산물과학원, 농촌진흥청, 농수축협 등 관련기관의 위기 대응 활동에 적용

- 다.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식품위생법에서 정하고 있는 방사능 물질 허용기준치를 초과하여 방사능 물질 등에 오염되거나 오염의 우려가 있는 사람과 농수축산물 등에 대하여 적용

제4절 용어의 정의

구 분	내 용
국가위기	- 국가 주권 또는 국가를 구성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체계 등 국가의 핵심요소나 가치에 중대한 위해가 가해질 가능성이 있거나 가해지고 있는 상태
위기관리	- 국가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에 대비하며 위기 발생시에는 효과적인 대응 및 복구를 통하여 그 피해와 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조기에 위기 이전상태로 복귀시키고자 하는 제반 활동 - 위기에 대한 예방 및 위기발생시 발생될 수 있는 손실의 최소화를 위해서 위기정보의 사전수집, 위기수준 평가, 위기관리계획서의 작성, 위기대응 훈련, 위기사후 평가, 위기관리시스템에 대한 평가 및 보고 등의 활동

구 분	내 용
주관기관	- 국내 및 인접국의 방사능 누출에 대한 정부의 위기관리 활동에 있어 주 책임을 지는 중앙행정기관
유관기관	- 국내 및 인접국의 방사능 누출에 대한 정부의 위기관리 활동에 있어 주관기관의 활동을 지원하고 협조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실무기관	- 위기관리의 대상이 되는 기능·시설을 직접 관리하거나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단체
위 기 관 리 활 동	① 예방 : 국내 및 인접국의 방사능 누출요인을 파악하는 등 국내 과급 효과를 감소시키기 위한 일련의 활동 ② 대비 : 국내 및 인접국의 방사능 누출상황 하에서 수행해야 할 제반 사항을 계획, 준비, 교육, 훈련, 홍보함으로써 위기 대응능력을 제고 시키고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태세를 강화시켜 나가는 일련의 활동 ③ 대응 : 피해 및 위기상황 발생시 국가의 자원과 역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2차 위기 발생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일련의 활동 ④ 복구 : 위기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위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키고 평가 등에 의한 제도개선과 운영체계 보완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고 위기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일련의 활동
위 기 경 보 수 준	① 관심(Blue) : 징후가 있으나 그 활동수준이 낮으며 가까운 기간내에 국가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도 비교적 낮은 상태 ② 주의(Yellow) : 징후활동이 비교적 활발하고 국가위기로 발전할 수 있는 일정 수준의 경향성이 나타나는 상태 ③ 경계(Orange) : 징후활동이 매우 활발하고 전개속도, 경향성 등이 현저한 수준으로서 국가위기로의 발전 가능성이 농후한 상태 ④ 심각(Red) : 징후활동이 매우 활발하고 전개속도, 경향성 등이 심각한 수준으로서 위기발생이 확실시 되는 상태
방사선 비상 발령등급	① 백색비상 : 방사성 물질의 누출로 인한 방사선 영향이 원자력시설 건물내에 국한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상상태 ② 청색비상 : 방사성 물질의 누출로 인한 방사선 영향이 원자력시설

구 분	내 용
	<p>부지내에 국한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상사태</p> <p>③ 적색비상 : 노심의 손상 또는 용융 등으로 원자력시설의 최후 방벽에 손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고로서 방사선 영향이 원자력시설 부지 밖까지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비상사태</p>
통제구역	<p>- 일반인 및 차량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설정하며 필요시 교통통제 및 우회조치를 실시하고 소방·구조대원 등 비상대응 요원만 진입하도록 출입을 제한하는 구역</p>
방사능	<p>- 불안정한 원소의 원자핵이 스스로 붕괴하면서 방사선을 방출하려는 성질이나 능력으로서, 표준단위는 Bq(베크렐)을 사용. 1Bq는 1초에 하나의 핵이 변환 또는 붕괴되는 양. 1 Ci(큐리) = 3.7E 10Bq</p>
방사선	<p>- 물질 내에서 원자를 전리시키는 능력이 있는 입자선 (알파입자, 베타입자 등) 또는 전자파(감마선, 엑스선 등)</p>
방사성 물질	<p>- 방사능농도 또는 총량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물질</p>
위기평가	<p>- 위기요인에 대한 위기수준을 평가하는 것으로 위기상황의 심각성 시급성 확대가능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국내외 여론, 대응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p>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p>- 위기에 관한 발생원인, 위기진행과정, 대응방안, 주변환경 등의 정보를 관련 이해관계자 특히 언론 미디어와 주고 받는 일</p>
위기정보 모니터링	<p>- 하나의 위기요인에 대해 심도 있게 조사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일</p>
인접국가	<p>- 중국, 러시아, 일본, 북한, 대만 등 원자력시설에서의 방사성누출 사고 발생 시 국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p>

제5절 위기유형

1. 사고원인

가. 국내 또는 인접국가의 원자력시설 등의 사고 인한 방사능 물질의 대규모 누출

나. 방사성 물질로 인한 대규모 환경오염 발생

2. 위기유형

가. 국내 및 인접국가에서 방사능 오염물품의 수입 가능성 발생

나. 방사능물질의 확산으로 국내 대기, 토양, 식품 등의 오염 가능성 발생

다. 국내 농수축산물 수출품등에 대한 방사능 오염 낙인 가능성 발생

라. 국내·외 방사능누출사고에 대한 정보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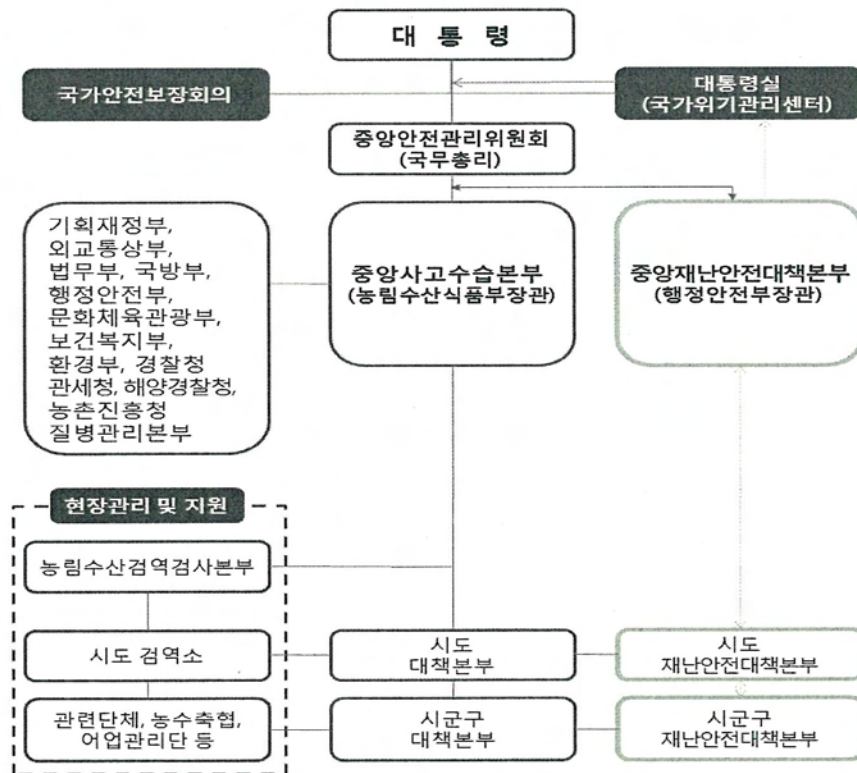
○ 언론이나 소비자 단체 등에서 안전성 논란 제기 및 검출보도

○ 보도 매체나 인터넷 등을 통해 외국의 방사능 누출관련 사고 발생정보를 입수한 경우

마. 시중에 유통 중인 수입 농수축산물이나 국내에서 생산되어 유통 중인 농수축산물의 검역·검사 과정에서 방사능 물질이 검출된 경우

- 방사능 물질 등 인체의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유해물질의 검출
- 농산물 잔류 방사선량 허용기준치 초과
- 방사능 누출지역 및 인접국가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생산라인·생산국 등이 동일한 농산물이 이미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위기대응 체계도



[그림 26] 위기대응체계도

제6절 위기 정보

1. 위기경보 수준

구 분	판 단 기 준
관심 (Blu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또는 인접국가 원자력 누출 사고발생 ○ 국내·외 정보를 통해 방사능 물질에 오염되거나 오염 우려가 있는 농수축산물이 수입 또는 유통 될 가능성이 확인
주의 (Yellow)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또는 인접국가 원자력 누출 사고로 인해 방사성물질의 환경 누출 확인 ○ 방사능 누출 지역의 농수축산물의 국내 유입(유의할 수준) ○ 언론·시민단체 등이 방사능 물질 오염 농수축산물의 유통사실을 발표한 경우
경계 (Oran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러지역의 수거 농수축산물에서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어 전국적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 방사능 누출사고지역 또는 가공된 농수축산물의 수거검사에서 방사능 물질이 반복 또는 다량 검출
심각 (Re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및 인접국의 방사성물질이 국내로 대량 유입되어 농수축산물의 보호조치가 필요한 단계 ○ 전국적으로 다품목 및 대량의 농수축산물에서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고 위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2. 위기경보 발령 절차

가. 국내 및 인접국가의 방사능누출 사고 발생과 관련된 소관 분야의 위기 징후가 포착되거나 위기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주관기관(농림수산식품부)에 위기경보 발령을 요청

-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에서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등 소속기관과 관계기관들의 농수축산물 위생·안전 분야의 동향을 상시 파악하고 수집된 제반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 공유하고 소속기관은 위기징후 목록 작성, 징후 발견보고 및 전파의무

나. 농림수산식품부는 방사능누출 사고 발생과 관련된 위기 징후가 포착되거나 유관부처에서 위기경보 발령을 요청받는 경우, 그 위협 또는 위협의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위기평가회의」를 운영하고, 평가 및 판단 결과에 따라 위기경보를 발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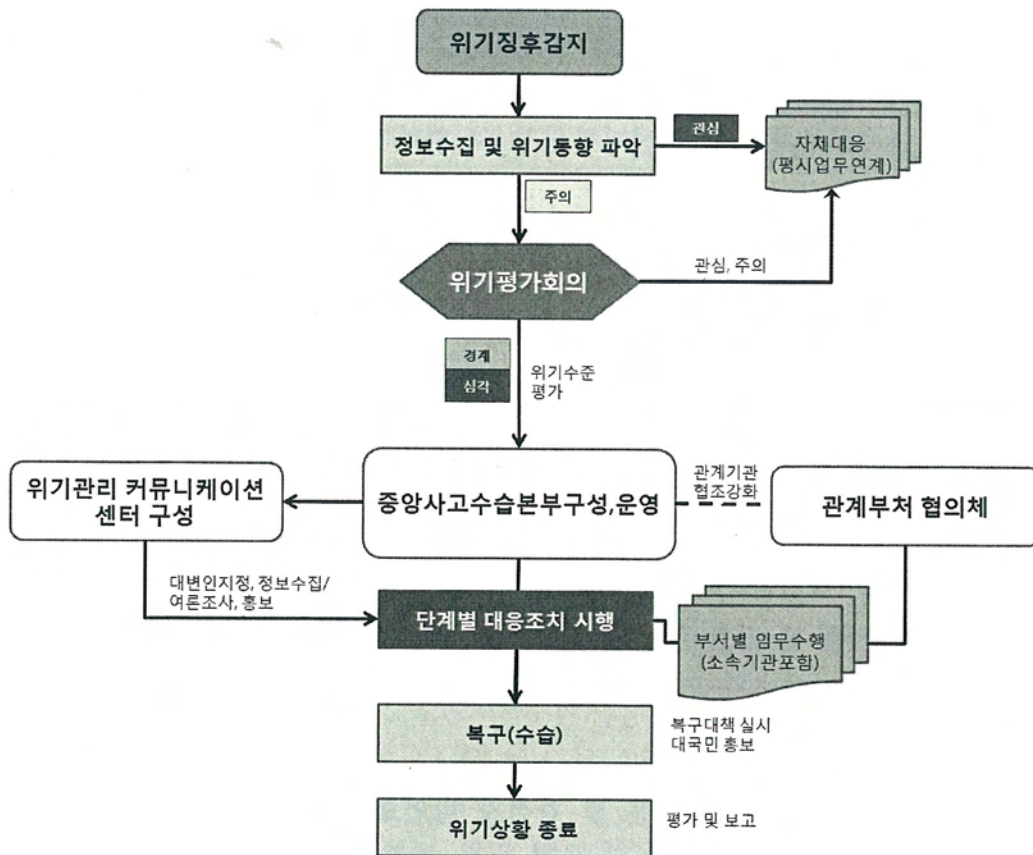
※ 상황이 시급할 경우 先 발령후, 후속회의 개최

다. 위기평가 시 상황의 심각성, 시급성, 확대 가능성, 전개 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국내의 여론, 정부의 대응능력 등을 고려하여 평가

라. 농림수산식품부는 위기경보 발령시 대통령실(국가위기관리실) 및 관련기관에 신속히 통보하고, 범정부차원의 평가와 조치가 요구되는 수준(심각단계)의 경보 발령시에는 대통령실(국가위기관리실) 및 행정안전부와 사전 협의 하에 경보 발령

- 「관심·주의」 단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실장 중심으로 평상시 업무와 연계하여 대응하고, 「경계·심각」 단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중앙사고수습본부(가동·운영)를 가동·운영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대책본부 구성을 협조

마. 심각단계 위기경보 수준을 수정 및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대통령실(국가위기관리실) 및 행정안전부와 사전 협의를 통해 조정



3. 위기평가회의

가. 목적

- 농수축산물 안전과 관련하여 「주의」 이상단계의 위기상황이 발생하거나 예상 되는 경우, 국민건강 보호와 사회적 혼란 및 관련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위기상황 분석·평가를 통해 효과적인 대응전략 모색

나. 구성

- 대변인실, 식품산업정책실, 수산정책실, 식품산업정책관, 유통정책과, 축산정책과, 소비안정정책과, 수산정책과, 어업자원관, 원양협력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및 관련 전문가
- ※ 필요시 유관기관 및 관련분야의 외부전문가 참석

다. 운영

- 소집 : 농산물 안전과 관련하여 「주의」 이상 단계의 위기상황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식품안전정책실장 요청에 따라 농림수산물부 장관이 결정
- 평가 : 상황의 심각성, 시급성, 확대가능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국내외 여론, 대응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및 대응전략 마련
- 결과 : 위기수준 평가내용 및 참석자 발언요지 등을 수록한 회의록을 작성, 장·차관 보고 및 관리

라. 임무

- 위기 수준에 대한 판단 및 평가, 대응전략 모색
- 평가결과 「경계」 또는 「심각」 단계인 경우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가능한 구체적(인원, 주관부서 등)으로 결정

4. 위기경보 단계별 대책본부 운영

위기경보 구분	관심 (Blue)	주의 (Yellow)	경계 (Orange)	심각 (Red)
대책본부장	식품산업정책실장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운영방법	평상시 업무와 연계처리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운영	

- ※ 「위기평가회의」에서 위기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중앙사고 수습본부를 구성.

5.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

가. 목적 및 운영기간

- 목적 :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공급으로 국민건강보호 및 농업인 피해예방, 신속한 복구 대응
- 운영기간 : 경계(Orange) 이상 단계부터 상황 종료시까지
 - 「관심·주의단계」에서는 해당 국장을 중심으로 별도의 위기대응대책반 구성없이 관련국에서 평상시 업무와 연계하여 즉시 대응

- 「경계단계」의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설치되기 이전에는 해당부서에서 위기대응 역할을 수행
- 「경계단계」부터는 및 중앙사고수습본부로 확대·운영

○ 장소 : 농림수산식품부 종합상황실

- 중앙사고수습본부 확대·운영으로 공간이 협소 할 경우 별도 회의실에 수습본부 설치

나. 조직 구성 및 임무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각 반별 5명 내외로 구성하되, 상황전개 추이에 따라 조정, 운영
-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센터 구성·운영
- 각 반별 임무는 각종 상황의 신속한 파악·보고, 대외홍보 등 관계기관과 협조체제유지(자료제출 포함) 업무 등을 중심으로 이행
- 각 반별로 상황을 고려, 반장이 주관하여 내부적으로 세부 운영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음

다. 위기정보별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

□ 「관심·주의」 단계

- 본부장 : 식품산업정책실장
- 추진 : 관련부서

- 관련부서에서 평상시 업무를 포함하여 수행함
 - 관심 단계 등에서 상황변화가 없고, 관련규정에 의한 대응처리 방침이 있는 경우에 그에 따라 운용함.
 - 근무요령, 인원구성은 위기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결정하되 상황보고, 대응시기 등은 적절하게 운영하여야함.
- 「경계·심각」 단계(중앙사고수습본부)
- 본부장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언론대응 :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대변인)
 - 추진 : 대책반 4개반
 - 주관부서 지정
 - 해당 반별 주관부서 지정은 위기형태, 위기등급, 주요 관련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위기상황에 소속기관의 공동대응이 필요한 경우 반별로 주관부서 협조부서로 구분하여 추진 할 수 있음.

라. 반별 임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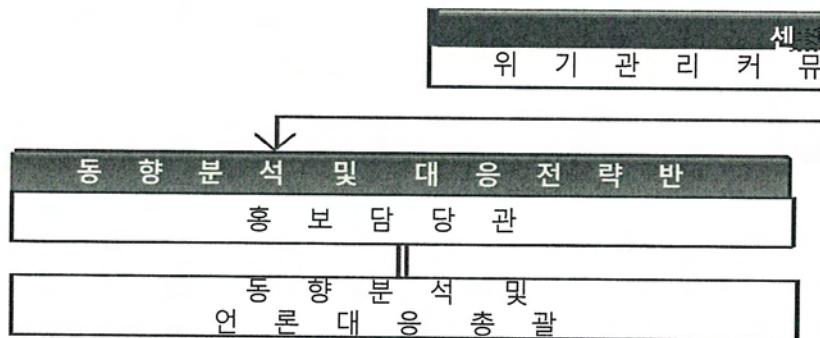
- 반별 임무를 숙지하여 위기대응대책단 가동시 상호 협조체계 유지하고,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연계를 추진함

구분	주요임무	주관부서
본부장	수산물 위생·안전 위기대응 총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총괄반	일일상황및 대책 종합 농수축산물유통실태 파악 및 지도	식품산업정책실장
검사반	방사능 오염원인 추적 조사	소비안전정책관
기술지원반	방사능오염 검사지원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과학원

※ 반별 상호 협조와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연계체계 확보

마.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센터의 구성

-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센터는 대변인, 정보수집 및 여론조사 분석, 위기 대응 홍보반으로 구성



[그림 27]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센터

- 주요 임무

구분	주요임무	주관부서
센터장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총괄	대변인
동향분석 및 대응전략반	사고관련 동향 분석 및 언론대응 총괄 수행	홍보담당관
온라인대응반	온라인 정보수집 및 대응 커뮤니케이션 수행	온라인홍보팀장

※ 대변인은 위기상황을 고려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이 별도 지정 할 수 있음

제7절 위기대응 지침 및 판단/고려 요소

1. 위기대응 지침

- 신속·정확한 문제해결을 위해 책임 주관부서를 지정하고 주관부서를 주축으로 소속기관과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 소속기관과 관련기관에 상황을 전파, 대응, 연락 및 홍보를 지원
- 위기평가회의 결과 「관심·주의」 수준에서는 해당실 중심으로 평상시 업무와 연계하여 대응하고, 「경계·심각」 수준에서는 즉시 「중앙사고수습본부」가동·운영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위해요인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대응이 가능하도록 해당업무 담당자(직전 담당자 포함) 이외 법률·예산·홍보 담당자까지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음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위해요인별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식약청, 국무총리실, 시·도 등 관계 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조·지원체계 형성
- 주관부서 또는 중앙사고수습본부 「단계별 조치방안」에 따라 문제 진행 단계에 맞춰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시행

2. 판단/고려요소

- 접수된 현장정보의 평가 후 긴급 대응초지 여부
- 위기의 단계별 평가에 따라 전국적인 규모의 위기상황이 전개될 경우 관련기관과의 정보공유·대응방안 공동 강구 등 협조체계 구축 여부
- 농업의 피해확산 가능 및 피해최소화 방안 확보 여부
- 대 국민 홍보체계 구축 및 홍보 역량 확보 여부

제2장

위기경보 수준별 조치사항

제1절 관심

1. 상황

- 방사능 누출 사고관련 국내·외 정보를 통해 방사능 물질에 오염되거나 오염우려가 있는 농수축산물이 수입 또는 유통될 가능성이 확인됨
- 수입검사 또는 유통 중인 농수축산물의 수거검사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됨

담당부서		조치사항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기 징후 인지 내용 보고 ○관련 정보 및 동향 지속적 모니터링 ○수집된 안전정보 상시 수집 체계 유지 (일상업무 연계) ○수집 정보 분석 및 단계별 대응체제 점검 ○관계기관 및 소속기관 정보 공유체계 및 협조체계 유지 ○수입 농수축산물 검사 및 안전성 조사(계획) 점검 ○상황보고체제 점검
	소비안전정책관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사능 물질관련 국내 농수축산물 사업장 관리 지도 점검 ○농식품 관련 위험정보교류
	식품산업정책관실, 유통정책관실, 축산정책관실, 수산정책관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수축산물시장동향 파악 ○농수축산물소비촉진 대책 점검
	대변인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자간담회, 브리핑, 기고, 기획보도 등 일상업무 유지 ○언론매체 취재동향 관찰(필터링실시) ○언론에 정보제공 및 협조체제 점검

소 속 기 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과학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시 상황파악 체제 점검 ○해외 농수축산식품안전정보 및 해외언론 동향 파악 ○국내·외 농수축산물위해정보 수집 : 일상업무 연계 ○국내산 농수축산물에 대한 안전성조사 계획 점검 ○수출·입 농수축산물검사 실시계획 점검
------------------	---	--

2. 국내 농수축물 조치사항 및 절차

가. 조치목록

조치사항	세부내용	관계기관/부서
① 정보확인	제보자 및 정보 출처 신뢰성 확인	정보입수부서
② 정보전파	상위부서·기관으로 상황보고	정보입수부서
③ 대응지시	상황보고에 대한 대응여부 결정	농림수산식품부
④ 조치실시	수거검사 등 위해정보 추가확인 실시	농림수산검역 검사본부·시도

나. 조치내용

① 정보확인

- 유관기관, 대중매체, 인터넷, 동종업계를 통한 정보 진위여부 및 현황 파악

- 필요시 해당업소 출장 확인 조사 실시
- 업체명, 제품명, 유통현황, 위해성 등 파악
- ※ 긴급 상황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대응지시 이전에도 각 부서에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출고보류 등 긴급조치 후 상황 보고

② 정보전파

- 정보 확인결과를 첨부하여 보고체계에 따라 상황보고 후 관련부서에 상황전파
- 농림수산식품부(담당팀) → 장관 우선보고 → 상황전파(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역검사소, 시·도, 식약청 등)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역검사소 → 관련조사과 → 농림수산식품부 → 상황전파(시·도)
- 시도·(담당과) → 농림수산식품부(담당팀) → 상황전파(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역검사소, 시군구)
- 정보의 성격에 따라 보고범위 및 전파범위 조정
- 발생상황이 긴급위생 조치를 실시하여야 하는지 조사의견을 첨부하여 상황보고

③ 대응지시

- 상황보고 검토 후 위해성 판단에 따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시·도 및 검역검사소에 대응방향 지시
- 보도자료 배포 등 언론대응 전담부서 지정
- 위기 발진 가능성이 낮은 상태는 평상시 상시적인 예방 관리로 대응

④ 조치실시

- 위해 정보에 대한 추가조사 실시
 - 해당제품 수거검사 및 위해정보에 대한 검증 실시
- 농산 관련 업체 등을 점검하여 위해여부 확인
- 긴급위생조치 상황으로 판단될 것을 대비하여 긴급위생 조치 준비
 - 긴급위생조치 실시 인력 편성 및 대기
 - 유통현황 파악 및 해당 정보 지속수집

3. 수입농산물 기관별 조치사항

기관명	긴급조치사항
농림수산식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접수 ◆ 수입검역 잠정중단(수입신고 보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제품 전체 ⇒ 방사능 물질 등에 대한 역학조사·원인규명이 복잡하여 상대국 위해정보 입수에 시일이 소요되는 품목 ◆ 검역시행장 보관물량 출고보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역 잠정중단 대상품목에 동일한 조치 ◆ 긴급위생조치 상황반 편성
농림수산검역 검사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접수 및 농림수산식품부 우선보고 ◆ 검역·검사 강화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지원·출장소 공문시달 ◆ 상대국 확인요청 및 해외정보 추가 소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지원 관련제품(전체 또는 해당작업장산) 보관물량·출고내역 및 최근 수입물량 조사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역검사소 위해평가 자체협의체 소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해요소에 대한 평가 및 긴급조치 범위설정 ◆ 상황일지 작성 ◆ 보도자료 작성 준비
각 시·도 검역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수산식품부·검역검사소 자료작성 협조 ◆ 긴급위생조치 상황반 운영 준비

제2절 주의

1. 상황

- 수입검사 또는 유통 중인 농수축산물의 수거 검사에서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고, 동일 루트의 제품이 유통
- 언론 및 시민단체 등이 방사능 물질 오염 농수축산물의 유통 사실을 발표
- 방사능 물질 오염 농수축산물의 지역단위 유통이 확인
- 인접국의 농수축산물의 방사능 물질 오염사실 확인 및 대규모 리콜 실시 등 사고가 발생하고, 한국으로의 수출이 확인된 상황

담당부서		조치사항
농림수산물부 (식품산업정책실장)	식품산업정책실	○위기확산 가능성 검토 실시 ○해당 분야별 위기대응 대책 능력 점검 ○수입 농수축산물검사 및 농수축산물 안전성조사 철저 추진 ○관계기관 협의 및 대책회의 개최 협의사항 전파) ○수입 농수축산물상대국에 대한 입장 및 해명 요구 ○원산지 표시 단속 철저 ○상황보고체제 유지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 등)
	소비안전정책관실	○방사능물질 관리지도 및 교육 ○국내 농수축 사업장 실태 파악 ○방사능물질이 발견된 농수축산물생산동향 파악
	식품산업정책관실,	○농수축산물시장동향 파악

	유통정책관실, 축산정책관실 수산정책관실	○농수축산물소비촉진대책 강화 및 시행
	대변인실	○보도자료 배포(발생상황 및 조치계획 등) ○언론에 정보제공 및 협조체제 점검
소속기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국립수산과학원	○상시 상황파악 체제 운영 ○해외 농수축산식품안전정보 및 해외언론 동향 파악 ○국내·외 농수축산물위해정보 수집 : 식약청 협조 ○국내산 농수축산물에 대한 안전성조사 실시 ○수출·입 농수축산물검사 실시

2. 국내 농산물 조치사항 및 절차

가. 조치 목록

조치사항	세부내용	관계기관/부서
① 정보확인	제보자 및 정보출처 신뢰성 확인	정보입수부서
② 우선조치	해당제품 출고·판매 보류조치	관할 행정기관
③ 정보전파	상위부서·기관으로 상황보고	정보입수부서
④ 수거검사	해당 농수축산물 수거검사 실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 검역검사소
⑤ 대응지시	발생상황에 대한 대응여부 결정	농림수산식품부
⑥ 조치실시	회수 등 대응조치 실시	시도
⑦ 결과보고	회수결과 및 조치결과 보고	시도

나. 조치 내용

① 정보확인

- 정보입수 부서에서 업체명, 제품명, 판매량, 유통현황을 조사
- 필요시 제품수거 검사 실시

② 우선조치

- 방사능 오염 위해성 확인시 관련규정에 따라 출고보류 등 긴급조치 후 상황 보고

③ 정보전파

- 정보 확인결과를 첨부하여 보고체계에 따라 상황보고 후 관련부서에 상황전파
 - 농림수산식품부(식품산업정책실) → 장관 우선보고 → 상황전파(농림수산 검역검사본부, 검역검사소, 시·도, 식약청 등)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역검사소 → 관련 조사과 → 농림수산식품부 → 상황전파(시·도)
 - 시·도(담당과) → 농림수산식품부(식품산업정책실) → 상황전파(유관기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역검사소, 시군구)

④ 수거검사

- 농림수신검역검사본부 및 지역 검역검사소에서 해당 제품 수거검사 실시

- 수거검사 결과보고 및 유관기관 상황전파

⑤ 대응지시

- 수거감사 결과 및 유통현황에 따라 긴급조치 여부 결정
- 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 검역검사소 및 시·도에 대응 수준·방향 지시
- 보도자료 배포 등 언론대응 전담부서 지정

⑥ 조치실시

- 시·도 상황반 편성운영
- 지자체 등에서의 농수축산물 관련 영업자 자발적 회수 권고
- 관련업체 점검 및 회수현황 지도 감독
- 해당 정보 지속수집

⑦ 결과보고

- 회수결과 등 처리결과를 농림수산물식품부(식품산업정책관실)로 보고

3. 수입농산물 관련 기관별 조치사항

기관명	긴급조치사항
농림수산물식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검역·수입신고 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검역 잠정중단 대상품목과 동일 조치 ◆ 검역시행장 보관량 출고중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검역 잠정중단 대상품목에 동일한 조치 ◆ 한국으로의 수출중지 요청(수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제품 전체 또는 해당작업장산 제품 ◆ 각 시·도 유통감시반 편성 지시 ◆ 판매·사용금지 조치(시·도 또는 영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해도가 중할 경우 자진회수와 병행하여 조치 ○ 자진회수·강제회수가 모두 어려울 경우 일시 금지조치로서 채택 ◆ 상대국 검출원인 분석·재발방지대책 요구 ◆ 보도자료 작성 배포
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 위해평가 자체협의체 운영 및 결과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판매 금지범위, 압류·폐기·회수 대상 여부 심의 ○ 선별검사시 시료채취·검사의 방법·기준 및 합격기준 설정 ◆ 유통물량에 대한 자진회수 조치(영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대국의 회수발표가 있거나, 강제회수가 사정상 어려운 경우 ◆ 보관·출고물량 등 내역조사(계속) ◆ 유통물량 추적조사를 위한 자료 제공(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업체명단·수입량 등 ◆ 검사불합격 물량 폐기·반송 준비
시도 검사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통감시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제품 추적조사 및 봉인조치 등 ◆ 농식품부 조치사항 이행(판매금지, 회수 등)

제3절 경제

1. 상 황

- 여러지역의 수거된 농수축산물에서 방사능 물질이 다량 검출되어 방사능 오염 농산물로 인한 피해가 전국적 확산이 우려됨
- 방사능 오염된 농수축산물로 인한 대규모 인명피해 및 수 건의 사망사고 발생

담당부서		조치사항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반 (식품산업정책실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수산식품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가동 ○ 일일상황 및 대책 총괄 ○ 농수축산민및 관련업계 피해상황 파악 ○ 관계기관 대책 회의 등 개최 ○ 수입 농수축산물검사 및 안전성조사 확대 추진 ○ 방사능 물질 지도 강화(실적보고) ○ 유관기관 및 소속 소속기관과 협조체제 강화 및 정보공유 ○ 원산지 표시 합동 단속 추진 ○ 현지 실태조사 및 점검 ○ 수출입 농수축산물에 대한 대책 마련 ○ 상황보고 체계 유지 및 협의 -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실, 관계부처 등 ○ 농수축산민의 보호 및 구호활동 전개 ○ 농수축산물시장동향 파악 및 보고 ○ 농수축산물소비촉진 및 시장기능 회복대책 강구 ○ 농수축산민 동향 점검
	검사반 (소비안전정책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수축산분야 사업장지도 강화 ○ 시도 농수축산 관련 단체와의 협조체제 강화 ○ 행안부, 국토부 등의 유관기관과 농수축협과의업무 협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사능물질 관련 국내 농수축산지 관리지도 강화 ○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 ○ 농수축산물의 생산동향 파악
	<p>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센터 (대변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론에 정보제공 및 협조체제 강화 ○ 브리핑 실시 : 종합대책 수립 사항 등 ○ 대 국민 홍보활동 및 관련 동향 파악 강화 (정보발표 및 홍보)
<p>소속기관</p>	<p>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과학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산 농수축산물에 대한 추가 안전성조사 실시 ○ 수출입 농수축산물 추가 검사 실시 ○ 사고상황에 대한 분석 및 평가 ○ 농수축산 식품의 방사능 영향평가 ○ 상시 상황파악 체제 강화 ○ 해외 농수축산식품 안전정보 및 해외언론 동향 파악 ○ 국내·외 농수축산물 위해정보 수집 강화 : 식약청 및 원자력연구원 등의 협조체제 강화 ○ 국내산 농수축산물에 대한 추가 안전성조사 실시 ○ 수출·입 농수축산물 추가 검사 실시 ○ 사고상황에 대한 분석 및 평가 실시 ○ 농수축산식품의 방사능 영향평가 실시

2. 국내 농산물 조치사항 및 절차

가. 조치 목록

조치사항	세부내용	관계기관/부서
① 정보확인	유통현황 및 피해현황 조사	정보입수부서
② 우선보고	상황보고	정보입수부서
③ 경보발령	긴급대응 조치 및 대국민 홍보	농림수산식품부
④ 추가조사	오염원인 및 유통현황 추가조사	유관기관 합동
⑤ 대응지시	대책반 운영 등 세부계획 수립	농림수산식품부
⑥ 조치실시	압류·폐기·회수 등 대응조치 실시	각 부서
⑦ 결과보고	회수결과 및 조치결과 보고	각 부서

나. 조치 내용

① 정보확인

- 해당 농수축산물 생산량 및 판매처 등 기본정보 조사
- 우선조치 실시 : 출고보류, 유통물량 회수 등

② 우선보고

- 관련 상황 우선보고 실시

- 농림수산식품부(중앙사고수습본부) → 장관 우선보고 → 상황전파(대통령실, 행정안전부(중앙재난대책본부), 유관기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역검사소, 시·도, 식약청 등)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역검사소 사무소·지원 → 농림수산식품부(중앙사고수습본부) → 상황전파(시·도)
- 시군구(담당과) → 시·도(담당과) → 농림수산식품부(중앙사고수습본부)

③ 경보발령

- 중앙사고수습본부 : 우선보고 상황에 근거하여 경보발령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역검사소 및 시·도에 대응 수준·방향 우선지시
- 보도자료 배포 등 언론을 통한 대국민 홍보

④ 추가조사

- 해당 농산물 오염원인 추적조사
- 오염원인 정밀검사 실시
- 위해 농산물의 유통경로 추적 및 유통물량 파악

⑤ 대응지시

- 중앙사고수습본부내 해당 반 편성 및 운영
- 생산·유통 조사 결과에 근거 세부 회수계획 수립

- 시도 대책반 전국 확대편성 계획
- 영업자 자진회수 또는 강제회수 명령
- 생산단계에 있는 해당 농수축산물의 대한 생산중단 검토 지시
- 보도자료 배포 등 언론대응 전담부서 지정
- 소비자단체 또는 생산자단체에 협조요청
- 농수축산물 위생심의분과위 건의 또는 전문가협의회 개최

⑥ 조치실시

- 영업자에게 유통금지 또는 판매금지 지시
- 시·도 회수대책반 및 상황반 편성운영
- 관련업체 점검 및 회수상황 지도감독
- 해당제품 추가 유통현황 파악 및 관련정보 지속수집
- 필요시 영업자 강제회수 실시
- 시·군·구 긴급위생조치반 편성 및 운영 지시(필요시)

⑦ 결과보고

- 회수결과 등 처리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로 보고

3. 수입농산물 관련 기관별 조치사항

기관명	긴급조치사항
중앙사고수습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검역·수입신고 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제품 전체 : 방사능 물질등에 대한 역학조사·원인규명이 복잡하여 상대국 위해정보 입수에 시일이 소요되는 품목 ◆ 검역시행장 보관량 출고중단 ◆ 한국으로의 수출중지 요청(수출국) ◆ 긴급위생조치 상황판 편성 ◆ 각 시·도 유통감시반 편성 지시 ◆ 자진회수·판매(사용)금지 조치·강제회수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대국 오염정보 제공시와 동일 ◆ 보도자료 작성 배포
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수산물식품부 우선보고 ◆ 상황일지 작성 ◆ 당해제품 반송·폐기 ◆ 검역·검사 강화조치(각 지원·출장소) ◆ 상대국 확인 및 위생검사 철저요청(대사관) ◆ 참고조사 및 통계자료 작성·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지원 관련제품(전체 또는 해당작업장산) 보관물량·출고 내역 및 최근 수입물량 조사 ◆ 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 검역검사소 위해평가 자체협의체 소집·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대국 오염정보 제공시와 동일
시·도 검사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통감시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제품 추적조사 및 봉인조치 등 ◆ 농림수산물식품부 조치사항 이행(판매·사용금지, 회수 등)

제4절 심각

1. 상황

- 전국적으로 다품목 및 대량의 방사능 오염 농수축산물에서 방사능 유독 물질이 검출되고 위해사고가 발생
- 방사능 오염 농수축산물로 인한 위해사고가 여러지역에서 발생

담당부서		조치사항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반 (식품산업정책실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림수산식품부 중앙대책본부(본부장:실장) 가동 ○일일상황 및 대책 총괄 ○분야별 비상운영대책 즉시 시행 ○관계부처 대책 회의(재난사태 선포 등) ○방사능물질 감시 철저 ○수입농수축산물 검사 및 안전성 조사 확대 ○주민대피 실시 ○수출입 농수축산물 피해 대책 추진 ○농수축산민 및 관련업계 피해상황 파악 및 대책 강구 ○상황보고(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실 등) ○농수축산물 시장동향 파악 및 보고 ○농수축산물 소비촉진 및 시장기능 회복대책 강구 ○피해 업계 파악 및 지원대책 강구 추진
	검사반 (소비안전정책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수축산 사업장 현장지도 및 감독 강화 ○농수축 단체와의 협조체제 강화 ○행안부, 국토부 등의 유관기관과 농수축협과의 협조 강화 ○생산·출하금지, 폐기 등 위해 농수축산물 공급 차단 조치 ○국내 농수축산지 관리지도 강화 ○농수축산물 생산동향 파악

	<p>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센 터(대변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로활동의 제한강화 ○후속 위기대응조치 강구 ○언론에 정보제공 및 협조체제 강화 ○브리핑 실시 : 종합대책 수립 사항 등 ○대 국민 홍보활동 및 관련 동향 파악 강화
<p>소 속 기 관</p>	<p>농림수산검역검 사본부, 국립농산물품질 관리원, 국립수산과학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산 농수축산물에 대한 추가 안전성조사 실시 ○수출·입 농수축산물 추가 검사 실시 ○사고상황에 대한 분석 및 평가 ○농수축산식품의 방사능 영향평가 ○방사능물질관련 국내·외 정보 수집하여 보고 ○농수축산용 안전 관련업무 등 지속적 실시 ○국내·외 농수축산물 위해정보 수집 강화 : 식약청 및 원자력 연구원 등의 협조체제 강화 ○수출·입 농수축산물 특별관리 ○생산·출하 금지된 농수축산물 안전성 조사 확대 ○방사능물질 검출 농수축산물에 대한 폐기, 반송 등 조치

2. 국내 농산물 조치사항 및 절차

가. 조치 목록

조치사항	세부내용	관계기관/부서
① 정보확인	유통현황 및 피해현황 조사	정보입수부서
② 우선보고	상황보고	정보입수부서
③ 경보발령	긴급대응 조치 및 대국민 홍보	농림수산식품부
④ 추가조사	오염원인 및 유통현황 추가조사	시·도/검역검사소
⑤ 대응지시	대책반 운영 등 세부계획 수립	농림수산식품부
⑥ 조치실시	강제회수 등 대응조치 실시	시·도
⑦ 결과보고	회수결과 및 조치결과 보고	시·도
⑧ 재발방지	재발방지 대책 수립	농림수산식품부

나. 조치 내용

① 정보확인

- 해당 농수축산물 생산량 및 판매처 등 전국 유통정보 조사
- 우선조치 실시 : 출고보류, 유통물량 회수 등

② 우선보고

- 농림수산식품부(중앙사고수습본부) → 장관 우선보고 → 상황전파(대통령실, 행정안전부(중앙재난대책본부), 유관기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역검사소, 시·도, 식약청 등)

- 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 검역검사소 사무소·지원 → 농림수산물식품부(중앙사고수습본부) → 상황전파(시·도)
- 시군구(담당과) → 시·도(담당과) → 농림수산물식품부(중앙사고수습본부)

③ 경보발령

- 중앙사고수습본부 : 우선보고 상황에 근거하여 경보발령
- 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 검역검사소 및 시·도에 대응 수준·방향 우선지시
- 범정부 공동 대응 체계 운영
- 대국민 대처요령 등 TV, 인터넷 집중 홍보

④ 추가조사

- 해당 농산물 방사능 오염원인 추적조사
- 방사능 오염원인 정밀검사 실시
- 전국 유통경로 추적 및 유통물량 파악

⑤ 대응지시

- 생산·유통 추가조사 결과에 근거 세부 회수계획 수립
- 대책반 편성 및 영업자 자진회수 및 강제회수 명령
- 보도자료 배포 등 언론대응 전담부서 지정

⑥ 조치실시

- 시·군·구 및 검역검사소 유통감시반·상황반 편성 운영
- 영업자 자진회수 감독 및 강제회수 병행 실시
- 소비자 단체 및 생산자 단체에 회수협조 요청
- 관련업체 점검 및 회수상황 지도감독
- 해당 제품 유통정보 지속수집
- 압류·회수 물량에 대한 즉각폐기 및 관리강화

⑦ 결과보고

- 회수결과 등 처리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로 보고

⑧ 재발방지

- 범 정부적인 원인조사 및 회의를 통하여 재발방지 대책 수립
- 열린 포럼 개최 : 정부, 소비자, 생산자 등 관계자들간 재발방지 대책 회의 개최

3. 수입농산물 기관별 조치사항

기관명	긴급조치사항
중앙사고수습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국민 홍보 ◆ 보도자료 작성 배포 ◆ 수입검역·수입신고 중단지시 ◆ 검역시행장 보관물량 출고중단 지시 ◆ 한국으로의 수출중지 요청(수출국) ◆ 긴급위생조치 상황반 전국적 확대 편성지시 ◆ 전국 시·도 유통감시반 편성 지시 ◆ 자진회수·판매(사용)금지·강제회수 조치 ◆ 확산원인 파악 등 재발장지 대책 강구
농림수산물검역 검사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수산물식품부 우선보고 ◆ 상황일지 작성 ◆ 당해제품 반송·폐기 ◆ 검역·검사 강화조치(각 지원·출장소) ◆ 상대국 확인 및 위생검사 철저요청(대사관) ◆ 창고조사 및 통계자료 작성·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지원 관련제품 보관물량·출고내역 및 최근 수입물량 조사 ◆ 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 위해평가 자체협의체 소집·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대국 오염정보 제공시와 동일
각 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시·군·구로 유통감시반 확대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제품 추적조사 및 봉인조치 등 ◆ 농림수산물식품부 조치사항 이행(판매·사용금지, 회수 등)

제3장

위기대응 조치 및 절차

제1절 국내 방사능 누출 사고에 따른 농수축산물 유통

1. 상황

- 방사능 누출 사고로 인한 방사능 물질 오염 농수축산물이 유통되었다는 정보를 입수
- 해당 농수축산물을 생산하거나, 생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농수축산업관련 업체의 농수축산물 수거검사 실시
- 방사능 오염 농수축산물의 방사능 물질 다량 검출, 해당제품 전국적 유통

2. 조치사항 및 절차

상황발생 : 방사능 누출 사고 및 방사능오염 농수축산물의 유통	
조치사항	세부내용
1. 상황보고	① 관련부서를 통한 상세정보 확인 ② 위해정보 입수 부서에서 상황보고전과 - 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 → 본부장 → 농림수산물식품부 → 장관 - 시도 → 농림수산물식품부 → 장관 ③ 유관기관 및 관련업체·단체에 상황전과
2. 상황판단(위기평가회의 개최)	① 긴급 위생조치 여부결정(농림수산물식품부 주관) - 유관기관 협의를 통하여 대응 수준·방향 결정 ② 관련 제품 수거검사 지시
3. 상황전과	① 유관기관(시·도) 통보 및 보도자료 배포
4. 정보전과	① 보도(설명)자료 작성 ② 유관기관에 상황 통보

5. 대책반 구성	① 긴급위생조치 실시인력 편성
6. 유통현황 파악	① 해당 지역 농산물에 대한 생산·유통·통계자료 작성 ② 시·도에 해당 업체에 대한 현황 조사
7. 대책협의	① 긴급위생조치 대상 농수축산물에 대한 기술 협의 ② 필요시 전문가협의회 개최 ③ 국무총리실에 안전사고 긴급대응반 회의 개최 요청(필요시)
8. 긴급위생조치 시행	① 해당지역 농수축산물의 회수 권고 및 유통금지 조치 - 유통(보관)단계에 있는 해당 농수축산물에 대한 출고 보류 조치 - 판매단계에 있는 해당 농수축산물에 대한 판매금지 조치 - 생산단계에 있는 해당 농수축산물에 대한 생산중단 지시 ② 해당 물품 생산·유통 업체에 대한 관리 강화
상황발전 : 방사능 오염 농수축산물의 전국적 유통	
9. 긴급위생조치	① TV, 인터넷 등 국민 대처요령 등 대국민 위해 사고 알림
10. 상황전파	① 대통령실, 행정안전부 유관기관에 상황전파
11. 농산물위생심의회 개최	① 확산원인 조사 ② 해당 농수축산물 생산 및 유통중단 검토 등 대응책 강구 ③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서와 공동대응 방안 검토
12. 위생조치반 확대 운영	① 긴급위생조치 실시인력 증원 ② 전국 시·군·구로 위생조치반을 확대편
13. 회수조치 강화	① 영업자 강제회수 병행 ② 영업자 회수이행 여부 관리감독 강화 ③ 전국 피해상황 회수현황 실시간 감시 ④ 압류·회수한 농산물에 대한 폐기조치

상황종료 : 수거완료 등 방사능 누출 사고의 종결단계	
14. 사후관리 조치	① 긴급위생조치 대상 농수축산물에 대한 사후관리(유출 방지 등) 조치 ② 압류·회수한 농수축산물에 대한 폐기조치
15. 재발방지대책 강구	① 긴급위생조치 정리 또는 평가를 위한 전문가 협의회 등 개최 ② 발생원인 및 확산원인 조사
16. 결과정리	① 상황발생에서 종결단계까지 피해상황 및 조치경과 작성 ② 시·도의 긴급위생조치 결과 등 종합보고서 작성

3. 기관별 임무 및 역할

농림수산물부(시·도)	시·군·구	유관기관(단체)
① 상황발생		
① 상황접수	① 상황접수	① 상황접수
② 상황보고 및 상황전파	② 상황보고 및 상황전파	② 상황보고 및 상황전파
③ 상황판단(긴급대처 상황인지 판단)		
② 긴급조치		
① 예비조사 및 정보 검증(시·도)		
② 출고보류 조치(농림수 산물부 → 시·도)		
③ 판매금지 조치(농림수 산물부 → 시·도)		
④ 자진회수권고(농수산식품부/시·도) 및 점검 (시·도)	① 자발적 회수	① 회수조치 점검(농림 수산검역검사본부, 식약청)
⑤ 강제회수조치(농림수산물부/시·도) 및 점검 (시·도)	② 강제회수조치 및 점검	
⑥ 보관·유통중인 농산물의 유통·판매금지조치 (농림수산물부)	③ 유통·판매금지 조치	
⑦ 압류·폐기조치(농림 수산식품부/시·도)	④ 압류·폐기조치	② 압류·폐기협조(농림수산 식품부, 농림수산검역검 사본부, 식약청)
③ 해당 영업자에 대한 조치(필요시 택일 조치)		
① 정보사항에 대한 확인요청 (농림수산물부/시·도)		
② 결과 확인 생산·유통 중 단 지시(농림수산물부/ 시·도)	① 긴급 대책반 편성· 운용	
③ 자진/강제 회수 실시		① 타·도(시군구)에

(농림수산식품부/시·도) ④ 거래처에 대한 조사 (시·도) ⑤ 당해 농산물의 폐기 (시·도)	② 거래처 조사·보고 ③ 폐기사항 입회·보고	수거 협조
④ 협의회/심의회 개최		
① 전문가협의회 개최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 검역검사소) ② 농수축산물위생심의회 (농림수산식품부) ③ 농수축산물 위생심의분과위 개최(농림수산검역검사본 부, 검역검사소) ④ 중앙사고수습본부 개최요청(농림수산식품 부)		① 전문가협의회협조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식약청) ②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개최(행정안전부)
⑤ 대국민홍보		
① 보도자료(농림수산식품부 /시·도) ② 필요시 소비자 등 홍보자료(농림수산식품부 /시·도)	① 홍보자료 배포	① 홍보자료 배포(협조)
⑥ 기타 사항(필요시 택일 조치)		
① 통계자료 작성 및 분석(시·도) ② 상황일지 작성 (농림수산식품부 / 시·도) ③ 긴급위생조치상황반 편성(농림수산식품부/ 시·도)	① 통계자료 보고 ② 필요시 상황일지 작성 ③ 필요시 긴급조치반 편성	① 통계자료협조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식약청, 관세청)

제2절 인접국 방사능 누출 사고에 따른 농수축산물 유통

1. 상황

- 인접국의 방사능 누출 사고 및 방사능 오염 농수축산물 수입에 따른 안전성 확인 필요성 대두
- 인접국 방사능 누출사고로 인한 수입 농수축산물의 검역검사 과정에서 방사능 물질이 검출됨
- 인접국의 방사능 누출로 인한 방사능 오염 농수축산물의 유통이 전국적으로 확산됨

2. 조치사항 및 절차

정보입수 : 인접국의 방사능 누출 사고로 인한 해당국가 농수축산물 수입유통 및 국내 농산물 방사능 오염 가능성 우려	
조치사항	세부내용
1. 상황접수	① 인접국의 방사능 누출로 인한 농수축산물 오염 상황 정보 입수
2. 상황보고	① 정보입수 부서에서 담당부서로 정보전파 ② 담당부서에서 정보확인 후 상황보고 - 상대국 확인요청 및 해외정보 추가 수집 - 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 → 농림수산물식품부 → 장관 → 유관기관(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등) → 대통령비서실

3. 상황판단	① 긴급 위생조치 여부 및 대응 수준 결정 (농림수산식품부 주관) - 검역검사소 위해평가 자체협의체 소집 - 위해요소에 대한 평가 및 긴급조치 범위설정
4. 검역검사 강화조치	① 수입검역 잠정중단(수입신고 보류) - 관련제품 전체 : 방사능 오염 물질 등의 역학조사 · 원인 규명이 복잡하여 상대국 위해정보 입수에 시일이 소요되는 품목 ② 검역시행장 보관물량 출고보류 - 수입검역 잠정중단 대상품목에 동일한 조치 ③ 참고조사 및 통계자료 작성 · 분석 ④ 각 지원 관련제품 보관물량 · 출고내역 및 최근 수입물량 조사 ⑤ 해당제품 정밀검사 · 수거검사 실시
5. 상황전파	① 상황일지 작성 및 보도자료 작성 ② 유관기관(시 · 도) 통보 및 언론홍보
상황발생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정밀검사 결과 방사능 오염 물질 검출	
6. 수입중단	① 수입검역 · 수입신고 중단 - 관련제품 전체 : 방사능 오염 물질 등의 역학조사 · 원인 규명이 복잡하여 상대국 위해정보 입수에 시일이 소요되는 품목 ② 검역시행장 보관물량 출고중단 ③ 한국으로의 수출중지 요청(수출국) ④ 수출국에 발생원인 규명 조치 및 재발 방지 조치 강구
7. 유통지도반 편성	① 유통지도반 편성 ② 각 시 · 도 유통지도반 편성 지시 ③ 상대국 오염정보 제공시와 동일발생원인 및 유통경로 파악

8. 해당제품 회수·검사	① 자진회수·판매(사용)금지·강제회수 조치 - 영업자 자진회수 권고 - 회수 계획서 제출명령 및 회수상황 관리감독 ② 해당 농수축산물로 만든 가공품 등 수거검사 실시
9. 유통지도반 운영	① 검역검사소 지원 및 전국 시도에 긴급 위생조치반 운영 ② 긴급위생조치 실시 인력 편성 및 운영 - 당해제품 추적조사 및 봉인조치 등
10. 상황전파	① 식약청, 보건복지부, 관련단체·협회 등 유관기관에 상황 전파 ② 보도자료 작성
상황발전 : 방사능 오염 농수축산물로 제조한 가공품 전국 유통	
11. 상황접수	① 수거검사 결과 해당 농수축산물로 제조한 가공품이 전국적으로 유통되었음을 확인
12. 확산범위 파악	① 해당 농수축산물의 유통경로 추적조사 ② 해당 농수축산물을 원료로 사용한 제품의 제조업소 등 생산량 파악
13. 상황보고	① 농림수산식품부 상황실로 상황보고
14. 대응계획수립	① 해당제품 회수계획 등 대응계획 수립
15. 상황전파	① TV, 인터넷 등 위해사고 대국민 홍보 ② 유관부처·기관 통보
16. 공동 대응단 구성	① 범 정부 차원의 공동대응단 구성
17. 유통지도반 확대 운영	① 전국 시·군·구로 유통지도반 확대편성 및 운영 ② 긴급위생조치 실시인력 증원편성 ③ 당해제품 추적조사 및 봉인조치 등 ④ 농림수산식품부 조치사항 이행(판매·사용금지·회수 등)
18. 긴급위생조치 결과보고	① 긴급위생조치 대상 농수축산물에 대한 사후관리 유출방지 등) 실시 ② 긴급위생조치 결과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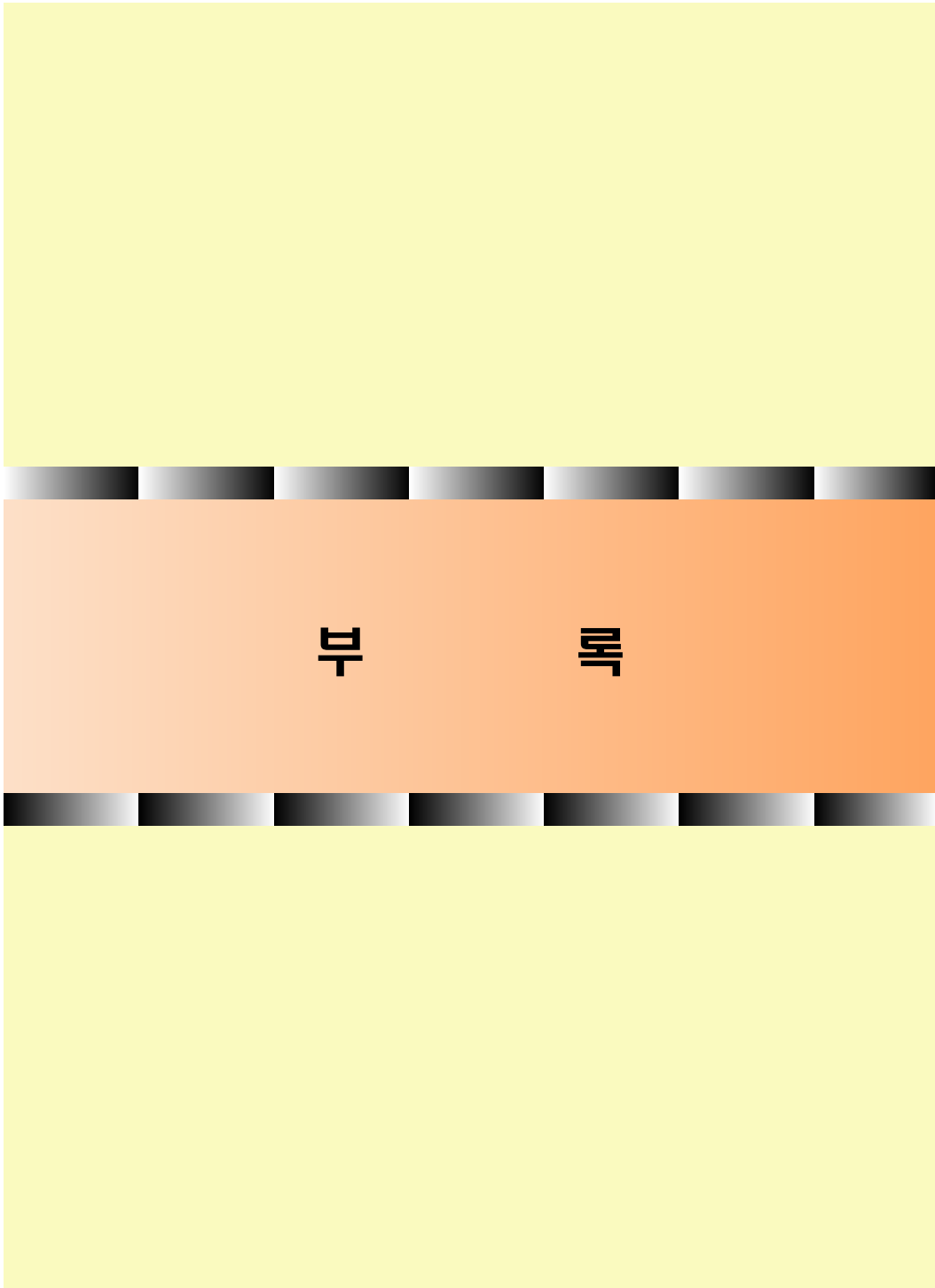
	(시·도 → 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 → 농림수산물식품부) - 긴급위생조치관련 문제점 등 보고(농림수산물식품부)
19. 긴급위생조치에 대한 마무리	① 방사능 누출 국가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협의 및 해당 농수축산물 반송협조 촉구 ② 긴급위생조치 결과에 대한 종합보고 ③ 긴급위생조치 정리 또는 평가를 위한 전문가 협의회 등 개최
상황종료 : 방사능 누출 사고에 대한 상황해제	
20. 해제여부 검토	① 상대국 제출자료(검출원인·제발방지대책 등) 검토 ② 수입금지·사용(판매)금지 등 일시금지조치의 해제·일부해제 도는 해제보류 결정 - 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 조사·협의자료 제출 ③ 해제조건·수입재개시 안전성 확보방안 검토
21. 해제통보	① 농림수산물식품부 사용(판매)금지·수입검역중단 등 해제 조치 통보(수입업체·각국 대사관 등)

3. 기관별 임무 및 역할

농림수산식품부 (시·도)	시·군·구	유관기관(단체)
① 상황발생		
① 상황접수	① 상황접수	① 상황접수
② 상황보고 및 상황전파	② 상황보고 및 상황전파	② 상황보고 및 상황전파
③ 상황판단(긴급대처 상황인지 판단)		
② 긴급조치		
① 검역검사강화 조치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② 출고보류 및 판매중단 조치(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③ 수입신고보류조치 검역검사강화 조치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④ 자진회수권고(농림수산식품부/시·도) 및 점검(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⑤ 강제회수조치(농림수산식품부/시·도) 및 점검(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⑥ 보관·유통중인 농산물의 유통·판매금지 조치(농림수산식품부)	① 자발적 회수 ② 강제회수조치 및 점검 ③ 유통·판매금지 조치 ④ 압류·폐기조치 ⑤ 영업자 행정처분 등	① 회수조치 점검(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식약청) ② 압류·폐기협조(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식약청) ③ 반송협조(관세청)

<p>⑦ 압류·폐기조치(농림수산물부/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p> <p>⑧ 반송조치(농림수산물부 → 검역검사소)</p> <p>⑨ 수입중단조치 (농림수산물부 → 검역검사소)</p>		<p>④ 수입중단 협조(관세청)</p>
<p>③ 수출국에 대한조치</p>		
<p>① 정보사항에 대한 확인요청(농림수산물부/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p> <p>② 문제사항시 항의서한 발송 (농림수산물부/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p> <p>③ 수출작업장 승인 취소 (농림수산물부/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p> <p>④ 수출국에 대한 현지조사 (농림수산물부/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p> <p>⑤ 재발방지대책 협의 (농림수산물부/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p>		<p>① 정보사항확인협조 (외교통상부)</p> <p>② 현지조사협조 (외교통상부)</p>
<p>④ 협의회/심의회 개최</p>		
<p>① 전문가협의회 개최 (농림수산물부/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p> <p>② 농산물위생심의회개최</p>		<p>① 전문가협의회협조 (농림수산물부, 식약청)</p>

<p>(농림수산식품부) ③ 농산물위생심의분과위 개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④ 중앙사고수습본부 개최요청(농림수산식품부)</p>		<p>②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개최(국무총리실)</p>
<p>⑤ 대국민홍보</p>		
<p>① 보도 설명 자료작성 (농림수산식품부/농림수 산검역검사본부) ② 필요시 소비자 등 홍보자료 작성 (농림수산식품부/농림수 산검역검사본부)</p>	<p>① 홍보자료 배포</p>	<p>① 홍보자료 배포(협조)</p>
<p>⑥ 기타 사항</p>		
<p>① 통계자료 작성 및 분석(농 립수산검역검사본부) ② 상황일지 작성 (농림수산식품부/농림수 산검역검사본부) ③ 긴급위생조치상황반 편성(농림수산식품부/농 립수산검역검사본부)</p>	<p>① 통계자료 보고 ② 필요시 상황일지 작성 ③ 필요시 긴급조치반 편성</p>	<p>① 통계자료협조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식약청, 관세청)</p>



언 론 대 응

[언론대응 1] 농림수산식품부 언론대응

1. 모든 관련 사실의 수집

- 가. 정확한 사실 파악을 위해서 사태의 원인, 현재 진행상황, 향후 전망, 피해규모와 정부대책에 관한 사실 파악
- 나. 특히, 사고발생시 사고가 언제, 어떻게, 왜 발생했는가의 사실과 피해지역, 피해규모, 방재 진행현황과 향후대책, 인명피해자 여부, 등은 필히 파악

2. 관련기관과의 사전협의를 통한 보도시점 결정

- 가. 업무관련 유관 부서뿐만 아니라 언론홍보관련 국무총리실 등과의 협의를 통해 보도시점을 결정
- 나. 중요사항은 홍보대상, 주요제기 쟁점, 대응논리 등이 담긴 사전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정책발표 전 점검

3. 단일화된 창구를 통한 정보배포

- 가. 위기사 상호 모순되거나 불필요한 추측을 불러일으키는 불완전한 정보의 제공을 방지하기 위해 “대변인”등 단일화된 채널을 통한 정보의 배포
- 나. 위기사 대변인이 위기관리 대변인으로서 우리부의 공식 입장은 대변인을 통해서만 언론에 노출되도록 주의

4. 신속, 정확한 정보제공 및 나쁜 뉴스라도 정직한 제공

- 가. 주요 상황의 변화시 언론기관 및 관련기관에 신속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해 유언비어와 추측보도 방지

- 나. 정보은폐에 의한 공신력 실추의 방지를 위해 가장 나쁜 뉴스라도 가급적 대변인 통하여 정직하게 전달
- 다. 언론사의 정보제공 요청을 거부하거나 논평을 거부할 경우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제시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 불식

5. 사건에 대한 기록 유지

- 가. 사건 종료후 법적대응, 후속보도, 위기관리커뮤니케이션 계획의 수정을 위해서 사진, 서류, 비디오테이프 등을 이용한 기록의 유지

[언론대응 2] 농림수산식품부 언론대응 매뉴얼

보도자료 작성시 고려사항

가. 일반개요

- 언론 홍보는 적극적·조직적·선행적·예방적 홍보활동인 미디어 퍼블리시티(Media Publicity)와 사후 대응적인 미디어 서비스(Media Service)로 구분
- 미디어 퍼블리시티 활동은 보도자료 제공, 인터뷰, 기고문, 기자간담회 및 기자회견, 국내외 현장 취재 지원, 공동 기획 특집 등 다양한 형태가 있으며, 그 중 보도자료 제공은 가장 기본적인 홍보활동임
- 보도자료 제공은 정확한 정보의 시의적절한 제공이 가장 중요

나. 보도자료 배포

- 조간용일 경우 전일 10 : 00 이전 배포
 - 조간용은 기자들이 데스크에 보고하는 시간이 대략 09:00 ~ 09:30분경이므로 가급적 09:30 이전에 배포
 - 오후에 보도자료 배포는 피하되, 불가피하게 오후에 배포해야 할 경우 기자들이 오후 메모를 올리는 시간(13:30 ~ 14:00)을 감안하여 14:00 이전에 배포
- 석간용일 경우 전일 18:00경 배포

- 국무회의 안건은 주로 석간용으로 배포
- 앱바고가 지켜져야 할 중요 자료는 조간과 석간신문을 구분해서 배포
- 석간신문이 앱바로를 깬 경우, 다음날 조간신문의 기사가치가 없어지므로 석간신문에는 조간신문판 1차 마감시간인 16:00이후에 자료 배포
- 기자들에게 보도자료 배포시 문자메시지 통지

2. 보도 결과에 대한 언론사 문의시 대응요령

가. 타 부처의 보도자료 등에 의하여 기자들의 확인전화가 올 경우

- 보통 조간신문의 판마감 시각이 16:00이므로 우리부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최소 15:00까지 해명자료나 보충 설명 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
- 배포 후 신속하게 문자메시지 통보 및 확인전화

나. 우리부 출입기자가 기사를 작성한 경우

- 오보를 낸 해당 언론사에 담당부서에서 공문(국장명의로) 정정 또는 반론 보도 요청
- 공문발송 이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요청(해당부서 대응, 대변인실 지원)
- 해명자료 배포범위는 담당 경제·사회 데스크 및 우리부 출입기자

다. 우리부 출입이 아닌 기자가 기사를 작성한 경우

- 오보를 낸 해당언론사에 담당부서에서 공문(국장명의로) 정정 또는 반론보도 요청
- 공문 발송 이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요청(해당부서 대응, 대변인실)
- 해명자료 배포범위는 기사의 중요도를 판단해서 배포
- 구분이 모호할 경우 언론사 편집국장 및 보도본부장, 우리부 출입기자에게 해명자료 배포

3. 보도자료 배포 사전 점검사항(Checklist)

- 담당자가 이메일은 최근 것이며 신문을 통해 직접확인했는가?
- 이메일 송부시 자료의 용량은 얼마나 되는지 확인했는가?
- 쉬우면서도 짧고 명확하게, 그리고 군더더기는 제거 했는가?
- 작성된 자료를 소리내어 읽어보고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없는지 확인했는가?
- 숫자나 도표, 맞춤법 등 잘못된 곳이 없는지 확인하고 타인에게 최종 교정을 보았는가?
- 이메일 송부시 특히 '제목'의 차별성은 무엇인가?
- 기자들이 이 보도자료를 꼭 읽어야 하는 이유 혹은 개연성이 있는가?
- 새로운 시각으로 재미있거나 흥미롭게 다시 만들 수는 없는가?
- 보도자료의 내용에 대해 작성자 스스로가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 첨부파일을 지양하고 문서로 작성된 것을 그대로 복사하여 이메일 본문에 넣었는가?
- 파일 첨부시 바이러스 검사는 했는가?
- 사진 이미지는 신문과 잡지 등 매체 성격에 따라 적절한 용량으로 했는가?
- 사진 송부시 컬러의 경우 '흑백 사진'의 이미지도 미리 확인했는가?
- 사진은 부분 확대 이미지와 전체 이미지의 두 종류를 준비했는가?

커뮤니케이션 리스크 분석표

일 자	
정 책 명	
담당부서	
정책목표	
추진기간	
주요내용	
쟁점사항	

단 계	타킷오디언스	이슈	커뮤니케이션 리스크	최악의 시나리오
사고진행				
언론보도				
대국민여론 조사결과				
정부대책 발표 및 집행				
정책평가 및 사후관리				

※ 표 행과 열의 크기는 내용구성상 변경하여 사용 가능

[언론대응 3] 기자회견 사전점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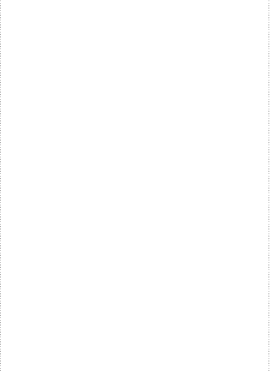
1. 대변인은 회견에 가장 적합한 시간을 선정한다.
2. 보도진에게 시간과 장소를 통보한다
3. 참석을 통보한 기자, 편집자 등 언론인들의 명단을 준비한다.
4. 기자들의 관심을 끌만한 배경 자료를 준비해둔다
5. 외부 전문가가 필요하다면 동석시킨다
6. 직원중 누군가가 기자회견의 물리적 서비스를 담당한다
7. 의자, 탁자 및 발언대의 수는 충분한가?
8. 마이크나 기타 비디오, 오디오 장비가 필요한가 등 홍보요원들에게 회견 주제, 발언자 및 회견 일정을 브리핑 해 둔다.
9. 인사말을 준비하고 이를 가장 중요한 발표자와 함께 검토한다.
10. 예상질의, 답변을 발표자들과 검토한다
11. 행사전에 모든 음향기와 기타 장비를 점검한다.
12. 회견장에 방명록을 비치하여 참석자의 이름과 소속을 파악한다.
13. 보도자료를 포함하여 새로운 정보와 유인물 등 배경자료를 회견장에 가져다 놓는다
14. 보도진을 회견장으로 안내한다
15. 직원을 지정하여 개회사를 하도록 하고 회견의 기본 규칙을 설명한다
16. 질문과 대답을 주의깊게 모니터한다. 회견이 끝나기 전에 해명할 부분은 해명한다.
17. 회견을 녹음해 두고 발언내용은 조속히 기록해 둔다
18. 직원들에게 기자회견이 열린다는 사실을 알리고 회견장이 산만하지 않도록 관계없는 직원들의 참석을 통제한다.

[언론대응 4] 언론발표 시 요령과 원칙

1. 발표내용이 확실하지 않으면 어떤 기자에게도 말하지 마라
2. 필요하면 시간을 끌어라. 사실 확인이 완료되지 않으면 기자와 이야기를 시작하지 말라. 대답을 즉시 할 수 없을 경우 기자의 이름을 물은 뒤 헤드라인 내에 자료를 제공할 것이라고 약속하라. “지금은 모릅니다. 알아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등 절대 추측하여 말하지 않도록 한다.
3. 발표문의 헤드라인은 하나만 써라. 그리고 이 헤드라인에 따라 일관성 있고 분명하며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라
4. 어떤 회견이든 사전에 준비하라. 이는 기자와 조직체 모두에게 바람직 한 일이다.
5. 예상 답변을 준비하고 연습하라.
6. 인터뷰 직전에 변화된 사항이 없나 마지막으로 점검하라.
7. 추측을 하게 만들지 마라. 대변인이 공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면 기자들은 타인의 추측을 소스로 삼을 것이다. 그러므로 가능하면 공식적으로 준비된 발표문을 낭독하라
8. 비공식적 발언을 삼가라.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또는 위기관리 담당자와 사전에 상세히 협의하지 않는 내용은 절대로 비공식적 발언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는 복잡하고 문제성이 다분하므로 피해야 한다.
9. 기술적 자료는 항상 서면자료를 이용하라. 기술야의 전문가가 아닌 기자들을 상대할 때는 시간을 들여서 기자들이 요점을 파악할 때까지 하나하나 짚어 주어야 한다.
10. 어떤 기자가 제시한 논점에 대해 답변을 할 수 없으면 코멘트 할 수 없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결코 물려서지 말아야 한다. 그냥 ‘노코멘트 (No Comment)’라고만 하면 안된다. 왜 말을 할 수 없는지를 분명히 밝혀주어야 한다. 그리고 준비된 자료를 낭독할 경우 낭독한 내용에 충실해야 하며 가능하면 발표자 자신의 해석이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11. 정부가 사태를 우려하고 있는 것을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한다. 다만 이로인해 공황(panic) 상태가 발생해서는 안된다.
12. 보도기관으로부터 전화로 문의 받은 사항은 가능하면 24시간 가동체제로 답해야 한다.
13. 학자, 정부관계자, 유명인사, 기타여론 선도자 등 호의적인 제3자의 견해 및 객관적인 자료를 보여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언론대응 5] 언론보도자료 협조서식

 <p style="font-size: 1.2em; font-weight: bold;">농림수산식품부</p> <p style="font-size: 1.5em; font-weight: bold;">보도자료</p>	<p>제공일 : _____</p> <p>제공자 : _____</p> <p>과 장 : _____</p> <p>사무관 _____</p> <p>전 화 : _____</p> <p>쪽 수 _____</p> <p>별첨자료 : _____</p>
<p>이 자료는 0000년 00월 00일 석간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00 국가(지역)에서 방사능 누출 사고로 인한 농·수·축산물의 방사능 물질 검출</p>	
<p><input type="checkbox"/>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서는 00국가(지역)의 방사능 누출사고로 인한 농·수·축산 정기 수거검사 과정에서 0000년 00월 00일에 □□□□□□□□□□□□□□가 검출되었다고 밝혔다.</p> <p style="margin-left: 20px;">○</p> <p style="margin-left: 20px;">○</p> <p><input type="checkbox"/>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서는 관할 행정기관인 □□□에 해당 물품(제품 등)을 전량 폐기조치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통보하였다.</p> <p style="margin-left: 20px;">○</p> <p style="margin-left: 20px;">○</p>	

보고서식 / 발표서식

[보고/발표서식 1] 초기 상황보고 서식(내부보고용)

○○○○ 관련 보고

사 고 개 요

0000년 00월 00일 000국가(지역) 방사능누출 사고원인,
피해상황 등을 간략시 기재

1. 0000년 00월 00일 현재 상황 및 대응실적
 - 현재 상황 등에 대한 사항을 기재
 - 대응, 조치, 복구 등의 사항을 기재
2. 관계기관 대책회의 결과
 - 회의 개최시 결과보고서를 첨부
3. 향후계획
 - 복구 완료 시 까지의 추진계획을 단기대책과 장기대책을 구분하여 기재

수신부서명

※ 붙임 : 참고자료(사고주변 지도) 등

[보고/발표서식 2] 위기평가회의 보고서

위 기 명				
발생 일시		평가 일시		
위기평가회의 위원회 구성원				
위기 평가결과	관심 (Blue)	주의 (Yellow)	경계 (Orange)	심각 (Red)
통보기관				
<p>1. 관련 상황/정보</p> <p>2. 분석/판단</p> <p>3. 조치사항</p>				
작성자	부서 :	성명 :	(인)	
	전화번호 :	이메일 :		

[보고/발표서식 4] 상황보고서[지자체용]

수 신	농림수산식품부 000000과(팀)	
발 신	도 시(군) / 부서명	
일 시	0000년 00월 00일 00시	
담당자	직 위 :	성명 :
연락처	전화번호 :	팩스 :
상 황		
구 분	내 용	비 고
사건명		
발생 및 진행상황		
조치내용		
관련동향		
건의 사항 기타		

[보고/발표서식 5] 검사검역 조치보고

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

수신자
(경유) 수신자 참조

제 목 국내 또는 인접국 방사능 누출사고에 따른 농 수 축품의 검역중
단 및 검사 강화조치 보고(알림)


1. 관련 : 농림수산물식품부 000과-000('00.0.00)

2. '0000.00.00일 000국가(지역)의 방사능누출 사고로 인하여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어 00000에 대한 수출입 중단조치를 취하였습니다.

3. 각 0000에서는 해당 수출입물품이 수출입작업장을 통해 국내에 도착하였
거나 유통중인 00000제품에 대해서는 금번 방사능 누출사고의 원인과 검사결
과 등이 밝혀질때까지 수출입 검역을 중단하시길 바라며,

4. 또한 00000과-000('00,00,00)호에서 기 검사강화 조치한 바와 같이, 부작위
표본검사시에도 중점검사 항목과 함께 문제제기 농·수·축산물로 간주하여 방
사능 검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보고/발표서식 6] 위해정보에 대한 조치

	<h2>농림수산식품부</h2>
수신자 (경유)	수신자 참조
제 목	국내 또는 인접국 방사능 누출사고에 따른 농·수·축산물의 회수조치 관련(조치, 지시)
<p>1. 000국가(지역)의 소재 0000지역에서 방사능사고로 인한 방사능 누출로 인한 방사능 물질에 오염된 약 000규모의 농·수·축산물의 제품을 회수중이라는 0000보도자료와 관련입니다.</p>	
<p>2. 귀 000에서는 회수대상 제품이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물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회수대상이 아니더라도 동일 지역에서 생산되거나 방사능물질 오염지역을 통해 유통된 제품들에 대하여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p>	

[보고/발표서식 7] 회수조치



농림수산식품부

수신자
(경유) 수신자 참조

제 목 000산 농·수·축산물 제품의 회수조치 철저

1. 관련 : 0000과-0000('00.00.00)호

2. 관련 호로 '00.00.00일 이후 0000000지역에서 생산되어 우리나라로 수입된 제품에 대한 판매중지 조치를 취한 것과 관련하여, 각 시도 및 검역원에서는 동 조치의 효과적인 시행과 신속한 회수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체 회수대책반을 구성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3. 관련 제품에 대한 회수조치가 마무리될 때 까지 각 시도는 1일 회수 실적을 정리하여 17:00까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 알려주시고,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자체회수내역과 함께 각 시도의 실적을 취합하여 18:00까지 우리부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보고/발표서식 8] 추진실적 보고양식

제 목				
일련번호	기관명 (담당부서)	일자	0000.00.00	
<p>가. 추진내용 및 실적</p> <p><input type="checkbox"/> 점검인원(일계/누계)</p> <p style="padding-left: 40px;"><input type="radio"/> 개반 명</p> <p><input type="checkbox"/> 점검업소(수) / 보관업소(수) (일계/누계)</p> <p style="padding-left: 40px;"><input type="radio"/> 개반 명</p> <p><input type="checkbox"/> 업체별 보관물량(kg) 및 조치사항</p> <p style="padding-left: 40px;"><input type="radio"/> 개반 명</p> <p>나. 기타사항</p> <p><input type="checkbox"/></p> <p style="padding-left: 40px;"><input type="radio"/></p> <p>다. 향후계획</p> <p><input type="checkbox"/></p> <p style="padding-left: 40px;"><input type="radio"/></p>				

[보고/발표서식 9] 위해축산물 긴급회수문

위해축산물 긴급회수문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1조의 2 또는 제36조 등의 규정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0000 (축산물가공품의 유형)

나. 제조일·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 0000.00.00일까지

※ 제조번호 또는 롯트번호로 제품을 관리하는 업소는 그 관리번호를 함께 기재

다. 회수사유 : 0000기준치 초과검출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직접회수 / 감독기관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000000000(주)

바. 영업자주소 : 00000도 00시 00동 00번지

사. 연락처 : 000-000-0000

아. 그밖의 사항 : 위해축산물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회수 대상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영업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 대상 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 축산물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관기관 연락처

[유관기관 연락처 1] 유관기관연락처

기 관	부 서	연 락 처
대통령실	국가위기관리실	02-770-7885 (Fax. 02-770-4787)
국무총리실	교육문화여성정책관	02-2100-2243
행정안전부	재난대책과	02-2100-2884, 3197
	재난위기종합상황실	02-2100-3119, 3220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방재팀	02-2100-6988, 6990
	원자력안전과	02-2100-6973
기획재정부	교육과학예산과	02-2150-7256
외교통상부	재외국민보호과	02-2100-7582
법무부	법무심의관	02-2110-3164~5
국방부	재난관리지원과	02-748-5773
	합참화생방과	02-748-3284
문화체육관광부	홍보지원정책과	02-3704-9087
농림수산식품부	소비안전정책과	02-500-2095
지식경제부	원전산업정책과	02-2110-5484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02-2023-7299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02-2110-6962
국토해양부	건설안전과	02-2110-8390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정책기획과	02-750-2524
관세청	통관기획과	042-481-7810
소방방재청	민방위과	02-2100-5241, 5230
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식품과	043-719-2161
	식품안전정책과	043-719-2010
기상청	예보정책과	02-2181-0508

[유관기관 연락처 2] 방역방재관련기관 연락처

□ 농림수산식품부

기관명	주소	우편번호	전화		관할지역
			DDD	번호	
농림수산식품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427-719	02 FAX	500-2082/ 3504-0908	전국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기관명	주소	우편번호	전화		관할지역
			DDD	번호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75번지(안양6동 480)	430-757	031 FAX	463-4587~9 463-4585	전국

□ 시·도 가축방역기관

기관명	주소	우편번호	전화		관할지역
			DDD	번호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축산물부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1번지	427-070	02 FAX	570-3435 -3436 570-3442	서울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축산물위생검사소	부산 북구 금곡동 490-1	616-810	051 FAX	331-5012 888-6819 338-8266	부산
대구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대구 수성구 지산동 771	706-090	053	760-1301 1303	대구

기관명	주소	우편번호	전화		관할 지역
			DDD	번호	
축산물위생연구부			FAX	760-1302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가축위생시험소	인천 서구 가좌1동 583-1	404-251	032 FAX	440-5490 440-5642 576-7785	인천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연구부	광주 북구 본촌마을길 25-1 (본촌동 379-1)	502-240	062 FAX	613-7652 7653 613-7649	광주
대전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연구부	대전 유성구 구성동 21-1	305-338	042 FAX	870-3480 -3485 870-3489	대전
울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가축위생시험소	울산 울주군 삼남면 방기리 26-3	689-813	052 FAX	229-5243 229-5249	울산
축 경산 위 기생 연 도구 소 (5)	본 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746-15	031 FAX	8008-6312 8008-6311 8008-6249	수원 · 안양 · 부천 · 안산 · 과천 · 시흥 · 군포 · 의왕 · 김포 · 성남 · 오산 · 화성 · 광명
	동부지소	경기 이천시 진리동 371-4	031 FAX	8008-6366 8008-6365 636-3676	하남 · 여주 · 광주 · 이천 · 양평
	남부지소	경기 안성시 공도면 만정리 274-10	031 FAX	8008-6359 8008-6355 651-1614	용인 · 평택 · 안성
	제2가축위 생 연구소 본소	경기 양주시 고읍동 340-1	031 FAX	8008-6437 8008-6432 820-0204	의정부 · 동두천 · 양주 · 연천 · 고양 · 파주
	제2가축위 생 연구소 북부지소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가곡리 177-1	031 FAX	8008-6477 8008-6471 593-4012	남양주 · 구리 · 가평 · 포천
가 강축 위 원생 시	본 소	강원 춘천시 신북읍 신천리 727	033 FAX	248-6625 248-6617	춘천 · 철원 · 화천 · 양구
	동부지소	강원 강릉시 장현동 74-7	033 FAX	610-8705 610-8722	강릉 · 동해 · 삼척 · 태백
	남부지소	강원 원주시 반곡동	220-170	033	737-6781

제 3 장 방사능 위기대응 조치 및 절차

기 관 명	주 소	우편 번호	전 화		관할 지역	
			DDD	번 호		
도 험 소 (5)		1098-2		FAX	737-6790	횡성
	중부지소	강원 평창군 평창읍 중부리 508-153	232-802	033 FAX	339-8855 339-8866	영월·평창· 정선
	북부지소	강원 속초시 장사동 649-3	217-130	033 FAX	636-1044 636-8582	인제·고성· 속초·양양
축 산 청 위 복 생 도 연 구 소 (4)	본 소	충북 청원군 내수읍 구성리 420	363-931	043 FAX	220-6261~4 220-6271~4 220-6269	청주·청원
	북부지소	충북 충주시 금릉동 187-12	380-230	043 FAX	220-6321~4 220-6319	충주·음성
	남부지소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리 39	370-880	043 FAX	220-6330~1 220-6339	보은·옥천· 영동·단양
	제천지소	충북 제천시 고양동 145-20	390-090	043 FAX	220-6350~1 220-6359	제천·단양
가 축 청 위 남 생 도 연 구 소 (6)	본 소	충남 홍성군 금마면 송강리 52-1	350-821	041 FAX	631-3091~4 631-3092~3	보령·청양· 홍성
	아산지소	충남 아산군 배방면 세교리 432-1	337-850	041 FAX	548-2950 548-2954	천안·아산
	공주지소	충남 공주시 우성면 귀산리 132-5	314-861	041 FAX	881-0128 881-0129	공주·계룡· 금산·연기· 계룡
	당진지소	충남 당진군 용연리 854	343-803	041 FAX	352-4056 357-5850	예산·당진
	부여지소	충남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89	323-808	041 FAX	833-8611 830-2784	논산·부여· 서천
	태안지소	충남 태안군 태안읍 인평리 213-1	357-908	041 FAX	675-4349 675-4348	서산·태안
축 전 산 라 위 복 생 도 연 구 소 (4)	본 소	전북 장수군 장수읍 노하리 529-4	560-220	063 FAX	290-5361 290-5381 290-5411	전주·완주· 무주·진안· 장수
	남원지소	전북 남원시 식정동 475-1	590-230	063 FAX	290-6599 290-6598	남원·임실· 순창
	정읍지소	전북 정읍시 북면 한교리 1572-1	580-814	063 FAX	290-6540 290-6568	정읍·고창· 부안

기관명	주소	우편번호	전화		관할 지역	
			DDD	번호		
	익산지소	전북 익산시 월성동 309-7	570-390	063 FAX	290-6530 290-6538	군산·익산·김제
축산과학기술연구소 본소	축산기술연구소 본소	전남 강진군 작천면 군자리 198-10	527-822	061 FAX	430-2142 434-9130	나주·화순·장흥·강진·해남·영암·완도·진도
	동부지소	전남 순천시 가곡동 974-1	540-080	061 FAX	755-6396 751-1045	순천·여수·광양·보성·구례·곡성·고흥
	서부지소	전남 영광군 묘량면 신천리 523-1	513-822	061 FAX	350-2100 350-2190	목포·담양·무안·함평·영광·장성·신안
가축상위복생도시연구소 (4)	본소	대구 북구 학정동 859-3	702-210	053 FAX	326-0012~3-0014	구미·칠곡·군위·성주·고령·경산·영천·청도
	북부지소	경북 안동시 풍산읍 상리리 500-12	760-803	054 FAX	850-3285-3289	안동·영주·의성·청송·영양·봉화
	동부지소	경북 경주시 동천동 143	780-933	054 FAX	748-6624 748-6685	경주·포항·영덕·울진·울릉
	서부지소	경북 상주시 외담동 476-1	742-320	054 FAX	533-1752 532-4945	김천·상주·문경·예천
축산상진남흥연구소 (4)	본소	경남 진주시 초전동 423	660-985	055 FAX	771-6651~5 771-6619	진주·사천·산청·하동·함양·함안
	중부지소	경남 김해시 장유면 부곡리 17-8	621-833	055 FAX	211-5771~3 211-5779	창원·마산·진해·김해·양산·밀양
	북부지소	경남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307-1	678-801	055 FAX	930-3864 930-3865	합천·거창·의령·창녕
	남부지소	경남 통영시 도산면 통영대로 107	650-817	055 FAX	650-6732~5 640-4987	통영·거제·고성·남해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	제주 제주시 초전읍 와흘리 782	695-963	064 FAX	710-8524 710-8529	제주	